科學技術情報通信委員會會議錄 第254回國會 第 1 號 (臨時會)

國 會 事 務 處

- 日 時 2005年6月13日(月)
- 場所科學技術情報通信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 1. 정보통신부 현안보고
- 2.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3. 電波法 一部改正法律案(이규택 의원 대표발의)
- 4. 電波法 一部改正法律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
- 5. 電氣通信事業法 一部改正法律案(이규택 의원 대표발의)
- 6. 電氣通信事業法 一部改正法律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
- 7. 通信秘密保護法 一部改正法律案

審査된案件

- 1. 정보통신부 혐안보고2 2.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강성종·권선택·김낙 순 · 김석준 · 김원웅 · 김태홍 · 김희선 · 김희정 · 류근찬 · 문학진 · 서상기 · 심재엽 · 염동연 · 오 3. 電波法 一部改正法律案(이규택 의원 대표발의)(이규택・안상수・심재철・황우여・주호영・엄 호성·정병국·윤건영·김충환·허천·유필우 의원 발의)5 4. 電波法 一部改正法律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김석준・박승환・박세환・안상수・이인기・고 5. 電氣通信事業法 一部改正法律案(이규택 의원 대표발의)(이규택·안상수·심재철·황우여·주
- 6. 電氣通信事業法 一部改正法律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김석준・박승환・박세환・안상수・이
- 7. 通信秘密保護法 一部改正法律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김석준・박승환・박세환・안상수・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이해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정창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해봉** 오늘은 6월 임시국회에서 본회

의가 일응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로 서는 첫 번째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이미 의사일정을 통보하 여 드린 바대로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현안보 고와 소관 법률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법률 안과 관련해서는 11건의 법률안이 심사되겠고 또 의견제시의 건은 1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 의견 제시의 건은 여러 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이번 6월에 처리가 불가하 기 때문에 우선 1건만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

다. 그래서 계류 법률안 등의 심사를 위한 법안 소위 활동이 있겠고 또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 률안에 대한 세 차례의 공청회가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 역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정보통신부 현안보고와 정보통신부 소관 6개 법률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정부 측 답변, 대체토론은 현안보고와 법률안 제안설명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보통신부 현안보고

(10시19분)

○위원장 이해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보통 신부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존경하는 이해봉 위원 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보통신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정보통신분야의 발전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드릴 내용은 정보통신부의 주요현안사항으로서 금년으로 열여덟 번째를 맞는 정보문화의 달 행사계획, 최근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뱅킹 해킹과 사이버폭력 방지 대책, 지난 3월 31일부터 도입된 옵트인 제도의 시행 효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고, 이어서 서울 상암동에 조성 중인 첨단 IT콤플렉스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 접속역무 진출과 관련한 허가 정책방향, 공정위의 통신사업자 부당공동행위 조사에 대한정보통신부 입장, IP-TV 서비스 도입과 관련한방송위와의 협의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DMB 국제표준화 및 해외시장 개척 추 진성과와 국내 최초의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ESCAP ICT센터 유치 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린 후 개성공단 통신공급 추진현황과 EKI 발행 외 화채권 투자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핵심공약사항 추진현황과 제253 회 임시국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리며, 업무현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 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홍보관리실장으 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 임명된 산하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곤 한국전산원장입니다.

(산하단체장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봉 수고했습니다.

정책홍보관리실장, 나머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정책홍보관리실장 석호익** 정책홍보 관리실장입니다.

제254회 임시국회 정보통신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항, 대통령 핵심공약사항 추진현황, 제253회 국회의원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사항은 정보문화의 달 행사 등 12개 과제입니다.

6월은 정보문화의 달입니다. 정보문화의 달 행 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산적 정보활용과 역기능 해소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주제를 'u-코리아, 따뜻한 디지털 세상 구현'으로 정하였으며 추진방향은 정보격차 해소, 건전 정보이용, 정보보호 등 주간별 테마를 설정 하고 언론계, 시민단체, 업계, 학계 등 다양한 참 여를 통한 범국가적인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제18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과 사이버명예시민운동 발대식을 6월 14일 코엑스에서 실시하고 장애인 정보통신기기 전시회 등정보격차 해소 주간행사, e-클린 코리아 캠페인 등 건전 정보이용 주간행사, 건강한 PC 만들기캠페인 등 정보보호 주간행사 등입니다.

인터넷뱅킹 해킹 방지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터넷뱅킹을 해킹해서 타인의 예금을 인출한 최초 사례가 5월 10일 발생했습니다.

사건개요 및 원인을 보고드리면 해커가 인터넷 뱅킹 시스템에 넷데블이라는 키로그 방식의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피해자의 ID, 암호 등 개인 정보를 입수하고 은행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 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외환은행의 인터넷뱅킹 보안시스템 에 키로그 방지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았고 해킹 으로 확보한 번호가 요구될 때까지 로그아웃을 반복해서 거래정지되는 것을 해커가 회피했으며 피해자 신상정보를 도용하고 범인의 PC에서 공 인인증서를 재발급한 데 기인합니다.

향후 대책은 금감위에서 인터넷뱅킹 접속 시 보안프로그램이 이용자 PC에 자동 설치되도록 기 조치를 하였으며 보안카드 번호 입력 오류 후 재로그인 할 경우 동일한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 토록 시스템을 보완했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부에서도 인증서 재발급 시 본 인이 인지할 수 있는 이메일, SMS 전송서비스 도입 또는 재발급용 별도의 비밀번호 부여 추진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폭력 방지대책입니다.

연예계 X파일, VIP 패러디 등 사이버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통신부에서는 그간에 사이버폭력대책단을 정보통 신부차관을 단장으로 구성해서 정책의제 발굴 및 방지대책을 4월에 마련했으며, 유해정보로부터 청 소년 보호를 위한 사업자별 청소년보호책임자제 도를 5월에 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3월과 5월에 걸쳐서 모니터링 등 단속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 등 인터넷상 유해정보 4500여 건에 대한 시정요구 및 60여 건은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사이버 명예 훼손, 성폭력 등 1100여 건의 상담 및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15만 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 다.

앞으로도 사이버 폭력 규제를 위한 사이버 폭 력의 정의, 구성요건 등 입법화 방안을 검토하고 사이버 명예훼손 방지 확산을 위한 유통금지처분 도입 등 법제도도 개선하겠으며 매체별·분야별 기획모니터링과 사법기관과의 공조시스템도 강화 하고 사이버 문화운동 추진을 위해서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25만 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사이버명 예시민운동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옵트인 제도 시행 효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휴대전화 스팸 방지를 위해서 3월 31일부터 옵 트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간의 효과 및 문제 점을 말씀드리면 옵트인 제도 도입으로 휴대전화 스팸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스팸 전송기법이 다양화되고 이메일을 통한 스팸메일 전송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1인 당 휴대전화 스팸 수신량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작년에는 1일 1.7통에서 금년 5월에는 0.62통 으로 63%가 감소하였고, 휴대전화 스팸 신고건 수는 82%가 감소했으나 이메일은 오히려 작년 연말 1일 13.8통에서 5월에는 15.3통으로 오히려 11%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 스팸 발송업체 대상 모니터링 및 과태료 부과를 지속 실시하고 스팸 신고 전화번 호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불법 증거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증거수집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메일 스팸 발송 차단 및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 IT콤플렉스 조성사업 추진에 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부지는 서울 상암동 DMC 내 약 6000평이며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2007 년까지입니다. 예산은 총 4300억 원 중 정부는 15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조성시설은 IT R&D센 터, 비즈니스센터, 디지털 파빌리온, 공동제작센 터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실시설계 업체 선정 경과를 보고 올리 면 1월 7일에 입찰공고를 해서 5월 3일에 심의위 원회를 개최하던 중 GS건설에서 입찰절차속행중 지가처분 신청제기를 5월 7일에 한 바가 있습니 다. 5월 9일에는 실시설계업체를 삼성물산 컨소 시엄으로 선정했으며 6월 1일에는 GS건설에서 가처분신청을 취하함으로써 그간의 문제점은 해 소되었습니다. 앞으로 8월에 건축 인허가 완료 및 기공식을 하고 2007년 11월에는 첨단 IT콤플 렉스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워콤 허가관련 정책방향입니다.

검토배경을 말씀드리면 회선설비임대사업자인 파워콤이 인터넷접속역무 신규 허가 신청을 3월 에 했습니다. 하나로텔레콤 등 기존 인터넷접속 역무 사업자들은 파워콤 허가를 반대하고 있습니 다. 그 이유는 초고속 인터넷 시장 포화에 따른 과다한 경쟁과 망보유사업자로서 불공정경쟁 등 을 우려해서입니다.

향후 정책방향은 자유신청제하에서 정부가 사

업자 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 심사와 정보통신정책심의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토록하겠습니다. 다만 파워콤 허가 결정 시에 우려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방지대책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 허가대상 법인을 선정해서 9월까지는 허가서를 교부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위의 통신사업자 부당공동행위 조 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위의 심결은 시내전화와 PC방 인터넷회선 관련 부당공동행위에 과징금 약 1200억 원을 부 과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내전화의 경우에 하나로텔레콤의 요금 인상과 KT의 시장점유율을 이관했다는 것이며 또한 PC방 인터넷회선은 PC대수별 요금제를 속도별 요금제로 변경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 시내전화 담합행위와 2002년 정통부 행정지도는 무관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한 것으로 사료가 되며 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의 특수성과 후발사업자의 경영여건악화 등 당시의 상황을 공정위에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공정위에서는 이 점을 감안해서 과징금을 일부 경감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통신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 유효경쟁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향후 관련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해서 부당공동행위가 발생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IP-TV 서비스 도입입니다.

먼저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면, 정통부는 2004년 8월에 이미 BcN 시범사업 컨소시엄주관사업자를 선정해서 금년 7월부터 IP-TV 시범서비스를 10개 지역, 2000 가구에 보급토록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방송위의 금년 3월 별도 시범사업 추진 발표로 IP-TV 시범사업에 약간의혼선을 초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정통부와 방송위 간에 구성된 멀티미디어 정책협의회를 활용해서 공동추진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법제화에 대해서 정통부는 IP-TV가 부가통신역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고만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요 시 융합서비스에 대한 특별법 검토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방송위는 방송법으로 규제를 해서 기존 방송보다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방송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방송위와 협의해서 융합서비스 조기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DMB 국제표준화와 해외시장 개척이 되겠습니다.

먼저 DMB를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국제 표준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지상파 DMB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 유럽 표준화 기구에서는 금년 6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는 2006년 초에 지상파 DMB가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전망입니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독일 바이에른주와 지상파 DMB 실험방송을 위한 MOU 체결을 4월에 한 바가 있으며 지상파 DMB 해외시연회개최는 상반기에는 독일, 터키, 미국, 페루, 멕시코, 하반기에는 독일, 네델란드, 중국에 대해서시연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엔 ESCAP ICT센터 유치·설립입니다.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면 작년 3월에 유엔 ESCAP ICT센터 유치결의안을 제출한 바가 있으며 작년 3월부터 금년 5월까지 1년여 동안 지지국 확보 및 인도, 일본 등 반대 국가를 설득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금년 5월 18일에 제61차 유엔 ESCAP 연례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습니다.

센터 개요를 말씀드리면 향후 5년간 1000만 불 중 정통부가 250만 불, 인천시가 750만 불의 재 원을 조달하고 설립 예정지는 인천 송도 경제자 유구역 내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교육내용과 지원내용은 정책결정자과정, 관리자과정, 강사양성과정 등 6~8개 과정을 운영하고 교육비, 항공비, 숙식비 등 제반 교육비용을 120명 이상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유치의의를 보고 올리면 유엔 산하 국제기구 최초 유치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위상이 강화 되고 교육수혜자 네트워크 확보로 현지 시장 진 출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유엔 산하기구 유치로 외국인 투자 우려 심리 가 완화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1월까지 국무회의의 의결과 국회 비준 동의를 얻은 후에 설립 협정을 발효하고 금 년 9월까지 유엔 승인을 얻어서 내년 상반기에는 센터를 개소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성공단 통신공급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 12월 30일에 개성공단 통신사업 기본합의 서를 체결했고 금년 3월에 현안사항을 일괄 타결 해서 부속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금년 5월 말부 터 전화 · 팩스 서비스를 하고 요금은 분당 40센 트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현황은 북측 구간의 공사 지연 등 으로 통신공급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북측 구간 광케이블 공사가 90% 정도 완료되었 고, KT 측은 공단 내 통신실 구조물 설치를 완 료하고 단지 내 통신망 구축공사를 준비 중에 있 습니다. 또한 통일부,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통신 장비 대북 반출에 관한 협조를 현재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4분기까지 통신 공급을 추진하고 향 후 개성공단에도 인터넷과 우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EKI 발행 외화채권 투자입니다.

투자개요를 보고 올리면, 대상 채권은 행담도 개발주식회사의 90% 지분을 보유한 EKI사가 연 5.72%의 금리로 발행한 총 8300만 불 규모의 달 러표시 채권이 되겠고, 투자 내용은 우정사업본 부에서 이 중 6000만 불-우리나라 돈으로 614억 원-의 채권을 매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투자경위와 사유를 보고 올리면, 씨티증권이 1 월 24일 설명회를 통해서 우정사업본부에 선투자 를 제의한 바가 있고 2005년 2월 3일 우체국금융 자금 운용수익률 향상을 위한 순수 투자목적으로 투자를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투자사유는 우선 수익률 및 안전성이 우수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익률이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보다 약 1.4% 높고, 안전성 면에서도 신용 등급이 AAA이고 또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안전하다고 판단을 했으며, 또한 원리금 의 회수를 위한 추가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서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효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EKI의 주식매수청 구권과 EKI 보유 행담도개발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도 씨티증권으로부터 확약을 받았 습니다.

투자자금 집행은 총 614억 원을 2월 15일에 씨 티증권 계좌에 입금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통령핵심공약사항 추진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금년 3월 3일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주관 핵 심공약 추진상황 점검 결과, 정보통신부 소관 대 통령핵심공약사항 총 9개 과제 중에 정상추진이 7개 과제이고 2개 과제가 추가보완사항으로 점검 되었습니다.

정상추진 7개 과제는 목차에서 보는 바와 같이 IT 등 차세대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세계 최고 의 디지털강국 실현, 차세대 부품·소재산업 육 성, 수도권을 첨단 IT산업 중심지로 육성, DDA 협상에 적극 대비, 정보격차 해소, 정보화 확산을 통한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그러나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핵심공약사항인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구성과 가칭 방송통신위 원회 설치 문제는 현재 범국가적으로 계획을 재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제253회국회 위 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여러 조치사항 중 대책이 필요한 주요 조치사 항은 KT 통신대란 대책, 유·무선통신서비스 및 요금정책, 개인정보보호정책, 전파방송 기반 구 축, 정통부 불용품 지원절차 개선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봉** 정책홍보관리실장 수고했습니 다.

신임 전산원장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 2.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유 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강성종·권 선택 · 김낙순 · 김석준 · 김원웅 · 김태홍 · 김희선 · 김희정 · 류근찬 · 문학진 · 서상 기・심재엽・염동연・오영식・이경숙・이 목희 · 이상민 · 이종걸 · 진영 · 홍미영 · 홍 창선 의원 발의)
- 3. 電波法 一部改正法律案(이규택 의원 대표발 의)(이규택·안상수·심재철·황우여·주호 영 · 엄호성 · 정병국 · 윤건영 · 김충환 · 허 천・유필우 의원 발의)
- 4. 電波法 一部改正法律案(김석준 의원 대표발 의)(김석준·박승환·박세환·안상수·이인 기 · 고흥길 · 박재완 · 최경환 · 심재철 · 정병 국·이계경·안병엽 의원 발의)
- 5. 電氣通信事業法 一部改正法律案(이규택 의 원 대표발의)(이규택·안상수·심재철·황우 여 · 주호영 · 엄호성 · 정병국 · 윤건영 · 김

충환·허천·유필우 의원 발의)

- 6. 電氣通信事業法 一部改正法律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김석준・박승환・박세환・안상수・이인기・고흥길・박재완・최경환・심재철・정병국・이계경・안병엽 의원 발의)
- 7. 通信秘密保護法 一部改正法律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김석준・박승환・박세환・안상수・이인기・고흥길・박재완・최경환・심재철・정병국・이계경・안병엽 의원 발의)

(10시40분)

○위원장 이해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터넷 주소자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 항 및 제4항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6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 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승희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인 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 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 의원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 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의 유승희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인터넷주소의 사용자가 지불하는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수수료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공적 업무 예산과 구분되어운영되지 않을 경우 민간수수료가 준조세처럼 이용될 위험성이 있고 공공적 업무와 영리적 업무가 혼재되어 집행됨으로써 운영상의 혼란과 비효율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업무 중에서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분리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제가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과기정위 위원 님 열세 분과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 해서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종전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 한 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인 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및 단 체로 되어 있었으나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을 정보 통신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법인 및 단체로 한 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종전의 인터넷주소관리기관 업무위탁의 승인을 인터넷주소관리기관 지정의 승인으로 변경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업무 중에서 인 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분리한다는 내용입니 다.

네 번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터넷주소관리 기관의 업무를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인 터넷주소별로 구분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 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안에 대해서 간략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법안심사를 통해 이 법률 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봉** 유승희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전기통 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통신 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의원**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 회 이해봉 위원장님과 과기정위원회의 선배·동 료 위원님!

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출신 김석준 의원입니다. 제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제안설명을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하게 된 것 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3개의 개정법률안은 전파차단장치의 도입 및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 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입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대규모 입시부정행위가 적발되었고 이뿐만 아니라 공공장소 등에서 무분별한 휴대전화의 사용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빈발하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저는 전파차단장치의 도입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매우적절하며 유용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사회적 합의도 무르익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안보, 공공복리 등의 목적을 위한 전파차단장치의 도입 및 사용에 대한 필요 성이 논의되고 있으며 최근 프랑스, 일본, 인도 등의 일부 국가에서도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 부 분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미 우 리나라의 경우도 일부에서 전파차단장치가 설 치 ·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를 단속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행 법제상으로는 전파차단 장치의 도입 및 사용은 전파법 제29조의 타 무선 국의 혼신 금지 규정 위배, 전기통신사업법 제50 조의 전기통신 소통방해행위 금지 규정 위배, 통 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감청 금지 규정 위배에 해 당하는 불법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파차단장치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안 제29조의2에서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 공받는 무선국의 일시적인 제한을 위하여 기간통 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이하 "특정무선국")의 경우에는 혼신 금지의 예외로 하고, 정보통신부 장관은 국가고시 및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의 고 사장, 고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정규 교육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한하여 특정무선국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가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신청한 특정무선 국의 이용에 있어 목적 및 운용시간 등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무선국의 이용자는 그에 대한 사전고지 및 대체통신수단을 확보하도 록 규정하며 안 제82조의2에서 특정무선국에 대 한 엄격한 운용과 관리를 위해 허가 관련 위반자 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안 제50 조제1항에서 전기통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에서 전파법의 특정무선국의 경우를 예외로 하도록 하고, 통신 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안 제3조에서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규정에 있어 전파법에 따른 특정무선국의 경우에는 감청 금지의 예외사 항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디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본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관심과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봉 김석준 의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자인 이규택 의원의 요청에 따라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 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이상 6건의 법 률안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검 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4년 11월 18일 유승희 의원 등 스물두 분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 이 수행하고 있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및 단체가 담당 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취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재 인터넷주소의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는 도 메인이름 등의 등록수수료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수입예산으로 계상되어 집행되는 과정에서 등록 업무 외의 업무에 소요되는 인터넷진흥원의 인건 비로도 지출되는 문제가 있어 이 문제는 지난 2004년도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시에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수수료 는 민간의 영리적 업무의 성격을 가지므로 진흥 원이 수행하는 공공적 업무와 혼재되어 운용되는 경우 운용상의 혼란과 업무수행의 비효율이 발생 할 뿐 아니라 등록업무와 관계없는 진흥원의 업 무를 민간이 부담하는 등록수수료 수입으로 수행 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도 맞지 않으므 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개정안은 현재 인터넷진흥원 의 업무 중에서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분 리하여 민간기구로 하여금 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도메 인이름 등록수수료를 진흥원의 업무 수행 전반에 사용하는 것은 등록업무 외의 활동에 필요한 비 용도 등록수수료 수입으로 지불하게 되어 등록수 수료가 원가보다 높게 책정되어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되는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는 일응 그 타당성이 인정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관의 현황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그 조직은 1실, 2단,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인터넷정보센터에서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도메인 등록수수료 등의 사업수입과 주소자원관리기반 구축사업 등 협약 수입을 주된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메인이름 등록수수료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kr 도메인을 등록할 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를 통하여 징수하고 있는데 2005년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총수입 예산액 158억 원 중에서 도메인 등록수수료는 79억원으로 전체 수입 대비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흥원은 정보통신부와의 협약을 통하여 최상위 루트 미러 DNS의 운영시설을 관리하거 나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정보 통신부로부터 받고 있는데 2005년도 예산에는 12 억 원의 수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지출에 따르는 문제점입니다.

앞에서 본 진흥원의 수입 가운데 협약수입으로 지출하는 협약사업비에는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 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일반 인터넷 도메인 등록 자가 부담하는 도메인 등록수수료의 일부가 진흥 원의 등록업무 외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민간수수료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목적외의 사업에 지출되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진흥원 업무 구성에 있어서 도 공공적 업무와 영리적 업무가 혼재되어 운영 상의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주소관리주체의 변경에 관한 안 제2조제3호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법규정은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을 한국인터 넷진흥원과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위탁받 은 법인 및 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인터넷 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 는 없으므로 한국인터넷진흥원만이 인터넷주소관 리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및 단체를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관리를 공공기관에 맡기느냐, 민간에 맡기느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찬반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개정안에 대한 찬성 측 입장에서는

첫째, 인터넷주소관리기능을 순수민간기관이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등록업무에 소요되는 비용과 등록수수료 수입 간의 관계가 명확하게 되어투명한 등록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

둘째, 인터넷상에서의 도메인이름과 IP주소 등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인 ICANN 역시 민간기구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의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 민간기관이라는 점,

셋째,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복수기관이 운영함으로써 경쟁이 도입되어 등록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점,

넷째, 정부기관이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운영 경험을 독점할 경우 국내 인터넷산업의 발전과 시장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정안에 대한 반대 측 입장에서는

첫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주소자원관리에관한법률 제정 이전의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다시 설립하는 것과 같게 되어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진흥원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

둘째, 인터넷주소관리 업무는 공공성과 책임성 및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공공업무이자 비영리 업무이고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는 계층적 관리 체계에 따라 한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 다는 점.

셋째, 도메인 등록수수료는 일반 인터넷 이용 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도메인이름 등록자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연결되도록 .kr DNS를 이용 하는 데 따르는 부담이므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 에 부합한다는 점,

넷째, 도메인 등록수수료는 최종적으로 국내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 관리와 일반 인터넷 이 용자들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고 도메인이름 등록 자들만을 위한 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다섯째, 민간기업이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 되 는 경우 인터넷주소의 공공적 관리보다는 수익 증대에만 관심을 갖게 되어 인터넷 관련 인프라 의 보안 및 국가 인터넷기반의 안정적 유지를 등 한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주 장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론을 보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kr 도메인의 상업적 발전을 도모하 고 경쟁체제의 도입과 도메인 등록비의 전용을 방지함으로써 등록비용을 낮추는 등의 정책효과 를 기대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개정안과 같 이 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관을 민간법인이나 단체 에 맡길 경우 등록수수료의 타 용도 사용의 문제 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인터넷주소자원 관리체계의 등 록수수료가 원래의 용도 외의 경비로 사용되는 문제점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회계 구분의 불명확 성이 인터넷주소자원 관리주체의 변경 필요성과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등록수수료의 목적 외의 사용 문제는 향후 등 록업무 외의 진흥원 업무에 대하여 국가가 인건 비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거나 회계의 엄격한 분 리 등 예산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인터넷주소자원의 성격을 공공재가 아닌 것으로 보더라도 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에 있어 서는 일정한 질서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 며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와 자원이용 질서의 유 지를 시장에 맡기는 것이 반드시 이용자의 후생 극대화를 보장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 니다.

또한 현재 .kr 도메인 등록 통계 가운데 co.kr 도메인의 등록 개수가 46만 개로 전체 도메인 등 록 대비 약 78%를 차지하고 있어 인터넷주소자 원관리의 업무를 민영화하더라도 co.kr 도메인을 제외한 다른 도메인만으로는 재정적으로 안정된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을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장 현황을 고려한다면 인터넷주소관리 기관을 민영화하더라도 복수기관에 의한 경쟁체제 의 구축은 쉽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독점으로 인 한 폐해와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국제적 인터넷 관리체계가 국가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대외적 협상활동은 공적인 기구 가 담당하는 것이 대표성 및 일관성 유지의 측면 에서 보다 적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진흥원을 법정법인으로 신설하여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진흥원의 활동성과를 평가하 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인터넷관리기능을 진흥원에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는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 습니다.

따라서 진흥원의 인터넷주소관리 기능을 민간 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정책의 변경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전파법 · 전기통신사업법 · 통신비밀보호 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역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현재 수능시험에서의 부정행 위를 방지하는 등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전파 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통신비밀보 호법 등의 일부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모두 5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김석준 의원 대표발의 전파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이규택 의원 대표발의 전파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내용이 전파차단장치의 근거를 마 련하는 중심이 되는 법률안이고, 전기통신사업법 과 통신비밀보호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법 률안들은 각각 전파법의 개정내용을 실효화하기 위하여 현재 동 법률들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전 기통신소통의 차단을 허용하거나 전파차단장치에 의한 전기통신 송수신의 방해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법률안에 대해서는 논의의 핵심이 라 할 수 있는 전파차단장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한 검토보고 로 전체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파법 개정법률안들은 최근 휴대전화 등 통신 수단을 사용하여 대입 수능시험 등에서 부정행위 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또한 공공장소에서 무 분별한 휴대전화의 사용으로 소음을 유발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 한 방법으로 수능시험 고사장 등 공공복리에 필

요한 곳에 전파차단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사용제한에 대한 논의는 휴대전화 서비스가 개시된 시점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병원 등 의료시설에서 전파에 민감한 첨단 의료 기기의 오작동을 유발한다거나 비행기의 각종 기 기에 영향을 미쳐 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초래한 다거나 공연장 및 독서실에서 주변사람들의 시설 이용 편익을 저해한다는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 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는 서비스의 개시 시기부터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논의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창출·확대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였고,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전파간섭으로 인한 의료기기·항공기기의 오작동에 대해서는 뚜렷한 실증연구 결과도 없어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대한 논의가 입법정책의 문제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한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험 부정행위를 통해 국가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 한 사례로 인해 휴대전화 이용의 제한에 대한 논 란이 국가 정책적 관심사로 대두되게 되었습니 다.

먼저 개정안의 비교입니다.

이규택 의원 대표발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 파차단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 파차단장치의 설치 허용 여부를 다른 법률에서 판단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석준 의원 대표발의 전파법 일부개정법 률안은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전파차 단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하여서만 제한될 수 있고 이때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법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일반적이어야 하며 명확성을 가져야 합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명확하기 때문에무효라는 이론이 적용되어 위헌으로 판단될 수있습니다.

그런데 이규택 의원 대표발의안 제29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파 차단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근거법인 전파법에는 아무런 요건이나 절차 등을 정하지 않고 다른 법률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 써 법률의 소관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전파차단장치의 도입 및 사용에 관하여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확 보되지 아니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법률안은 내용 면에서 무선통신의 차단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마는 이규택 의원 대표발의안은 그 형식이 위와 같은 법제적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김석준 의원 대표발의안을 중심으로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취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개정안은 수능시험 고사장 등에 전파차단장치를 설치·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능시험 등에서의 휴대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사용한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공장소에서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등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함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현행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전파차단기의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휴대전화의 오남용으로 인한 규제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에서는 전파차단장치가 설치·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2004년도의 경우 독서실 극장 병원 등 3곳에 설치된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이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전파차단장치의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를 입법정책으로다룰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시기적으로도부작용이 더 확산되기 전에 그 허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수능시험부정 사건의 대책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과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무선전기통신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는 입법조 치가 법리적으로 가능하고 또 필요한지를 논의하 는 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국민의 기본권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의견 입니다.

전파차단장치는 휴대전화와 기지국 사이에 사용되는 주파수와 동일 대역의 주파수를 발생시키

는 무선국을 설치하여 휴대전화와 기지국 사이의 교신을 방해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수능시험 고사장 등 전파차단장치를 설치하여 전 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장소에만 국한하여 전 파를 차단하는 것은 극히 어렵고 전파차단장치가 설치된 인접지역에서도 휴대전화의 사용이 불가 능하게 될 수 있으며 휴대전화의 통화품질도 저 해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같은 전파차단장치가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습 니다.

전파차단장치의 설치가 휴대전화 사용자의 헌 법상 행복추구권, 통신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전파차단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수능시험 고사장 등 설치장소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통신을 방해하 는 것으로 헌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통신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전파차단장치는 설치장소 인접지역에서도 통 화를 불가능하게 하여 인접지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고자 하는 국민의 통신의 자 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도 침해할 수 있다고 주 장합니다.

이 입장에서는 또 전파차단장치를 허용하는 경 우 설치장소 내외의 국민들이 통신을 통하여 사 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고 설치장소 인접지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 결제, 모바일뱅킹, 주식거래 등의 서비스를 이용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 유를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개정안의 취지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통 신의 자유의 본래의 의의는 국민의 통신의 자유 를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 등 그것을 침범할 우 려가 있는 국가기관으로부터 통신의 비밀을 보장 하려는 통신비밀의 불가침에 있으므로 전파차단 장치로 인한 무선통화의 제한을 통신의 자유권 침해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보고 또한 전파차단장치의 설치로 인해 개인의 통신의 자유, 행복추구권 또는 프라이버시권 등의 본질 적 내용이 영구적으로 침해되는 것이 아니고 시 험을 보는 기간, 공연이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기 간 동안 일시적으로 제한될 뿐 아니라 이러한 기 본권의 제한에 대해서는 수험생이나 도서관, 공 연장의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시험응시, 도서관 이용 또는 공연 감상 등의 행위에 이러한 기본권의 일시적 제한에 대한 동의가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수험장 등의 인접지역에서의 휴대전화 이 용자의 경우도 중계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나 통화음영지역에서 휴대전화 사용자가 통화를 할 수 없더라도 이를 통신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듯이 무선통화의 이용은 권리가 아니라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수험장 등의 인 접지역에서 통화가 일시적으로 제한되더라도 이 를 통신의 자유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 니다.

생각하건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본질적 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 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휴대전화 이용자 의 행복추구권도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엄 정하고 공정한 입시관리는 교육제도의 근간을 이 루고 교육제도는 국가제도의 기본적 요소인 점과 공정한 입시관리를 통해 구현되는 수험생의 교육 을 받을 권리와 대학진학 기회의 정당한 보장을 통한 수험생의 행복추구권 역시 공공복리 차원에 서 보호되어야 하므로 수험장 주변 등의 휴대전 화 이용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 는 것이 헌법상의 기본권 보호 법리에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영업의 자유와의 관계입니다.

일부에서는 전파차단장치를 허용하는 것은 휴 대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방 해하는 결과가 되어 통신사업자의 영업의 자유 또는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고 주장합니다. 또한 헌법 제119조에 의하여 기 업의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바 전파차단장 치는 통신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 게 되어 헌법 제119조에 위반될 수도 있다고 주 장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전파차단장치의 설 치가 기업의 자유나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기본권의 영역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대학입시제도는 국가교육제도의 중요 한 부분이고 국가가 대학입학수능시험을 시행하 는 것은 국가가 국가기능으로서의 교육제도를 구 체화하는 활동으로 이를 통해 국민은 행복추구권

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기업 활동의 자유에 우선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 다.

이 같은 양측의 주장을 살펴보건대 수능시험일에는 시험지역 상공에서의 비행을 제한하고 직장인의 출근시간도 조정할 것을 권고하는 등 기업의 활동과 개인의 직업 수행에 제한이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전파차단기 설치를 반대하는 논리에 따르면 이러한 제한이 항공사의 영업의 자유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권도 침해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전파차단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전파차단장치를 생산하고 설치하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반대의 논리도 성립될수 있다는 점에서 전파차단장치의 설치가 통신사업자의 경제활동을 제한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약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입시제도의 시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정의와 국민에 대한 공정한 교육기회의 제공이라는 국가적 목표, 그리고 일시적인 통신의 자유와 개인 및 기업의 영업활동의제한 간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볼 때통신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도 수능시험 부정방지등 특수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관련 검토입니다.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관해 헌법 제37조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상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필요한경우에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법률에 의하여제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은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하며,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합하다고 할지라

도 가능한 한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는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파생되는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인 비례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위 네 가지 요건, 즉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목적의 정당성은 기본권제한법률로써 규율하려는 사항이 헌법 제37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공공복리에 해당되는 사항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서유지는 공공의안녕질서를 의미하며 헌법의 기본질서 유지 이외에 타인의 권리 유지, 도덕질서 유지, 사회의 공공질서 유지 등이 포함되는 것이고, 공공복리는현대적 복지국가의 이념을 구현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인류적 복지, 사회적 복지, 국가적 복지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 전파차단장치를 허용하는 입법목적은 휴대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수능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공장소에서 무분별한 휴대전화의 사용으로 소 음을 유발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 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질서유지의 목적 또는 공공 복리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 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방법의 적정성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서 전파차단장치를 허용하는 것은 수능 시험의 경우 적정한 시험관리를 통하여 수능시험 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전파차단장치의 설치라는 수단은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개정안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기지국에 인접한 수능시험 고사장의 경우에는 기지국의 전 파신호가 매우 강하여 전파차단장치를 설치하더라도 수험장 내 통신을 완전하게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동전화 외에도 WiBro, 5GHz 무선 랜 등 다른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휴대통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통신수

단에 대해서 각 주파수대역에 맞는 전파차단장치 를 별도로 개발하여야 하므로 하나의 전파차단장 치에 이러한 모든 무선휴대통신의 전파를 전부 다 차단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기대하 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파차단장치는 담뱃갑 크기의 소형으로 제작이 가능하여 휴대가 용이하 기 때문에 이러한 전파차단장치가 제한적으로라 도 법에 의해서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무선 보안시스템 기능의 차단, 수사기관의 통신차단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등 전파차단장치 의 설치로 효과적인 정책목표의 달성이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을 살펴보면 전파차단장치의 설 치 효과가 본래 의도한 바를 100%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전파차단기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인정 되지만 주파수대역을 탐지하여 탐지된 전파에 상 응하는 차단전파를 송출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 고 방향성 안테나의 사용, 전파차단판의 설치 및 차단기 설치 장소의 공간설계 개선 등을 통해 전 파차단장치의 기술적 한계를 크게 완화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파차단장치의 오남용은 기술의 오남용 에 대한 일반적인 대응 방법에 따라 처벌로 규제 하면 되는 것으로 오남용의 가능성 때문에 기술 이 주는 편익과 효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 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전파차 단장치가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전파차단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나 전파차단장치의 오남용 가능 성 등이 필요 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는 사유 가 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피해의 최소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피해의 최소성이란 추구되는 목적을 위해 비슷 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여러 수단들 가운데서 기본권을 가장 적게 침해하는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전파차단장치를 설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 책수단으로는 시험장에 휴대전화를 휴대하지 못 하도록 하는 방안, 또는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 기를 사용하여 휴대전화를 탐지하여 휴대전화 소 지를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습니 다.

개정안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금속탐지기나 전파탐지봉 등을 이용한 휴대전화 탐지 정책을 선호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전파차단기 허용에 찬 성하는 입장에서는 탐지행위의 가시성, 직접성으 로 인하여 수험생에게 오히려 과도한 심리적 부 담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문제 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파차단장치를 허용하는 정책이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바를 달성 할 수 있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생각하건대 수험장에서의 전파차단기 설치는 수험생들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시 험장 주변의 일반주민의 통신의 자유도 사실상 제한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서 허용하는 전파차 단장치는 금속탐지기나 전파탐지봉 등의 대체수 단과 비교할 때 피해의 최소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가장 적절한 정책수단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법익의 균형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법익의 균형성은 기본권제한법률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적법하고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발생하는 공 익의 증대가 동 법률의 제정으로 인하여 야기되 거나 감수되어야 하는 사익의 침해보다 더 커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개정안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개정안이 달성 하고자 하는 수능시험에서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의 방지 또는 공공장소에서의 피해 방지 등의 공익적인 측면보다도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인 인접지역의 휴대전화 이용자의 통신의 자 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자유, 경제활동 의 자유 및 통신사업자의 영업의 자유 등의 보호 이익이 더 크다고 주장하면서 기본권을 제한 당 하여야 할 아무런 공익적 이유나 필요성도 없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능시험의 성적이 수험생의 미래와 우 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공정한 시험관리를 통 해 유지되는 교육기본질서가 국가사회제도의 근 본을 이룬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수험시간 동 안의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범위에서 통신의 자유 등 사익을 제한하는 것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수 인하여야 할 내재적 한계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파차단장치의 설치로 인하여 침해되 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의 자유와 휴대전화 이 용자의 통신의 자유 등의 사익과 공정한 수능시 험 관리를 통하여 얻게 되는 공익을 비교해 볼 때 개정안의 내용은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규범과의 관계입니다.

일부에서는 전파법 제4조가 "전파에 관하여 조약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전파 관계 국제법인 전파규칙이 상위법인 바 ITU 전파규칙은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하고자 하는 주파수 대역을 이동업무용으로 분배하였고, 우리나라는 전파법상의 주파수 할당근거규정에 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할당하였기 때문에 전파차단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은 전기통신을 규율하는 각국의 주권을 인정하고 제 국민 간의 평화적인 관계와 국제적인 협력 등을 목적으로 선언하며 무선통신과 관련한 활동방향으로 다른 나라의 무 선국 간에 유해한 혼신을 피하기 위하여 무선주 파수 스펙트럼 대역의 배분 및 할당, 위성의 등 록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 헌장은 또 "모든 무선국은 그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다른 회원국 또는 공인된 운영기관 및 전파업무를 수행하도록 정당하게 승인되어 전파 통신규칙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기타 운영기관 의 전파통신업무나 통신에 유해한 혼신을 일으키 지 아니하도록 설치·운영된다."고 규정하고 있 습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과 협약 및 업무규칙 등은 국가와 국가 간의 전파 및 정 보통신 관련 협력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이 지 회원국 내부의 전파행정이나 전기통신행정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국내의 전파행정이나 전기통신행정에 대해 서는 국제적 규범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헌법 제6조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파법 제4조는 전파에 관한 조약의 규정이 전파법의 규정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파에관한 국제법이 국내법에 항상 우선함을 정하여헌법에 반할 뿐 아니라 전파행정에 관한 국내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국제전기통신연합한장의 전문의 취지에도 위배됩니다. 따라서 헌법에 배치되는 전파법 제4조의 내용은 입법적 정

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주관하는 전파 관련 국제법 규범체계가 국가 간 전파의 월경이나 주 파수의 중복으로 인한 혼신의 문제를 해결함에 주목적이 있으므로 국내 주파수 할당의 문제, 특 히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국가 간의 문제로 될 수 없는 국내에서의 전파차단기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제법 규정을 원용한 반대논리는 설득 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결론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험고사장, 교육 시설 등에 전파차단장치를 설치·운용하는 허가 의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다른 정책수단에 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는 점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점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무선통신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나 무선전화사용자의 통신의 자유 등이 공공복리적 요구에 의해 제한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파법에 공공복리 등의 목적으로일정한 경우 일정한 장소에서 전파차단기를 설치·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이 헌법해석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파차단기를 둘러싼 외국의 일반적인 논의는 무선통신사업자의 전파사용권은 일종의 재산권이 므로 규제기관은 허가의 조건에 따라 이 재산권 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전파차단기의 설 치는 이러한 재산권의 침해이자 무선통신사용자 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전파차단기 허용 반대의 입장과 무선통신을 사용하는 것은 권리는 아니고 하나의 특혜에 지나지 않으므로 전파차단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으 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편 절충적인 입장에서는 주유소나 운항 중인 비행기와 같은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전파차 단을 허용하되 향후에 전파관련 기술이 발전하면 은행, 식당, 극장, 교회 등 제한되고 한정된 지역 에서도 전파차단이 허용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전파차단장치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도 허용과 금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우 리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무선통신을 방해하는 행 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 처벌 된 사례는 없습니다. 캐나다는 경우도 개인의 자 유와 공공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유 로 전파차단기의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현재 실험국의 형태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 공연장, 극장 등에 설치할 수 있고 프랑스의 경우 2004년 말부터 긴급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극장, 공연장 및 영화관에 전파차단기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인도에서는 의회와 교도소에 전파차 단장치를 설치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또 멕시 코에서도 교도소, 은행, 성당 등에서 전파차단장 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와 유사한 민주자유헌법체계를 갖 고 있는 일부 선진 외국의 경우에서도 전파차단 장치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은 전파차단장치 허용 의 문제가 헌법상 기본권 등 법률원칙상 금지될 성질의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경우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전파차단장치를 설치 운용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와 그 요건의 결정은 입법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외국 사례에서 전파차단장치가 주로 활용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경호나 군사작전 또는 대테러활동 등의 분야에서 우리도 전파차단 장치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 한 경우에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 치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반드시 그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경우 전파의 사용과 관 리에 관한 기본법인 전파법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해봉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중 정부 측 현안보고, 6건의 법 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일괄해서 질의와 대체토론에 들어가도 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부 현안보고하고 6건의 법률안, 특히 6 건의 법률안 중에서 일부는 공청회를 거쳐서 여 러 위원께서 모두 질의 답변을 하시고 또 들은 내용입니다마는 이번 6월 국회가 9월 국회와 사 이에 석 달의 간격이 있고 또 상반기를 결산한다 는 의미에서 여러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시되 15 분 정도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지켜 주시고 부족한 분에 대 해서는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선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택 위원 권선택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전화번호 안내서비스에 대한 정통부 입장, 향후 계획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 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선사업자의 경우에는 114안 내, 전화번호부, 인터넷 이렇게 서비스가 진행되 고 있고 또 무선사업자의 경우에는 아주 극히 일 부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작년 2월에 전기통신사 업법 관련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보 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일반에게 음성ㆍ책자ㆍ인 터넷 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 다." 이렇게 제공의무를 신설했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둔 것은 전화번호라는 것은 어 떤 개인 재산이 아니라 공공의 재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 관리 책임이 있다 이런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

○**권선택 위원** 그런데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 습니다. 이것은 사업자와의 협의 또 가입자의 동 의 이런 선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서 2년간의 사전 준비기간을 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법이 개정된 지 약 18개월, 1년 반이 됐습니다 마는 그동안 어떤 사항이 진척됐는지 묻고자 합 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말씀을 바로 들으시도 록....

○**권선택 위원** 그러면 담당국장이 간단히 해 주 시지요.

○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국장 김동수 정보통신 진흥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통신사업자들과 번호안내 부분에 대해 서 협의를 진행하면서 시행규칙을 정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권선택 위원 규칙은 내년 2월에 시행되는 것 을 전제로 한 것이지요?

○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국장 김동수 예, 그렇

습니다.

○**권선택 위원** 대개 시행규칙에 담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국장 김동수 시행규칙에는 대상 서비스를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번호안내 의무대상으로 할 것인가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선택 위원 우리나라가 IT강국이면서도 이러한 서비스 분야에 대한 것이 매우 소홀히 취급되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법에 보면 음성이나 책자나 인터넷이나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같이 해도 관계 없고요.

그런데 음성의 경우에는 이용요금이 붙기 때문에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이 될 것같고 인터넷은 젊은층, 대도시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컴퓨터를 구입해야 되고 또 인터넷에 가입해야 돼서비용 측면에서는 차별적인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책자의 경우에는 현재 무료 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무료 배부를 할 수 있고,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상당히 이용률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매체 중에서 지금 어떠한 매체가 가장 적합한 매체로서 검토가 되고 있습 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지금 유선 쪽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책자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동통신 부분에는 책자로 발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전화 등 안내대상 확대…… 지금 어느 것이 가장 우선으로 생각되고 있는가는 좀……

○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국장 김동수 정보통신 진흥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법에서 세 가지 방법을 통신사업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고 사업자들이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권선택 위원 이동통신사업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거나 결정된 내용 이 따로 있습니까?

○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국장 김동수 그런 것은 없고요, 사업자들의 분위기는 아마 인터넷 안내방법을 우선 선호하는 것 같고요. 또 A/S센터

를 통해서, 자기들 콜센터를 통해서 일부 음성안 내서비스를 병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권선택 위원 그러면 각 매체를 선택하는 것은, 물론 법에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매체에 대해서 어떤 수요조사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사업자가 결정하는 것도 좋겠지만 정통부가 입장을 갖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단계로 하겠다는 정책방향이 중요 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국장 김동수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는 없고요, 이 서비스 자체가 법으로 처음 결정되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사업자들의 자율에 맡겨서 시행을 해 보면서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해서 입법을 보완하는 것을 앞으로의 추진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권선택 위원 외국의 예를 보면 대개 유·무선 통합 번호안내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 선·무선을 같이 병기해 가지고 하는 서비스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 까?

○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국장 김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외국의 경우는 대부분 유선사업자가 자회사 형태로 무선사업자를 많이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사업자에게 자율권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서 발간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강제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자들이 협 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가능한데 현 행 규정상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 릴 수 있겠습니다.

○권선택 위원 물론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요.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정통부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떤 입장을 가지고 하느냐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국장 김동수 저희 입 장에서는 일단 시행을 해 보고…… 이것이 법에 처음 강제됐기 때문에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부담 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 당시에도 논의가 됐던 것처럼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것을 선택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사업자들 에게 위임하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입법을 했고 앞으로 진행 과정, 운영 과정을 봐 가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보완하면서 입법도 보완해 나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선택 위원 물론 인터넷도 중요합니다만 전 화번호부의 경우에는 이용도가 떨어진다고 생각 해서 조금 비중을 낮게 두는 것 같습니다만 2000 년 갤럽의 조사를 보니까 자영업자, 가정주부의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별로 보면 특별시나 광역시에는 53%, 도 지역이 80% 해서, 중소도시나 농어촌 이런 산간벽지에 서 이용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책자를 발간하는 서비스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국장 김동수 통신사업 자들에게 자율성을 주었기 때문에 이용되는 것을 봐 가면서 책자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 로 사업자들과 협의해서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입법을 보완해서 가는 것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 라고 생각합니다.

○권선택 위원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외국에 보면 전화번호부도 무선 유선 다 되어 있습니다. 법체계를 보면 책자 발간을 의무화시 킨 나라가 많이 있더라고요. 미국, 영국, 호주, 일 본과 같은 나라는 책자 발간을 의무화시켰습니 다. 그리고 번호정보를 보편적 서비스로 간주해 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 다. 우리도 이러한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도입해 서 번호안내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런 정도의 서 비스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문제 에 대해서 장관님의 장기적인 대책이나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 는 전화번호 이용안내, 옐로우북(yellow book)이 라든가 화이트북(white book) 같은 것은 외국에 서 아주 오래 전부터 책으로 인쇄해서 만드는 것 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유선전화 부분은 그 런 것을 따른 것 같은데 이동전화 부분은 이번에 법이 만들어진 것이 세 개 중의 하나로 선택적으 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두 개 이상을 안내방법으로 강제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방 금 실무국장이 말씀드린 대로 제공하는 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향후에 법 개정이 나 보완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택 위원 물론 시행규칙이 법 테두리 내에 서 만들어지겠습니다만 앞으로 세 개의 서비스 제도에 대해서 전부 하면 더욱 좋고 단계적으로 매체의 범위를 넓혀 나가는 쪽으로 검토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법에 어느 정도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IT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 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마다 신산업경쟁력강화사업과 우수신기술지정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쟁력 강화 사업을 보니까 1999년부터 시행이 되어서 2001년 까지는 지원액이 늘어나다가 2002년부터 계속 줄 어왔습니다. 이에 비해서 매출액은 상당히 늘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170억이 었는데 저희들이 정통부에 내년도 예산 책정된 사항을 알아보니까 오히려 160억으로 줄었습니 다. 우수신기술지정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원액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매출액을 크 게 높아가는 현실에 있는데,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과연 정통부가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 도 의지가 있는지 우려가 됩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인데 장관님께서 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예산 확보를 좀더 적 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 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중소기업 정책 지원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몇십년을 두고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이 굉 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어 왔고요, 자금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인적자원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가지각색으로 중소・벤처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 가 다양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자금지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가 있는 것을 이해를 하고 금년부터 특별히 저희들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IT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IT중소·벤처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두고, 직접적인 자금지원 같은 것 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보다 건전한 환경 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권선택 위원 벤처기업의 생태 환경도 물론 중 요하지만 지금 워낙 어렵기 때문에 자금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IT신기술지원사업을 보면 선정기업 대비 신청기업이 6.3 대 1이 됩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자금수요가 그만큼 많다…… 또 지금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이 늘지는 못하더라 도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 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해 달라는 차 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저희들이 IT 스머프 (SMERP)라고 중소기업 재도약 프로그램 속에 여러 가지 전문협의회를 만들면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벤처캐피털리스트도 오고 일반적 인 벤처업체도 다 오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택 위원 산업경쟁력사업은 평균 과제당 2 억 1000만 원, 우수신기술지원사업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산업경쟁력사업은 단위 금액이 적어도 3억 정도는 되는 것이 맞겠 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160억 확보는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이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장관님께서는 그 범위 내에서 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 말씀하신 대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선택 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벤처기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만 자금 지원이 가장 핵심적으로 검토되어야할 분야라고 생각되어서, 아까 장관님께서 스퍼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시겠습니다만 자금 지원에 각별한 노력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봉** 권선택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 위원** 김낙순 위원입니다.

KT의 무선재판매에 대해서……

제가 지난 4월 임시국회 때 장관한테 공정경쟁 폐해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장관의 답변은 통신위원회에서 우선 점검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한 다음에 방침을 세우겠다고 답 변을 하셨는데 진척이 있어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저희들이 통신위원회 에 조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낙순 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6월 중순에 착수해서 한 두어 달 정도 뒤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 다.

○**김낙순 위원** 그것을 왜 그렇게 늦게 하지요? 바로 하실 수 없는 사정이었나요?

○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국장 김동수 정보통신 진흥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신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통신위에서 조 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김낙순 위원 통신위원회가 독립기관입니까?

○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국장 김동수 예, 독립 기관입니다.

○**김낙순 위원** 독립기관이라는 것은 상부기관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국장 김동수 정보통신 부장관으로부터 독립해서 독자적인 조사와 심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낙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통신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하든지 간에 통신위원회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정보통신부하고 관계가 없는 일 이네요.

○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국장 김동수 저희와 협 의를 계속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낙순 위원** 아니 독립된 기관이 왜 여기와 협의를 합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통신정책 전반에 관해 서는 정보통신부가 방향을 정하고 있고요.

○**김낙순 위원** 글쎄 그것을 물어보는데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장관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국장이 답변한 것과 장관이 답변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통신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개별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신위원회가 심결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 안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존중하고 따라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낙순 위원** 통신위원회에서 별다른 조치를 안 하면 정보통신부로서는 별 대책이 없다, 그렇 게 들으면 됩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든가 그럴 때는 통신위에 조사를 의뢰한다든가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 ○**김낙순 위원** 아니, KT 무선재판매가 문제가 있으니까 조사 의뢰를 하는 것 아닙니까?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의논하느 라고 시간이 좀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 ○김낙순 위원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를 의논하 는 데 두 달이 걸렸는데 조사를 하면 몇 달이나 걸립니까?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방금 듣기로 한 두어 달 걸리면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 ○김낙순 위원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것 같 아요.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는 데 두 달 걸리고 그 계획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데 두 달 걸리고 그런다는 말씀 아닙니까? 정보통신 부에서 이 일에 대해서 너무 남의 일처럼 생각하 시는 것 같아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그 부분에서 KT가 KTF에 내는 망 이용 대가 가 지나치게 낮다 해 가지고 타 통신사업자들이 상당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것 알고 계시지요?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
- ○김낙순 위원 그런데 그 타 통신사업자들이 문 제 제기하는 부분이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장관은 그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그 문제에 대해서 방 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위에 조사를 의뢰했습니 다.
- ○김낙순 위원 그러면 재판매와 관련해서 KT 와 KTF가 서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는데 계 약을 체결했을 때 문제점까지도 거기서 파악을 하게 했습니까?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거기서 조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낙순 위원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계획 세우는 데 두 달이나 걸렸으면 뭐뭐 조사하는 것이 다 계획에 들어 있을 것 아 닙니까?

만약 안 들어 있다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거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조사를 하 십시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제가 우리 국장한테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 ○김낙순 위원 예.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조사 세부항목을 우리 가 정해서 줍니까, 아니면 통신위에서 자체로 정 합니까?
- ○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국장 김동수 통신위 자 체에서 합니다.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됩니까?
- ○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국장 김동수 예.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알게 될 때는 따로 보 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낙순 위원 그러면 뭐하는 데 두 달이 걸렸 다는 거예요? 통신위에서 알아서 하는 데 무슨 계획 세우는 데 두 달이 걸렸어요?
- ○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국장 김동수 통신위에 서 계획을 세우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 ○**김낙순 위원** 통신위에서 무슨 계획을 세웠는 지 알지도 못한다면서요?

계획서 가져와 보세요. 답변을 일관성 있게 해 야지.....

- ○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국장 김동수 통신위에 서 계획서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낙순 위원** 지금 통신위에서 뭐를 조사하고 하는 것을 같이 상의를 해가면서 한다면서요?
- ○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국장 김동수 저희는 이 건에 대해서 조사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같이 협 의를 했고요, 조사계획은 통신위원회에서 자체적 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 ○김낙순 위원 아니, 이 건에 대해서 어떠어떠 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이런 것을 조사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통신위원회에다가 얘기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 안 해 줍니까?
- ○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국장 김동수 PCS 채 판매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문제가 됐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떤 방향만 서로 공감을 했 고요, 구체적인 조사계획은 통신위원회에서 수립 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낙순 위원 제가 지금 한 세 가지 정도가 조 사대상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하고 물어봤잖아 요. 그 부분은 당연히 들어갈 것 아닙니까?
- ○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국장 김동수 그 부분 은 확인을 해서 나중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 니다.
- ○김낙순 위원 그것 확인해 가지고 가능하면 빨 리 저한테 주세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6월에 조사 착수한다 니까 빨리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김낙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기 조사를 했다고 그러면 조사를 하는 항목에 제가 지적하는 항목이 들어갔나 안들어갔나를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안 들어갔으면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잘 알겠습니다.

○김낙순 위원 그다음에 KT 초고속인터넷에 대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는 여부가 6월 안에 결정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 6월 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낙순 위원 이것은 KT가 초고속인터넷 사업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반드시 지정이 되어야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또 그런 부분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정통부에서도 6월 안에 결정을 하겠다 하는 방침을 세우신 것 같은데 현재 KT 시장점유율을 보면 50% 이상이지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

○김낙순 위원 하나로가 22.7%, 두루넷이 10.6%, 나머지가 16%인데 현재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100여 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 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그렇습니다. 대체로 큰 회사들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고 SO 위 주로 되어 있는 작은 것들이 좀 숫자가 많습니 다.

○김낙순 위원 그런데 그것과 비교해 보면 이동 통신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3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SKT가 51.1%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 SKT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되어 있지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그렇습니다.

○김낙순 위원 그렇다면 100여 개 이상 되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KT가 50.7%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 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6월 말에 완전히 해가지고 답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대체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 있습니다. 시장점 유율뿐만 아니고 지적하신 바대로 시장진입 장벽이라든가 가입자 전환 장벽, 시장 성과, 경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하겠지만 말씀하신 부분에대해서 저희들 내부에서도 공감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김낙순 위원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도 나왔는데, 파워콤이 이쪽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보고서에 보면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되어 있네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현재 허가를 안 할 법 적인 근거가 미약합니다.

○김낙순 위원 그런데 KT가 51%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업체들이 상당히 영세한 업체들인데 파워콤이라는 회사가 또 들어간다고 그러면 결국은 KT하고의 경쟁보다는 작은 회사들이 전부 죽어나는 결론에 도달할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될 것 같은데요. 아무리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래도 시장이 완전히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그 점은 사실 좀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사전적으로 진입을 못하게 하는 방안은 없고요. 또 WTO에서 시장을 미리 봐서 사업자 수를 규제한다든가 하는 것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도적인 장치나 약정 같은 것으로 해서 시장교란 요인을 적게 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낙순 위원 파워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나머지 영세사업자들은 다 죽는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경쟁력이 전혀 없거든요. 나머지다 죽어도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장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이동 통신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유효경쟁체제를 도입해 가지고 시장을 잘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

○**김낙순 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 안 돼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아시다시피 현재 유효 경쟁체제 속에서 진입을 못하게 한다든가 하는 것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낙순 위원 그래도 어떤 방법을 택해야지요.

시장이 교란되고 엉망이 될 거다 하는 것을 뻔히 예상하면서 법적으로 이것을 안 내 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정책을 책임지는 주관부서로서 직무태만이라고 할까, 나태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깊이 한번 연구를 해 보시자고요. 뻔한 결과를 놓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여하간 파워콤이 시장에 들어오면 상당히 충격이 있을 것 같고 또 그에 따라서 초고속시장이 상당한 구조개편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낙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선시장에 유효경쟁 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워낙에 지배적 사업자의 규모가 크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낙순 위원 아직 안 하고 있지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이동통신 쪽보다는 명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김낙순 위원** 그러니까 유선에 유효경쟁 정책 이 있어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요금인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 시려고 하는 후발사업자를 지원해 주는, 이동통 신에 번호이동성을 시차적으로 한다든가 하는 부 분은 적용이 안 돼 왔습니다.

○김낙순 위원 그런데 보고서 12페이지에 유효 경쟁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어 서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유효경쟁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인지, 앞으로 한다는 것 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것입니 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

○**김낙순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선시장이라는 것이 KT하고 후발사업자 인데 현재 정통부가 KT에 대해서 행정지도할 수 있지요, 아니면 이제는 행정지도가 전혀 안 됩니 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는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낙순 위원** 제가 지난 상임위에서도 KT문 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가 통신위원회

에까지 가게 되는 이런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그리고 KT가 민영사업자에게 넘겨주면서 계약서대로 이행을 안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계약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도를 하시고 그대로 이행이 안 되면 이것 계약 무효화해야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그 부분 점검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낙순 위원 지난번에도 점검한다고 그러고 두 달이 지났는데 이제 와 가지고 또 점검한다고 그래서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일처 럼 성의 없이 하지 마세요. 제가 이것 끝날 때까 지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 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봉** 김낙순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 대구 달서병 김석준 위원입니다.

우선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루고자 하는 질의를 제목부터 열거하고 하나하 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주파수 이용과 분배 정책에 대한 문제, 소비자 편익을 위한 단말기 보조금 금지정 책에 대한 문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유효경 쟁정책에 대한 문제,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대책 을 강구해야 되는 문제, 기존 휴대폰 식별번호의 3G 사용 여부 문제, 전파감시고도화 사업 추진 문제, 행담도 개발사업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의 투자 미숙과 투자자금 회수문제 등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봉 위원장, 홍창선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첫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의 EKI 외화채권 인수 과연 아무런 외압이 없었습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외압 이 없었다라는 조사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김석준 위원 좋습니다.

우정사업본부와 교원공제회에 대한 한나라당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조사에서 나타난 의문 점들을 살펴보면 한 여섯 가지 정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양 기관 공히 최종투자 결정을 내린 시기 가 2005년 2월 2일과 2월 3일 거의 일치한다는 점, 둘째 양 기관의 어느 누구도 도로공사와 접

촉하거나 심지어 통화조차 하지 않고 투자를 결 정하였다는 점, 셋째 행담도개발(주)에 대한 김재 복 개인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 넷째 투자 근거로 내세운 자료가 자체조사 또는 자체 의뢰하여 확보한 것이 아니라 모두 씨티증권과 법무법인 광장의 의견서에 의존하였다는 점, 다 섯째 도공과 행담도개발(주) 간에 체결한 자본투 자협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 는 점, 마지막 여섯 번째로 이후 주싱가포르 대 사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재정 경제부, 동북아시대위원회, 청와대정책실, 청와대 전 인사수석 등의 집요한 로비와 외압을 했던 EKI가 정작 채권 매입 당사자인 우정사업본부와 교원공제회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 은 정황으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 다.

질의합니다.

이번 외화채권의 상품성에 대한 평가가 어땠습 니까?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사실 우본에서 책임경 영제로 하고 있어서 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우정사업본부장입니다. 국내 평가기관에서 공히 AAA를 받았습니다.
- ○**김석준 위원** 그러니까 두 개 신용평가기관의 최상위 등급 때문에 했다?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그렇습니다.
- ○김석준 위원 그렇다면 채권시장에서 매우 우 량한 상품 다시 말해서 누구나 매입하고 싶어 하 는 상품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까?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저희들로서는 구비요 건이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그 평가기준으로서는 충분히 매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봅니다.
- ○**김석준 위원** 평소에 씨티증권과 거래가 많았습니까?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현재 4900억 정도 되는데 전체 채권 투자액에 비하면 씨티증권과 거래하는 게 약 3, 4% 됩니다.
- ○김석준 위원 씨티증권 송준용 상무 알지요?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개인적으로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마는 이번 과정에서 이름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 ○**김석준 위원** 장지훈 연구원하고 평소에 친밀 한 관계였습니까?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석준 위원 그러면 평소에 친분 관계도 아닌데 수익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는 그렇게 좋은 상품을 왜 그쪽에서 인수하라고 제의했다고 생각합니까?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씨티증권 측에 채권발행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송 상무가 그 팀의 팀장으로 있습니다마는 팀장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채권매수 규모가 큰 우정사업본부나 교원공제회에 먼저 투자 제의를 한것 같고 우정사업본부나 교원공제회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그 투자 제의에 대한 리스크 관리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매수를 한것입니다.
- ○**김석준 위원** 본부장이 어떻게 송준용 상무의 생각을 그렇게 잘 꿰뚫어 보고 있지요?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아닙니다. 저도 그 후 에 들은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 ○**김석준 위원** 그리고 송 상무가 우정사업본부 나 교원공제회에만 출입한 것은 아닐 텐데 왜 이 두 기관만 선택해서 요청했을까요?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시피 그 팀원 중에 송 상무 외에도 다른 팀원이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팀장이다 보니까 규모가 큰……
- ○김석준 위원 추측이신 거죠?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예, 그렇습니다.
- ○**김석준 위원** 이러한 정도의 상품이라면 공모 를 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데 왜 사모방법을 택했습니까?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그것은 씨티증권의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송 상무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 드린 점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김석준 위원** 풋옵션 관련 채권을 취급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없습니다.
- ○김석준 위원 그렇다면 매입을 결정하기 전에 풋옵션 관련 내용을 좀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정 상적인 것 아닙니까?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그래서 채권투자 제의 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 나름대로는 법무법인 광 장으로 하여금 풋옵션의 법률 효력성에 대해서 타진해 본 결과 효력성이 있다라고 해서 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 ○김석준 위원 채권 매입 이전에 도로공사 측이 나 교원공제회와 유선 혹은 무선상 접촉한 일이 있습니까?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없습니다.
- ○**김석준 위원** 행담도 현장조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없습니다.
- ○**김석준 위원** 행담도나 김재복 사장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을 확인했습니까?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투자 결정하기 전에는 없었습니다.
- ○김석준 위원 그 뒤에는 했습니까?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그 후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5월 16일부터 6월 9일까지 받았습니다. 수감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내용을 일부 알게 되었습니다.
- ○**김석준 위원** EKI나 HIDC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 ○**김석준 위원** 그러면 대체 뭘 가지고 검토했습니까?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결국 씨티증권에서 제 시했던 전체적인 채권의 수익률 그다음에 신용평 가기관의 높은 평가, 그리고 사실상……
- ○김석준 위원 당시에 광장이 EKI의 법률자문 회사라는 것 알고 있었습니까?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몰랐습니다.
- ○**김석준 위원** 행담도가 산업단지여서 휴양시설을 못 짓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몰랐습니다.
- ○**김석준 위원** 2개의 신용평가기관이 AAA로 평가했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 다 읽어봤습니까?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예, 그것은 읽어봤습니다.
- ○김석준 위원 어땠습니까?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결국 도로공사가 담보할 수 있는 담보부채권이라는 것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석준 위원 EKI가 한국은행에 제출한 파생 금융상품신고서에 따르면 2003년 무디스가 행담 도사업을 Baa2로 평가했다고 되어 있으나 동북 아시대위원회가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B-를 받 았다고 했는데 이 내용 들은 적이 있습니까?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그전에는 들은 적이

- 없습니다.
- ○**김석준 위원** 이번 감사원 과정에서 알았습니까?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그렇습니다.
- ○**김석준 위원** 도로공사에 풋옵션이 있기 때문에 AAA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예.
- ○**김석준 위원** 요체는 도로공사에 대한 풋옵션 으로 받은 자금을 채권단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래서 질권 설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예.
- ○**김석준 위원** 우리은행 등 5개 금융기관에서 신디케이트론을 하려다가 불발로 그친 사실을 언 제 알았습니까?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감사원 수감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 ○김석준 위원 당시에는 몰랐지요?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예.
- ○**김석준 위원** 결국 외부에서 던져 준 자료만 믿고 투자를 결정한 것이지요?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예, 그렇습니다.
- ○김석준 위원 자체적으로 확인하려는 의욕도, 노력도 않고 남이 던져 준 것을 그것이 독인지도 모르고 덥석 받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우정본부를 예금자나 국민들이 신뢰하겠습니까?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당시로서는 리스크가 큰 투자였기 때문에 리스크관리팀을 나름대로는 동원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 ○김석준 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 당시로서는 나름대로 검토해야 될 부분을 검토했 다고 봅니다.
- ○**김석준 위원**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잘 했습니까?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아직은 여러 가지 감사원 수감 과정에 있어서 부분별로 법률적인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석준 위원 지금까지의 말이 사실이라면 외부기관이 수탁하면 되는데 왜 하필 금융사업단이 필요합니까?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자체 조성된 자금은 저희들 나름대로 운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총 운용 자금 47조 정도도 이런 식으로 운용합니까?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저희들 나름대로는 절 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투자금 6000만 불을─한화로는 614억 원 정도 되는데─전액 회수할 수 있습니까?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현재로서는 풋옵션에 대한 질권 설정 부분을 포함해서 나름대로는 판단하고 있는데 감사원 수감 과정에 있어서 다소 법률적인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계획입니까?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풋옵션에 대한 질권 문제가 법률전문가에 따라서 다소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 다.

○김석준 위원 법무법인 광장의 의견도 잘 알고 있겠지만 그 내용은 EKI가 2009년 1월 30일 이 후 1억 500만 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지 그 돈을 우정사업본부와 교원공제회에 반드시 주어 야 한다는 그러한 뜻은 아닌데도 어떻게 안정적 이라는 뜻으로 얘기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질권자인 외환은행이, 풋옵션 질권계약서에 보면 풋옵션을 행사하고 난다음에 풋옵션 행사자금은 EKI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외환은행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외환은행에서 채권자한테 회수하는 것으로 계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결국 문제가 발생해서 돈을 회수해야 할 경우에 채권만 가지고는 전액 회수할 수없기 때문에,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질권을 설정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안전장치로 질권을 설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문제는 현재 도로공사가 3차례에 걸쳐서 EKI의 풋옵션과 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 요청을 거부했다는 점과 주식 담보방식이 아니라 경영권 담보방식으로 추진하기로 양자 간 합의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EKI 임의로 주식을 매각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자본투자협약을 근거로 주주협약 파기나 투자 협약을 파기하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그 부분에서도 법률전 문가 사이에 다소 이견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본투자협약에 나타나 있는 그 부분하고 주주협약이 무효가 되었을 때 자본투자협약까지 무효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자본투자협약에 나타나 있는 보유주식의 매각 처분의 내용에 질권까지 포함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나름대로 자문을 구한 바에 의하면 그 부분이 다해당된다고 하는데 이번 감사원 수감 과정에 있어서 다소 이견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너무 유리하게만 판단하지 마시고, 아까 채권설정 얘기를 했었는데 자본투자협약 4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생각하지 않습니까?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자본투자협약에는 그 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질권설정도 처분에 속한다는 점을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당시로서는 저희 실무 자들이 다소 미숙해 가지고 처분의 내용 중에 질 권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

○김석준 위원 우정사업본부 내부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하다못해 전화 한 통화만 했더라도 채권을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고 그것을 지금 후회하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후회하고 있습니까?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계속해서 법률 자문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법률 자문이 문제가 아니라 솔직히 지금 후회합니까, 잘한 것으로 생각합니까?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아직은 다소 부분별로 당시에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김석준 위원** 만약 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 겠습니까?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종적인 순간에 주간계약사인 씨티증권하고 수탁사인 외환은행 또는 상품 제공 때 법무적으로 설명을 해 주었던 광장까지 포함해서 법률적인 쟁송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이번 사건은 HIDC와 씨티증권

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소한의 신의 성실의 자세가 없이 진행 한 우정사업본부 담당자들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 다. 따라서 손실 발생을 대비하여 관련자 전원의 재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보 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아직 감사원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나름대로 조치를 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본 건은 우체국 예금자금운용지 침 7조2호, 동 29조1항, 25조3항 등 여러 가지를 위배했지요?

○무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위배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임전결세칙에 따라서 진행된 내용입니다. ○김석준 위원 이번 행담도 사건을 보면서 본 위원은 심히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예금자 와 보험자의 귀중한 자산이 이처럼 허술하게 운 용되고 있다는 점과 현 정부가 그토록 목소리를 높이는 개혁의 대상이 바로 우정사업본부였다는 사실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금까지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예금자와 보험자뿐만 아니라 우체국을 아껴온 온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자 직무유기이고 매우 통탄할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정사업본부는 47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면서도 금융감독기구의 변변한 검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주먹구구식 운용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체국예금과 보험도 금융감독원의 정기적인 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본 위 원이 그 법안을 곧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답변을 정리해 보면 우정사업본부가 법적 이해가 부족했고 수익성과 안정성을 노린 통상적인 업무처리가 제대로 잘 안 된 상태에서 절대 외압은 없었다는 주장만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채권 매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허술하고 의문점들이 많습니다.

주싱가포르대사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동북아시대위원회, 청와대 정책실, 청와대 전 인사수석 등 권력 상층부에집요한 로비와 외압을 했던 EKI가 정작 채권매입 당사자인 우정사업본부와 교원공제회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납득할 국민이별로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 했던 항목에 대해서 추가질의에서 하거나 혹시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재일 위원 변재일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택 위원께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전화번호 안내서비스와 관련해서 전기통신사 업법 제38조6항 여기서 말하는 음성, 책자, 인터넷 등으로 안내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사업자가음성이든 책자든 인터넷이든 알아서 하면 된다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따로따로, '또는'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 모든 통신사업자는 음성이든 책자든 인터넷이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한 가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

○변재일 위원 현재 이 법에서 KT를 중심으로 해서 114안내하고 전화번호부를 하고 있는데 KT 도 114안내를 포기해도 되는 것입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새로 만드는 법 그대로 해석하면 그럴 수도 있게 보입니다.

○변재일 위원 법에 의한 행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114안내는 어떻게 할 것이냐, KT도 앞으로 전화번호부 책자를 인쇄 안 해도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저도 이번에 이 사항에 대해서 아직 깊이 있는 내용을 자세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이없는 경우에는 프린티드 머티리얼 이외에는, 114음성으로 서비스 해 주는 것 이외에는 알리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 새로만든 법은 인터넷을 이용함으로 해 가지고 책을인쇄하는 경비를 오히려 줄일 수 있는 생각이 들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따로따로 떼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변재일 위원** 이 법에 따르면 KT가 114안내를 포기해도 됩니다. KT가 114안내를 하는 근거는 뭐지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가입자의 편의성이라 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변재일 위원 가입자의 편의성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갖다가 이용약관에 넣어서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KT가 114안내를 하는데 따른 1회 문의에 대한 요금 그것도 KT가 알아서 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국장 김동수 정보통신 진흥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14안내와 전화번호부 책자 발행 문제는 한국 전기통신공사가 분리 발족되면서 이용약관으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적근거 없이 KT가 발행하고 서비스를 해 왔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러니까 이용약관을 변경해서 KT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면 법에서 해 주어야되지요?

○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국장 김동수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아까 말씀하신 요금 부분은 그것이 공공요금 성격이기 때문에······

○**변재일 위원** 어떻게 그것이 공공요금 성격이 됩니까?

○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국장 김동수 114안내 서비스 요금은 과거에도 KT에 요금으로 이용약 관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관에 대한 요금 승인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규제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변재일 위원 어떻게 되었는 간에 KT가 제공하는 지배적 통신사업자로서의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114안내 요금을 인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공요금에 넣는다든지 이것은 법리적으로 앞뒤가안 맞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국장 김동수 지금 KT가 제공하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서비스의 이용약관에 들어가서 포함이 되면 저희들이 인가를 해 주거나 신고를 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빠지면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창선 간사, 이해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변재일 위원 지금 KT가 114안내를 하느냐 안 하느냐도 법적 의무가 없는 것인데, 이용약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114안내가 통신서비스 역무도 아니고 단순히 안내서비스인데 그것을 신고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신고를 했을 때 신고 접수를 거부해서 요금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것들이지금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고 난 상황에서 KT

가 공기업이 아니고 체신부 전화국이 아닌 상태에서 합리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는 행정이냐 이것이지요?

○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국장 김동수 제가 이 용약관을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 이용약관에 114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런 의무규정이 만일에 있다면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 이용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이용약관이라는 것은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약관이거든요. 그것이 소비자에게 불편한 것이 없나 하고정보통신부에서 승인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친 것뿐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용약관에다가 정부에서 KT한테 의무를 부여합니까?

○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국장 김동수 이용약관 에 이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 렇게 스스로 약정을……

○변재일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114안내 서비스 요금이 정부의 인가나 공공요금 으로서 승인을 받을 정도의, 그 정도 성격의 요금입니까?

○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국장 김동수 이용약관에 들어가면 약관에 대한 신고나 인가는 정보통 신부에 하도록 지금 법에 되어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 신고를 하는 경우는 신고하고 그런 것을 접수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요금이 낮다 높다를 왜 합니까?

○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국장 김동수 114안내 요금이 신고요금인지 인가요금인지 지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제는 법에 의한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동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특정사업자한테, 이동전화사업자한테 인터넷망을 통해서 하게 한다면 KT한테도 인터넷망을 통해서 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행정의 방향을 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업무현황보고에 대해서 제 생각이 아니라 한번 의견을 묻는 차원에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이 전혀 아 닙니다.

IP-TV 서비스 도입과 관련해서 정보통신부는 IP-TV가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한다, 신고만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IP-TV라는 것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그것이 인터넷 설비가 되었든 무슨 설비가 되었 든-프로그램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시청자한테 제공하는 행위로 봐도 됩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 그렇게 생각이 듭 니다.

○변재일 위원 그렇다면 케이블TV도 PP가 제 공하는 프로그램을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시 청자한테 제공하는 것이지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근본적으로 따지면 케 이블TV나 IP-TV가 거의 유사합니다.

○ **변재일 위원** 그러면 케이블TV도 부가통신 역 무입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거기는 처음 시작이 방 송사업자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 고, 우리가 통ㆍ방 융합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통 신의 영역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규제가 완화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접근한다면 내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보면서 논리를 전개해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 닌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현재로 봐서는 진입 장벽이 똑같지 않습니다.

○**변재일 위원** DMB 수출을 위해서 장관님이 아주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 다.

DMB가 디지털 멀티미디어 이동방송에 대한 하나의 국제적 단일표준이 아니고 DVBH라든지 미디어플로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표준들이 있 단 말이지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 하지 않으면 장관님께서 추진하는 IT839에서 그 런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수출유발효과가 있을 정도로 나타날지가 상당히 의심스럽단 말이 지요

그렇다면 이런 적극적인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 고 봅니다.

국내에서 성공하지 않는다면 너희 나라에서 하 지도 않으면서 뭐 하러 하느냐, 너희 나라에서 실패한 것 아니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위 성 DMB도 마찬가지이고 지상파 DMB 같은 경 우에도 벌써부터 사업자 수가 너무 많은 것이 아 니냐, 이것 수도권 사업자라고 지정해 놓고 다른 지방 사업자가 또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과연 지상파 DMB가 국내에서 시장성이 있을 것이냐? 아주 시청자 입장에서는 좋은 서비스이지만 제공 하는 사업자가 수익모델을 가지고 이윤을 올리면 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더군다나 콘텐츠를 계속 발전시켜 가면서 그 정도의 수익모델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너무나 많습니

그래서 DMB 시장 개척하는 문제와 함께 국내 시장을 조기에 활성화시킨다든지 그런 방안도 같 이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상파 DMB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 시키고 하는 책임은 일차적으로는 방송위원회와 문광부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지식정보사회를 조기에 앞당기겠다는 또 새로운 IT산업의 발전 기반을 만들겠다는 그런 책임과 그런 의욕은 정통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 DMB가 우리 시장에 서 7월 이후에 진짜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최근에 한 달이 채 안 되었습니다마는 방송위원회하고 KBS 등 방송사 또 단말기 제조사 사장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 왔 고 국내 T-DMB도 활성화하고 해외진출도 협력 을 어떻게 해보자 얘기를 좀 했고요, 특히 보편 적 서비스로 가다 보니까 안테나 같은 투자가 많 이 들지 않습니까? 특히 지하철에서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것 이고 그게 돈이 많이 드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의논하기 위한 추진단 같은 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것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도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KBS를 지상파로 직 접 수신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24%밖 에 안 됩니다. KBS가 시청료까지 받으면서 보편 적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도. 나머지 국민들은 케 이블TV를 통해서 봅니다. 케이블TV를 통해서 본다는 것은 KBS가 유료방송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상파 DMB가 물론 무료라고 선 언했지만 관악산 안테나에서 쏘는 것을 수신하는 것은 무료이고 기타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유료 화되어도 정부가 발표한 방침에 전혀 반하지 않 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특히 지하철 부분에 관해서는 언론노조라든가 무료를 열심히 주장하 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 변재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봉** 변재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김영선 위원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金映宣 委員** 우리 정통부 식구들하고 진대제 장관님, 오래간만입니다.

그동안 국제적으로도 많이 순방 다니시고 또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은데 어떻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요? 인기비결이 뭔지 알 고 싶습니다.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APEC IT장관회의가 있어서 다녀왔고요, 정치권에서 왔다갔다하는 얘 기는 사실 제가 일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 ○金映宣 委員 그런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하는 말이 있는데 정통부 깊은 곳에서 굉장히 전문적인 일을 열심히 하시는 장관님한테 왜그런 전혀 상관없는 연기가 나는 것이지요?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아마 다른 사람이 굴 뚝에다 불을 지폈나 봅니다. 저는 전혀 한 것 없 고요.
- ○金映宣 委員 제가 보기에는 굴뚝을 2개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에요?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아닙니다.
- ○金映宣 委員 긴장 푸셨을 것 같습니다.

초고속인터넷 시장 공정경쟁 방안 모색에 대해 서 묻겠습니다.

초고속인터넷 시장은 현재 8개 기간통신사업자를 비롯해서 100여 개 사업자가 진입한 상태인데 8개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허가사항으로 하고 있고,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67개인데 신고사항으로 하고 있고, 별정통신사업자는 30개인데 등록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 시장 진입을 위한 변경 허가신청 때문에 통신시장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지금 기존 인터넷 사업자들은 시장 포화에 따른 과당경쟁 및 파워콤이 불공정경쟁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통부 입장은 어떤가요?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현행 허가제도상으로 보면 주파수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인위적으로 사업자 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파워콤이 자격심사, 사업계획서 심사 등 에서 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는 허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金映宣 委員 원칙적인 말씀인데 2001년에 정보통신부는 파워콤의 전기통신회선 설비임대역무의 허가조건을 변경하면서 초고속인터넷사업을 못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한전 지분이 51% 매각될 경우 자동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때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파워콤을 LG에서 인수하는 것을 허용했지요. 그러면서 제한하기를, 초고속인터넷사업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기존사업자의 부실화 문제가 제기되었고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그렇게 해 가지고 조건부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그런 제한들을 풀어주는 것은 일관성에 있어서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파워콤이 LG에 인수될 때도 문제가 많았고 인수를 허용하면서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따른 법적 규제는 아니지만 시장질서 속에서 일정하게 이런 구도로 가면 좋겠다고 서로 양해하에 무난히 지나갔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 아닌가요?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그 당시 2001년에는 공기업인 한전이 파워콤의 최대주주였음을 고려해 가지고 파워콤의 사업영역에 제한을 두었지만데이콤이 경영권을 인수한 시점에서 사업영역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 ○金映宣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논리가 모순된 다는 말이에요. 파워콤을 인수할 때 문제제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기존에 인터넷접속역무를 안 하는 시장 간에 잠재적인 합의하에 그것이 허용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에 와서는 입장을 바꾸는 것 아닌가 요?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그때는 도매업을 전제 로 해서 한 것이지요.
- ○金映宣 委員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입장을 바꾸는 것은 그러면 시장에서,

물론 당사자들은 이런 저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시장구도를 전제로 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시장 환경에 적응해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래 예상 과 다르다, 원래 구도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그때 한전 지분이 51% 이상 매각될 경우 자동으로 허용한다고 그러기는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 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金映宣 委員 그러니까 2001년 당시에 과당경 쟁이 우려되기는 했지만 그때는 100% 이상 시장 이 성장하는 시기였고 현재 초고속 시장은 2004 년의 경우에 6.4% 성장하는 데 그치고 포화상태 가 돼 가지고 증가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증가 율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오퍼레이터나 릴레이오퍼레이 터, SO나 RO 등이 2001년 당시는 거의 시장에 진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경쟁 상황이 훨씬 치열하고 사업자들의 부실 우려가 클 뿐 아니라, 한편 2003년부터 두루넷, 온세통 신, EPN 등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현재 법정관 리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2001년에는 정통부가 전기통신사업법과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사업자들의 동반 부실 을 염려해서 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 시장진입을 막았는데 현재 막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시 장구도가 대충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 는데-특별한 이유도 없이 입장을 바꾸는 이유가 뭔가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그 부분은 김동수 국 장한테 대답을 하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金映宣 委員 이것은 기본적인 정책 문제인데,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김동수 국장님이 결정하신 대로 따라 가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그 당시의 입장 차이 만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국장 김동수 정보통신 진흥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1년 11월에 이미 파워콤에 대한 인가조건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한전 지분 51% 이상 매각 시에 ISP사업 자동 허용을 하겠다 하는 그런 규 정을 이미 허가조건에 부여를 했는데 그것이 데 이콤이 한전의 대주주 지분을 51% 인수함으로써 이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세웠 던 허가조건을 이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것 으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映宣 委員 제가 그때를 기억하기로는 원래 한전이 국영으로 하고 있던 것을 LG 쪽에 파는 것도 반대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데이콤이 파워 콤의 망을 인수하는 것이 공정경쟁의 시장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견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잠정적으 로 도매업만 한다는 전제하에 그게 허용됐잖아 요. 2001년 일인데 그것을 기억 못하시면 안 되 지요. 다 그때 계시던 분들인데…… 그때 치열하 게 찬반양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에 는 파워콤하고 데이콤이 연계해 갖고…… 시장에 지나친 경쟁제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 것 이다라고 해서 도매업으로 제한된 것으로 압니 다. 도매업 자체가 조건이 되었던 게 아니라 도 매업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그 많은 여러 가지 논 의를 종합한 결과 그 타협안으로서 그렇게 되었 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전에 얘기되었던 것은 아무 것도 모르겠고 도매업 자체는 규제할 게 아 무 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 해 왔던 얘기를 뒤집으면서 면피용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 시는 것이지요.

○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국장 김동수 2000년에 한전이 파워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처음으로 통 신사업에 진출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도매업만 하도록 허용했었습니다.

그 후 2001년 11월에 허가조건을 또 변경해서 한전의 지분매각이 51% 이상 이루어지면 ISP에 자동 진출한다는 것으로 소매업의 진출을 허용하 겠다는 조건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金映宣 委員 아니, 그때 한전의 파워콤을 LG 에 파는 것도 반대가 많았어요. 그렇지요? 데이 콤이 그것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많았 지요. 그때 그 반대의 기본적인 논리는 LG가 파 워콤을 인수할 경우에 연계해 갖고 그 시장지배 력이 너무 커진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국장 김동수 그 당시 에는 제가 근무하지 않아서 이 일을 맡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 다.

○金映宣 委員 그때도 저는 여전히 과기정통위원 이었고 그 논쟁에 깊이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말 씀드리는 것입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계경쟁력은 가져야 되거든요. LG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투자를 해서 세계경쟁력을 갖는데 그 부분은 국가가도운 부분도 있고 그 회사가 잘 한 부분도 있지만 세계경쟁력을 가진 건 다행이에요. 그런데 삼성이 잘 한다고 해서 그 자금력이나 기술력을 가지고 모든 분야에 진출하게 되면 국내시장은 한 재벌회사의 지배체제 또는 대여섯 개의 지배체제에 복속이 되기 때문에 한국 내의 수요와 공급, 제조업자와 소비자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이 자체시장이 붕괴되고, 그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큰 문제 중의 하나인데, 그것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양극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중소강대국이 되려고 하면 특정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업체로 나누어져야 세계경쟁력도 있고 한국 내부시장도 다양하게 분화되어서 여기에서 부가가치가 생산됩니다.

부가가치라는 건 내 것 너한테 팔고 네 것 나한테 살 때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분리가 될 필요가 있고, 독과점 금지라든지 공정거래가 문제가 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각 부처마다 손을 대는 게 그런 이유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조업과 금융업이 분리되어야 되는데, 현재 개혁정부가 얘기하는 출자제한이라는 것은, 제조업이 금융권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것 만큼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일정하게 한도를 제한한다는 것은 액수를 제한하는 데 의미가 있 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과 금융업을 분리해서 금 융업에 있어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혼동되어서 금 융마켓이 작동이 안 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데 원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정보화시대가 되고 디지털시대가 되면서 모든 사회의 근간이 정보통신기술 내지는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정보기술이 되는데, 이 때 기간망을 제공하는 사람하고 기간망을 제공해 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는 사 람들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일반 시장을 분리한다 는 것은 정보통신마켓이 살아남느냐 아니냐 하는 중요한 것이고 그 구도를 기본적으로 지킬 때 굉 장히 많은 기술들과 많은 거래방식과 비즈니스방 식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기간망과 기간망을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통신시장의 분할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망을 가지고 임대사업, 도매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소매업에 들어오면 소매시장이 과당경쟁 내지는 충격을 받을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파워콤이 지금 하고있는 후발 인터넷사업자들한테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계속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하간에 현재 상황에서는 파워콤이 초고속인터넷사업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들어온다고 하더라도기존에 하고 있는 후발 통신사업자들한테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가 되지 않도록 허가조건에 제한을 둔다든가 이런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金映宣 委員 현재 초고속인터넷은 2001년보다 치열하고 몇 개 기업은 법정관리하에 있는데, 전 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적합한 요건에 따라서 판단 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거부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통부에서도 파워콤 변경 허가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막을 권한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서 부가통신사업은 신고, 별정통신사업은 등록, 기간통신사업은 허가 등으로 진입 규제를 차등적용하고 있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상 일정 점수만 되면 정부의 개입 없이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현행 허가제가 단순히 일정요건만 갖추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제하고 차별이 없는 것 아닙 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 그렇습니다.

○金映宣 委員 그런데 차별을 뒀을 때는 단어만의 차별이 아니고 그 차별을 두게 된 것에 따른 중요도라든지 정책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저는 정통부에서 통신시장의 영역별 또는 질적 분할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 어느 정도 필요성 이 있는지에 대해 세미나를 하거나 학계의 의견 을 들어서 객관적인 의견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고 봅니다.

내가 준비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바빠서 못 합니다마는 공정거래위하고의 관계도 그 논의를 토

대로 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게 알려지지 않은 상 태에서는 부처 간 갈등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
- ○金映宣 委員 그에 대한 연구작업을 하시든지 세미나를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 지금까지는 파워 콤이 갖고 있는 망 설비를 임대해 왔었는데 그것 을 빌려 쓰는 사람들도 자체 투자를 많이 해 가 지고 빌려 주는 파워콤 입장에서도 상당 부분 한 60% 정도가 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파워 콤 자체도 소매업에 안 들어오면 경영위기에 빠 지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것으로 이 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생존을 해야 되는 점이 있어 서 말씀하신 대로 허가조건에 그런 불평등한 계 약관계 같은 게 만들어지지 않도록, 또 가입자정 보라든가 이런 것을 나쁜 형태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기는 있어야 되 겠습니다.

○金映宣 委員 이것 1분 내로 정리를 좀 하겠습 니다.

파워콤이 어떻게 살아남느냐는 것은 해야 되지 만 그것은 파워콤의 경영상의 입장이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내가 야당으로서 공격도 많이 하지만, 노무현 정권이 균형발전을 해야 된 다는 것이거든요. 지역 균형발전도 해야 되고 산 업별로도 대기업·중소기업이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세계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균형발전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크기라든지 영역별로 할 수가 없는 것 이고 결국 시장을 분리해 주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작은 시장에게는 조만조만하게 위험이 없 게끔 경쟁하게 해 주고 큰 시장, 투기적 시장에 서는 위험을 많이 갖는 대신에 이익을 많이 갖게 끔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열린당의 노무현정부가 지역 균형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출자총액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자총액 제한을 하는 것은 시장별 분 리를 통해서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얘기란 말이에 요. 그런데 지금 여기 통신망에 있어서는 기간산 업망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업망을 같이 섞겠다 고 얘기하면 노무현 정권 또는 열린당 정권의 일 체성에서는 이게 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

○金映宣 委員 시간 때문에 질의를 못하지만 정

통부가 그런 입장 때문에 여러 가지 지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논리적으로 정리 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한쪽은 시장을 만들어 가는 입장에서 어떤 조치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한 쪽은 거기에 대해서 벌금을 매기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처 간에도 서로 충돌하는 효과가 나 오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 좀 그런 점이 있 습니다.

○金映宣 委員 인터넷뱅킹 해킹 문제하고 공정 위가 과징금 유발한 것, 우정사업본부의 EKI 발 행 외화채권의 문제, 북한의 컴퓨터 해킹 문제에 대해서는 오후에 하든지 서면으로 나중에 대신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

파워콤과 관련해서는 허가해 주는 게 9월까지 지요? 한 석 달 남은 거지요?

- ○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국장 김동수 허가 발 표는 이 달 안에 하게 되어 있고요……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구체적인 것은 한 석 달 동안에 말씀하신 것을 다 감안해서……
- ○金映宣 委員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 통부가 개별 회사의 민원 또는 그 회사의 로비에 말려서 해 주는데, 그 회사만 쳐다보면 그런 면 이 있어요. 그러나 정통부는 기본적으로 정보통 신시장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세계시 장에 끌어들여서 우리의 한류문화와 융합하는 게 주된 임무이지 개별 회사의 입장에서 대응하는 것은 임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 그렇습니다. 말씀 하신 취지를 다 감안해서 허가를 해 주되 여러 가지 제한규정이 가능한 게 있는가를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봉** 김영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유승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 위원** 열린우리당 유승희입니다.

먼저 제가 개정발의안을 낸 인터넷주소자원법 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IT관련 공공정책이 정부영역이지만 운영과 관 리는 민간에게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래서 현재와 같이 민간에서 운영하던 것을 정부 가 직접 개입하여 운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 아니냐, 이러한 취지에서 인터넷주소자원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문제 삼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인데요.

16대 국회 때 장관님도 현직에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정 과정에 반대가 많았는데 16대 임기만료여서 위원님들도 좀 정신이 없으셨고 정 통부가 워낙 세게 밀어붙여서 그게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임위 검토보고서 도 제가 봤는데 인터넷주소를 위탁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그 법률안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최종 통과안에는 정통부가 인터넷진흥원을 인터 넷주소관리기관으로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 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는 9조3항6호를 삭제하 자는 안을 개정안으로 낸 것입니다.

제정 당시 장·차관께서 지금 장관으로도 계시고 현직 의원으로도 계시지만, 적어도 성의를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산하기관인 인터넷진흥원이 막무가내식으로 직접나서서 개정안을 반대하고 다니고 있고 4월 상임위 공청회 진술인으로 나왔던 업체를 재계약 운운하면서 상당한 압력과 부담을 갖게 하고 있는데 장관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그것은 몰랐습니다.
- ○유승희 위원 이 개정안은 제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낸 것도 아니고 인터넷강국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진 정말 기라성 같은 전문가들 그리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기관이, 그것도 정부 산하기관이 조직적 이해관계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입장이 무엇인지, 장관님께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최소한의 관심과 성실성을 보여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방금 지적하신 우리 산하기관하고 특정 사업체 간의 문제가 있는 것 은 제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한 것이 있는데 대체로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것이 저희들하고 의견이 같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적하신 진흥원 회계상의 도메인 등록수수료 수입하고……

○유승희 위원 장관님,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충질의 때 한 번 더 얘기할 것이거든요. 검토 보고서에서도 팩트 자체를 잘못 이해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다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통부 통·방 융합과 관련해서 지난 번 6월 9일에 제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했고 장관님께서 이 융합서비스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주시고 특별법이라도 제정해서 서두르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본 위원도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유승희 위원 그리고 정통부가 통・방 융합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원칙과 방향에 대한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한 다섯 가지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할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 5개 방향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5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을하지만 일부 저희들하고 시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승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광부와의 양해각서를 체결해 가지고 디지털콘텐츠산업을 육성하시겠다고 했는데, MOU 에 명시한 게 상암동의 DMC인데 수도권 전반에 걸쳐서도 이러한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이 필요 하다면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

- ○유승희 위원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통부, 문광부가 총 2635억 원을 투입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이고 앞으로 디지털콘 텐츠산업이 활성화되도록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유승희 위원 꼭 상암동이 아니더라도 좀 적극 적으로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
- ○유승희 위원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행담도와 관련해서 600억 원 투자한 것 때 문에 그런데, 하루에 이런 투자액에 대한 심사를 얼마 정도 하나요?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보통 대기업의 회사채 채권 같으면 한 이삼 일이면 결정을 한다고 하고……

- ○**유승희 위원** 아니, 우정사업본부에서 대략 하 루에 몇 건 정도……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우정사업본부장입니다. 하루에 평균 8건에 한 1000억 내지 천이삼백 억 정도입니다.
- ○유승희 위원 대략 이런 투자액 정도에 비하면 600억 원이니까……
 - 이 결제는 주로 누가 도장을 찍나요?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업무규정상 금융단장 까지로 딱 되어 있습니다.
- ○유승희 위원 주로 사무관이나 관련 주사가 도 장을 찍지요?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 니다.
-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전결사항이지만 도장은 대충 직접…… 이것도 담당 사무관이나 주사께서 도장을 찍으셨지요?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주사부터 일을 시작합 니다.
- **○유승희 위원** 콜금리가 상당기간 동안 계속 낮 은 수준으로 되어 있고 국고채 금리가 계속 낮으 니까 우정사업본부에서도 이러한 수익률이 높은 채권에 대해서 뭔가 크게 유혹을 받았을 것 같은 데요.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그렇습니다. 우정사업 본부가 적자가 꽤 누적이 되어 가고 있었고, 특 히 우편사업 쪽에는 적자가 커서 그것을 금융 쪽 에서 이익을 내서 보전을 하고 있는 형태라서 이 자율이 높은 것에 상당히 끌렸을 것으로 보이기 는 합니다.
- ○**유승희 위원** 어차피 금융시장에 대응하기에는 지금 우정사업본부의 체제가 굉장히 어정쩡하고 민간 금융사들도 굉장히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 황에서 이런 금융환경, 국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서 너무 위기의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 도 터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 그리고 우정사업본부 내부에서조차도 내년부터 는 분명히 적자로 갈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다 고 제가 들었습니다. 민영화 등 이런 경영체제 전환을 계속 미루실 것입니까?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민영화 부분은 오랫동 안 얘기가 나온 게 사실이고요, 언젠가는 민영화 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은 안 하겠습 니다. 그런데 이러한 네트워크사업의 민영화가 보편적 사업에 상당한 침해요소가 있고 부작용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이 민영화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영화를 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의 강화, 또 전문가가 더 있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연초 에 대통령 업무보고 할 때도……

- ○**유승희 위원** 지금 연구 중이시라는 말씀이시 지요?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차관급으로 격상을 해 서 조직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렸고 <u>유</u>.....
- ○**유승희 위원** 그것은 좀 시대에 역행하는 제안 아니십니까?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외청으로 분리를 했다 가 나중에 민영화를 한다든가 이런 게 더 필요하 지 않을까 싶어서……
- ○**유승희 위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정사업본 부를 실컷 키워놓고 지금 민영화를 하려니까 힘 들어 가지고 일본정국이 난리인데…… 제가 지난 번 일본에 갔을 때도 그 문제가 핫이슈가 되었는 데, 이것을 키워서 나중에 민영화하는 것은 더 어렵지요.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키운다는 게 일본의 우정사업은 밑에 집배원들의 수가 굉장히 많고 요, 저희들이 키우고자 하는 것은 금융단위의 일 부 경영층의 조직을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 ○**유승희 위원** 하여튼 임기 중에는 민영화하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네요.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참여정부의 공약사항 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로드맵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유승희 위원** 로드맵은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제시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 는데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회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 다.

그리고 지난번 2002년도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우체국 금융 온라인시스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요? 그러니까 시스템 통합과 구조변경이 필요하고 시스템 용량 증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감사원 지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있 었는지 알고 계세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우정사업본부장, 알면

대답을 좀 하시지요.

○유승희 위원 그당시에 무슨 문제가 발생한 거지요?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지적을 감사원에서 받았지요?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잠깐만 확인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유승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시스템이 오작동되고 미작동돼 가지고 우체국 직원들이 수기로 금융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원에서 이런 지적이 나온 것으로알고 있는데 그것 좀 확인을 해서 일단 서면으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예.

○유승희 위원 장관님, 혹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정통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자산 평가액이 현 시가로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

○유승희 위원 안 돼 있으시면 서면으로 해 주 시고요.

제가 보니까 풍기에도 최근 2003년도에 수련원 부지를 매입했는데 정통부에 수련원이 여기저기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풍기 쪽에 수련원 부지를 매입한 것은 왜 그렇지요?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그것도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KT, 하나로텔 레콤, 데이콤에의 1200억 정도 과징금 부과 명령 인데 문제는 정통부는 행정지도가 아니다 그리고 KT는 이것은 행정지도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이것은 행정지도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사업자들이 결국은 벌금을 물게 되었는데 사업자들이 행정지도가 아닌데 그렇게 마음 놓고 담합을 했을까요? 권고와 행정지도를 구분 못 하나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2002년 10월, 원가 이하의 과당경쟁을 하는 그때 당시에 정통부에서 너무 그렇게 원가 이하의 경쟁을 안 하는 게 좋겠다는 행정지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이라고 판단한 것은 그 이후에, 2003년 초부터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유승희 위원 시기적으로는 6개월 이후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지도가 아니다 이렇게 정통부에

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02년도 12월에 권고 사항을 문서로 보냈습니까? 문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문서로 보냈습니까, 국장님?

○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국장 김동수 정보통신 진흥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당시는 장관님 부임하시기 전이었고, 저도이 일을 맡기 전이었는데 2002년 10월 그 당시에 시장이 과열경쟁으로 치닫고 쟁점화되고 신문에도 나고 그래서 양 사업자를 불러다 협의도 하고양 사업자의 의견을 정리해 가지고 이메일로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합의문도 쓰고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에서 사업자로부터 자료도 받았고. 정통부에는 그 자료가 없지만. 그래서……

○유승희 위원 사업자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까? 공정위가 사업자 자료를 찾아낸 것이지요?

○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국장 김동수 아닙니다. ○유승희 위원 담합의 근거로 잡아낸 건데 그것 을 사업자들은 행정지도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고 정통부는 행정지도가 아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그것은 행정지도가 아니다……

○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국장 김동수 사업자들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정위가 압수하지는 못하고 사업자들이 행정지도의 근거로 제시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행정지도의 근거로요?

○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국장 김동수 예.

○유승희 위원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공정위나 정통부 간에 이중규제가 원인이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실질적인 원인은 정통부가 법에 근거하지 않고 탈법적으로 자의적인 행정지도를 너무자주하는 것 아닌가, 남발하는 것 아닌가 여기에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통신산업에 대한 규제정책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유효경쟁 규제라든지 비대칭 규제를 명분으로 내세우시기는 하는데 이제는 정통부가 이런 규제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합법적인 차원의 행정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시민단체도 이런 문제를, 결국은 과징금에 대한 부담이 소비자한테 오는 것 아닙니까? 시민단체도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KT 같은 경우에는 만약 관련증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감히 어떻게 정통부와 전면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행정지도

의 지침, 방식에 대해서 자의적인 행정지도의 문 제를 극복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 십시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완전히 자의적이라고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저희들도 근거조항은 있습 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을 보면 경쟁의 촉진 항목 에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유효경쟁정책은 상 호 접속, 설비 제공, 가입자 선로 공동 활용 등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적법하게 추진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지도는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을 한다든가 환경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 들이라고 보고요.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행정지도가 담합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공 정거래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과징금을 경감시켜 달라는

- **○유승희 위원** 정통부의 과오도 일정하게는 인 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그래서 과징금이 좀 줄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공정거 래위원회는 그게 큰 연결이 없다고 한 것이고 결 국은 법원에 소송으로 가서 좀더 객관적인 차원 에서 어디까지인가 그게 판단이 되어져야 될 것 으로 생각합니다.
- ○**유승희 위원** 장관님 말씀에도 약간 애매모호 한 부분이 있는데요. 행정지도의 범주를 어떻게 해 놓느냐의 문제인데 일단은 합법적인 행정지도 를 위해서는 공정한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런 룰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자꾸 자의적인 행 정규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비과학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서, 오죽했으면 신 문칼럼에서 우리나라에서 경쟁시장의 최대의 적 은 정부 자체다 그런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이런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정통부에서는 특별히 유 효경쟁체제라든지 이런 정책에 있어서 좀더 합리 성을 찾아나가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원칙은 서면으로 제 출할 테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 그러겠습니다.
- ○**유승희 위원** 파워콤의 인터넷 접속역무에 대

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준칙주의에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진입 시에 우려되는 불공정행위가 뭔 지 그다음에 공정경쟁을 위한 허가조건으로 구체 적으로 검토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공정경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정통부가 관여할 사안인지 공정위가 해야 될 사안은 아닌지 그런 업무 역할 분담에 있어서 의 정통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파워콤에 관련돼서는 담합이 일어났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공정 거래위원회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후발사업자들을 어떻게 보호해서 경쟁이 지속적 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느냐의 차원이니까 좀 다 른 이야기 같습니다.
- ○**유승희 위원** 정보보호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때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봉** 유승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정 위원 한나라당 소속 부산 연제구 출신 김희정입니다.

이번 달이 정보문화의 달이지요?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 그렇습니다.
- ○김희정 위원 핵심이 정보격차 해소인 것으로 아까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연령 간 그 리고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에 대한 불편도 없 어야 되지만 저는 지역 간 격차 해소에도 정통부 에서 상당히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 제 주요행사 내용 중에서 지역에서 펼쳐지는 행 사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정보통신부정보화기획실장 이성옥 정보화기획 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문화의 달 행사를 전체 90건 정도 전국적 으로 하고 있는데 각 지역 체신청별로 3분의 2 정도가 지역행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어쨌든 답변이 장관님하고 담당 실장님에게서 직접 나오지 않은 것도 좀 아쉽고, 실제로 3분의 2라는 숫자를 저한테 제목별로 제 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통부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정통부 에서 만든 보도자료에서도 보면 정보격차 해소 주간행사라든지 건전정보 이용 주간행사, 정보보호 주간행사 등 전체 메인행사가 서울에서 펼쳐졌습니다. 유일하게 부산하고 제주에 e-클린 코리아 캠페인 지역순회대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전 체신청에 지시 나간 것말고는 어떤 행사도 지역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주제를 정보격차 해소로 잡았다라고 말하고 전 국민이 참석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일반국민들이 하는 것을 모를 뿐만아니라 지금 이 자리의 과기정 위원님들도 지역구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기 지역구에서 정보문화의 달 행사 관련해서 지역에서 연락 와가지고 참석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거의알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모르는 행사 정도라면 일반국민들은 모를 뿐더러 더군다나 정통부 자체 홈페이지에서도 지역과 관련된 행사는방금 말씀드린 부산・제주 e-클린 코리아 캠페인지역순회대회 말고는 어느 것도 공지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3분의 2라고 말씀하신 근 거자료를 주시고, 그게 그냥 단순하게 체신청을 통해서 청소년들 표어 공모나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서울에서 가졌던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대 회라든지 각종 전시회에 준하는 행사인지 그 비중을 보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정부가지향하는 게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얘기를 하면 분명히 정통부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특히 정통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역행사를 중앙에서 한다 하더라도 말로만 하는게 아니라 어떤 유비쿼터스적인 기술을 도입해서전국 단위의 행사로 승화시킨 적이 있는지 장관님 답변 바랍니다.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까? 계획은 돼 있습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아직까지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다음에 그런 것을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울에서나 수도권에서 하고 있는 행사를 지방을 순회하면서 한다든가 그런 것도 한번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내년도 업무보고 들어올 때 적극 적으로 좀 반영하셔서 미리 골고루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특히 지난 4월 임시국회 때는 4월이 마침 과학의 달이라서 제가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랬더니 그때도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반영이전혀 안 돼 있었는데 지금 정통부 홈페이지에 당장 들어가 보십시오. 전혀 홍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온 국민이 함께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맞으니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앞서 한나라당 김석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또 한나라당 정책위에서 진상조사단까지 만들어서 행담도 관련 우정사업본부 내용에 대해 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동일한 질의와 동일한 답변은 피하도록 하고, 다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장관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제 상 우정사업본부가 직할관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직할의 의미가 뭐지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차관님, 아세요?

○**김희정 위원** 아니, 장관님이 직할의 의미를 모르시면 안 되지요. 초등학생들한테도 직할의 의미가 무언가……

사전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에서의 의미도 또한 법령상 직할의 의미는 누군가를 거쳐서 하지 않고 대부분 장관에게 직접 보고를 해야 되는 관계를 가진 기관이 직할관서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상의 의미도 직할이라 함은 직접 맡아서 다스림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행담도 게이트하고 관련해서 우정사업본부에서 일어 났던 일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전혀 내 소관이 아니다, 나는 모른다라는 답변으로 대정부질문답변에서나 오늘 상임위에서 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서도 조직도에 장관님 산하의 직할관서로 정확하게 우정사업본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일이 얼마 투자, 이게 타당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적어도 사업 항목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에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장관님이 보고를 받아야지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보고를 지금까지 안 받아 온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도 이런 식의 문제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 또한 장관님이 모르는 사이에 장관님의 직할관서 어느부서에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정사업특례법이라든가 업무규정상 금융사업 단장까지 전결처리로 하게 돼 있는 보고의 업무 규정이 적합한가, 지금까지는 오히려 외압을 피 하기 위해서 실무자 전결사항으로 하기 위해서 법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여 러 가지 사항에서 적절치 않은지, 우정사업본부 장까지 가야 될 것인지 하는 것들은 검토가 필요 할 것 같고요. 특히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정통 부에는 GPLC라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에 다큐멘테이션한다든가 이런 제도를 도입했습 니다마는 우정사업본부에는 아직 도입이 안 돼서 최근에 자체감사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부 분을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의혹을 많 이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관여된 기관이 한두 개가 아니고 특히 대통령 가까운 위원회뿐 만 아니라 기관들이 여러 개 걸쳐져 있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어느 기관 한 곳에서라도 아, 이것 문제가 있다라고 바로잡았으면 이게 의혹 수준까 지 안 가고 바로잡혔을 텐데 그렇게 여러 기관이 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문제제기를 안 하고 국민의 돈을 투자했다라는 것에 문제제 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는 업무보고의 절차를 바로잡고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결재 체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더군 다나 우정사업본부가 완전히 외청으로 떨어져 나 간 것이 아닌데도 장관님께서 계속 모르겠다라고 해서 피하시는 것은 오히려 더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이게 어느 실ㆍ 국에서 담당을 하는 건지, 외청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시다면 그전까지는 사업보고를 어 떻게 받겠다라든지 우정사업본부뿐만 아니라 다 른 산하기관하고도 그런 체계를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검토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냥 단순하게 검토로 끝내는 게 아니라 바로잡아야 되고 다음 국회 열릴 때까지 기다리기 그러니까 중간에라도 보고를 해 주셨으 면 합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지금까지 우정사업본 부에서 많은 자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직접 대출 을 한다든가 이런 것 없이 주로 채권을 산다든가 간접투자 형태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과 같은 리스크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일어나는 경우이고 완벽하게 검토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하고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경우들을 대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한나라당 제4정 조위원회에서 먼저 외환은행과의 계약에 의해서 주식매수 청구대금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문 제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문제가 없다, EKI로 가지 않고 도공에서 직접 외 환은행으로 입금되므로 투자금을 떼일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저희 한나라 당 진상조사단에서 다시 나가서 영문계약서를 확 인한 결과 도로공사가 외환은행에 넘기는 게 아 니라 EKI가 넘기게 되어 있다 이게 영문서에 나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검토도 안 되고 투자가 됐을 뿐 만 아니라 사후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거기에 대 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지 못한 부분에 대한 업무처리 방식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 다.

저는 이것이 게이트다 아니다, 나중에 행담도 가 오히려 성공한다 안 한다를 넘어서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업무처리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에서 국가관리능력을 볼 수 있다라고 생 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정사업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검토도 안 해 보시고 일방적으로 밑의 직원들이 갖다준 문건을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읽은 것 아닙니까?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우정사업본부장입니다. 한나라당 진상조사단에서 나와 가지고 당시 이 혜훈 의원께서 말씀하시던 부분은, 지급대리계약 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급대리계약서라는 것은 통 상적인 발행자와 수탁기관, 채권 소지자 간의 채 권 원리금에 관한 지급에 관한 계약서이고요, 그 당시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풋질권 계약서 에 따라서 외환은행에서 일단 질권자의 입장에서 대금이 지급된다면 EKI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외환은행의 계좌로 들어와 가지고 채권자한테 지 급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김희정 위원 제가 지금 사실 여부를 떠나서, 방금 질의를 한 내용은 과연 국문계약서, 영문계 약서뿐만 아니라 관련 서류를 챙기시고 직접 전 후를 파악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사 실여부를 따지는 것을 떠나서 그런 답변을 현장

에서 바로 못 하셨지요? 문제를 지적한 다음에 문제가 있구나 하고 뒤져보신 다음에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그 당시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단 부분적으로 완벽하게 그 당시 프로세스에 있어서 체크하지 못한 부분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김희정 위원 지금 인정을 하셨습니다마는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마 당사자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는 정식으로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까?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없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그 직무관계에 대해서 여쭈어 본 이유가 분명히 우정사업본부, 그리고 우정사업과 관련된 최고기관장이정통부장관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우정사업본부와 정통부를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막 기사를 쓰고 있는데 한번도 보고가 안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한번 스쳐가는 정도로밖에 인식을 못 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기본적으로 저희 우정 사업본부가 발족할 당시에, 조금 전에 직할기관 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다 정확한 용어는 책 임운영기관입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면 책임운영기관이라고 명시를 하셔야지요. 정통부 업무보고에서 분명히 직할기관이라고 명시를 해서 보고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책임운영기관인 우정 사업본부장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운영 하도록 그렇게 된 입장이고요, 단 내부적으로는 위임전결규정에 따라서 지금까지와 같은 어떤 프 로세스를 밟아 왔습니다.

○김희정 위원 장관님도 마찬가지로 우정사업본 부장님 불러서 여기에 대한 특별보고를 받거나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지금 보고에 관한 것은 이 사건이 발생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물론 보고를 했지요. 사후에 보고가 되었다는 것이고 사전적으로 대출에 관한 개별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했어야 했는가하는 것은, 그것은 보고사항에 없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래서 의사결정 전후해서 저희들도 명백해졌으면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은행에서조차 이렇게 5개 은행이 1차 대출심사 때 상환 불안정을 이유로 거부했고 또 2차 대출심사때도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했는데도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어쨌든 정부기관이 나서서 채권을 매입했는데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과정이라든지 이후에 사건이 터졌을 때, 매번 지적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대답을 못하고 한참 뒤져봐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논리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팩트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대해서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우정사업본부가 지금 정통부장관님 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후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가 문제해결능력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체계를 설정하는 데 거울로 삼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 질의를 드리 겠습니다.

이동전화요금하고 관련되어서 지금 상당히 국 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계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그러고요, 한 6~7%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김희정 위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정통부 공무원하고 이동통신사업자들, 그리고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토론회를 한 적이 있는데 올해 안에얼마를 내렸기 때문에 또 올해 안에얼마를 내리는 것은 불필요하다 이런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 이동전화요금체계가 결정되는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쓰고 있고 기기는 휴대폰 정도입니다마는 어쨌든 IT839 정책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가 상상도 못한 많은 서비스들을 우리 국민들이 이용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매번 일일이하나하나 요금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논쟁을하면 그것처럼 소비적인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요금체계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는 기본서비스하고 부가서비스에 대해 정통부가 규제하는 것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본서비스냐 또는 부가서 비스냐에 따라서 인가를 하느냐 아니면 신고를 하느냐 자꾸 논란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제가 제안 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휴대폰에 한정해서 본다 고 하면 기본서비스 외에 부가서비스라고 하더라 도 사용자의 일정 이상 비율, 제가 특정 비율을 찍어서 얘기하기는 뭣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80%면 80%, 90%면 90% 이상 사용을 해서 다수 가 사용하는 서비스에 한해서는 단순하게 사업자 자율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고제 로 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원가 검증을 통해서 인가제로 바꾸었으면 하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그것이 어떤 경우가 발생하는지 그 경우마다 조금 다를 것 같은데 그 런 보편적인 형태로 되는 서비스면 아주 기본적 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입자가 100% 다 하는 것이면 기본적인 것이 아니냐 이 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김희정 위원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현 재는 사업자들이 이것이 기본서비스다라고 얘기 를 하는 것만 기본서비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 가 검증을 하고 정부가 관장을 하는 반면에 나머 지는 부가서비스라고 해서 새로 개발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통신사업자들에게 맡 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의 수치,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러니까 일정 비율을 넘어서서 사용되고 있는 서 비스에 대해서는 기본서비스에 준하게 정보통신 부가 원가 검증을 통해서 인가하는 시스템을 아 예 마련해 두면 향후에 어떤 서비스가 도입이 되 더라도 이 요금체계에 대해서 그때그때 논쟁이 붙는 일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논리적으로는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부가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이 쓰기 때문에 기본서비스로 집어넣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의 업 앤 다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올라간다고 그러면 문제에 또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그 경우에 대해서 검토를 신중히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예, 분명히 기본료의 조정하고 연결될 우려에 대해서 실제 많은 소비자들도 지 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단순하게 저하고 장관님하고 몇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고 해서 결론이 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을 검토해 볼 의향이 있는지 에 대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모든 사람이 다 쓰는 서비스다 그러면 당연히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서 비스 형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시간이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추 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위원님 죄송합니다마 는 제가……

- **○위원장 이해봉** 답변 좀 할래요?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예, 제가 한 말씀 드 리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해봉** 이야기하세요.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김희정 위원이 말씀하 셨던 그 채권투자 관련해서 조금 전 어떤 문제제 기를 할 때마다 논리를 만들어낸다는 말씀에 대 해서는 저희들이 국회에 나와서 발언하기나 언론 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나 그 당시에 있어서 부족 했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계속해서 문제제 기할 때마다 저희들이 논리를 계속해서 새로 만 들어낸 것은 없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해봉** 김희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류근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根粲 委員 류근찬입니다.

우선 의사진행발언 겸해서 한 1분만 쓸 테니까 제 시간에서 빼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질의 답변하는 과 정을 오전부터 죽 지켜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 다는 하는 생각을 갖게 돼서 의사진행발언을 통 해서 정통부장관, 참모들한테 특별히 당부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 두 가지 내용에 문제가 있는데 우 선 답변내용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태 도에도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느낍니다. 예컨대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질 의하는 것은 장관을 통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듣 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관이 정말 진지하고 확실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답 변 기회를 참모들한테 넘기고, 참모는 또 막히면 그 밑의 참모한테 넘기고 하는데 과연 국회의 권 능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 있느냐 하는 아주 원천 적인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태도가 오전부터 지 금까지 계속 보인다 하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내용도 우리 위원들이 따져 묻는 것이 맞다는 것인지 틀리다는 것인지, 뭐가 뭔지를 대 단히 불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서 중복된 질의를 피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다시 질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고 온다 하는 문제를 지적 하고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통부 나름대로 무슨 리허설 같은 것 안 하십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쟁점사항 등을 항상 정리를 해 가지고 방향을 설정도 하고 그럽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그 시점에 바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의가 꽤 있으십니다.

○柳根粲 委員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장관이 어렵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됩니다. 장관은 적어도 아는 부분은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모르는 부분이 많으면 장관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자꾸 비켜가려고 그러고,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이건지 저건지전혀 분간이 안 되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형태가오전부터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이쯤 해서 의사진행 성격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남아 있습니다. 보다 더 진지하고 확실한 대답이 필요하다 하는 충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제가 정책적으로 발언 해야 될 부분은 최선을 다 해서 하려고 하고 있 고 다만 실무적인 사항이 나왔을 때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모른다고 대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무자한테 대답을 해 보게 하고……

○柳根粲 委員 자꾸 그런 말씀을 하면 말이 또 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과거에 몸 담고 있던 조직에서는 상임위원회를 앞두고 한 일주일 전부터 국회의원실을 다 돌면서 질의서를 입수해 가지고 3, 4일 그것만 가지고 리허설을 했어요. 사장이 답변을 거의 외우다시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리허설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죄송합니다만 질의서 를 어제 밖에……

○柳根粲 委員 그러니까 참모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장관한테 이전이 안 되어 있다 이거예요. 장관이 100% 다 알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의 답변을 보충하기위해서는 절묘하게 메모지나 용지가 들어가고 그래야지 차관한테 마이크를 넘겨서 답변이 막히면 또 국장한테 넘기고····· 이것이 산만해서 얘기가안됩니다.

장관이 정통부 업무에 관한 이해나 숙지도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전에 의사진 행발언 겸해서 한 말씀 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공정위 통신사업자 부당 공동행위 조사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유효경쟁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향후 계획이 있고부당공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봐도 정통부가 지난번 KT-하나로가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맞은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방법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봉 위원장, 홍창선 간사와 사회교대)

5월 25일입니까, 26일입니까? KT-하나로 담합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60억 원의 과징 금을 맞았는데 KT와 하나로가 담합했다는 공정 위의 판단에 정통부가 사용한 유효경쟁정책이 영 향을 주었다고 봅니까, 안 주었다고 봅니까? 쉽 게 얘기하면 행정지도라고 해도 좋고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행정지도가 2002년 10 월에 있었던 것은 이메일 등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 2003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으로 판정됐다는 것이 과연 행정지도하고 연관성이어느 정도 있느냐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KT라든가 이런 데 여러 가지 내부자료를 입수해간 것을, 저희들은 볼 수 없었지만, 심결을 통해서 봤더니 담합이나 행정지도하고는 별로 연계가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저희들로 봐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한 것이 상당히 연관성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柳根粲 委員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지난달 25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정통부가 입장을 밝힌 것이 있지요? 이번 건은 행정지도가 아니지만 원래 있었던 행정지도와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지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柳根粲 委員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행정 지도가 음으로 양으로 담합을 일으킨 원천적인 이유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1160억 원의 과징금을 내게 한 것은 이른바 정부 의 관제 카르텔이라고 하는 규제정책에 대한 처 벌이다 이렇게 봅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딱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사실 저희들이 자료를 다 입수해서 보지 못하는 거기에 자의적인 행태의 담합이, 대다수가 그렇다는 것이 공정위의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제 카르텔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원가 이하로 과당경쟁을 해서 그야말로 후발사업자가 쓰러진다든가 하는 형태가 돼서 독과점이 발생하는 것을 막자고 하는 유효경쟁체제이고 그런 입장에서 원가 이하의 과당경쟁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클린마케팅을 하시오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柳根粲 委員 그러니까 통신서비스산업에 지금 장관님께서 말한 특수성이 있지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있습니다.

○柳根粲 委員 그 특수성 때문에 사업자들이 주 무부처 지도 감독을 받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

○柳根粲 委員 그런 합의에 따라서 이 특수성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법의 원칙으로 재단한 것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볼 수 있 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특수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그냥 똑같은 형태의 완전한 경쟁을 왜 안 하느냐……

○柳根粲 委員 그래서 1160억 원이라는 것이 특수성에 대한 원칙이 내린 처벌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그 부분에 정통부가 행정지도를 한 것을 감안해서 경감조치를 해 주 었다고 그러기는 합니다.

○柳根粲 委員 그래서 길게 질의할 것은 안 되

고, 따라서 공정위가 지난번 과징금을 물리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해결방법을 제시하 고 있다고 봐지는데, 일단 공정위하고 수시로 상 의를 해라 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법률에 근 거한 행정지도여야 공정거래법을 뚫을 수 있다 그런 권고를 주었지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그렇습니다.

○柳根粲 委員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내용에 당연히 정통부의 공정법을 뚫을 만한 정책을 찾는 흔적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안나타나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7월부터 이동통신사에 대한 담합 여부도 조사 한다는 것이 공정위 방침이지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

○柳根粲 委員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보면 유선 통신시장이 연간 5조의 시장규모이지요? 그다음 에 무선통신은 연간 시장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한 15조……

○柳根粲 委員 그러니까 5조의 KT 과징금이 1160억이라고 그러면 결과를 예단은 할 수 없습니다만 공정위가 엄청난 규모의 무선통신에 대한 담합여부를 조사해서 과징금을 매기면 1160억 원의 기록이 깨질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지요? 그렇게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〇柳根粲 委員 아무튼 엄청난 과징금이 또 통신 사업자들한테 올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그것은 어떻게 말…… ○柳根粲 委員 통신업계에서는 1160억의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라는 소리가 파다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통부는 공정위가 섭섭하다느니 계속 유효경쟁제도를 펴나가겠다는 안이한 답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불만들이에요. 통신업자들 은 정통부가 시켜서 했는데 책임은 네가 다 져라 하는 식으로 나자빠지는 것 아닙니까?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래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장관께 서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다 그거예요.

따라서 유효경쟁정책이 통신서비스사업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법을 등에 업은 정책이어야지 공정법을 뚫지도 못하는 행정지도를 가지고…… 앞으로 일은 다 정통부가 저질러놓을 텐데 그 책임은 고스란히 통신사들이 질

것이고, 그러면 정부 정책의 신뢰가 서겠느냐 이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서둘러서 해야 될 일이 공정법을 뚫을 만한 장치를 정통부가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큰 법이 세 개가 있지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이 3대 관련법에 대한 대대적 손질이 빨리 시작되어야 된다…… 그것을 등에 업고 공정법을 뚫을 생각을 해야지 뚫리지도 않는 행정지도니 권고니 하는 것을 가지고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제 주장이 어떻습니까?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 니까?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좋은 지적이십니다.
- ○柳根粲 委員 그래서 정통부는 우선 3대 관련 법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고……

이번 담합으로 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소비자단체가 소송을 준비하 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 알고 있습니다.
- 〇柳根粲 委員 원고가 누구입니까? 원고는 소비 자단체이고 피고는 KT하고 하나로인데 정통부가 피고가 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알고 계세요?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 정통부까지 포함 시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 ○柳根粲 委員 그러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정통부가 피고로 법의 심판을 받는 일이 생겨서야 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장관이 정책을 어떻게 폈기에 시민·소비자단체가 손배소를 내는데 정부정책을 주도하는 정통부를 피고로 법정에 세우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빨리 법령 정비나 제도 보완을 안 하면 IT839를 기치 로 해서 앞으로 15년, 30년 우리가 먹고 살 것을 준비한다는 정통부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정책 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 다, 장관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 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정통부가 공정법을 뚫을 수 있는 무기를 빨리 마련해야 된다, 그냥 지금처럼 안이하게 권고니 행정지도니 하는 것을 계속하겠 다든지 이런 소리를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지금 부산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권고를 하는 것입니 다.

이해하시겠습니까?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 그렇습니다. 공정 거래위원회에서 담합을 지적해서 지금까지 없었 던 전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유효경쟁체제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행정 지도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서 이중의 규제가 된다든가 이중의 과징금을 문다든가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柳根粲 委員 그러니까 국민이나 소비자가 정부, 특히 정통부를 원망하고—얼마나 화가 났으면 법정에 세우겠다고 그럽니까?—그런 사태가벌어지지 않도록 정책을 집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결을 한 사항도 KT나 그런 데서 또 행정소송을 내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법정에서 한 번쯤 더 심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柳根粲 委員 비슷한 성격인데,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우리 통신서비스사업의 유효경쟁정책은 꼭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다만 명분과 법적 뒷받침을 한 상태에서 그 정책이 추진되어야 된다 하는 차원을 이해해 주시고, 또 이것도 관련질의인데 지금 CID하고 SMS와 관련해서 요금문제로 시끄럽지요?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
- ○柳根粲 委員 아시다시피 SK텔레콤, KTF나 LG텔레콤은 요금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고 시민단체는 특별히 부가장치나 기술개발이 필요하지 않은 것인데 왜 요금을 받느냐,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정통부의 입장은 뭡니까?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지금까지는 CID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했고 또 CID 서비스를 안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부가서비스형태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 ○柳根粲 委員 그러니까 요금과 관련해서 소비자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통사들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오늘이 아니고 전에까지 CID 요금을 내린다든가 하는 주장이 꽤 오랫동안 있어 왔고 작년에도 CID 요금을 내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CID가적어도 요금을 받을 만한 부가서비스라는 생각을하고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이것은 신고요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柳根粲 委員 그러니까 정통부 입장은 인가대상이 아니고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너희 알아서하라 그런 입장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들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통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통부가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정통부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빨리 전가의 보도인 행정지도나 권고를 통해서 CID하고 SMS 요금에 대해 정통부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이번 기회에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것 해결이 안 됩니다. 과거 CID 요금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왕성하게 가격정책에 개입한 일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냥 어정쩡 있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행정지도 권고 어떤 것이 적절한 용어인지 모르지만아무튼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

○柳根粲 委員 그리고 개성공단…… 이것 아무리 여러 자료를 뒤져봐도 일관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개성공단 통신망 개통이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지요? 당초 5월 말까지 개통하도록 합의되어 있었지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

○柳根粲 委員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한 것은 오늘 보고에 보면 군사분계선-개성전화국-공단 간 16.7㎞ 구간 광케이블 공사가 90% 정도 완료됐다고 되어 있지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

○柳根粲 委員 그런데 5월 25일자—약 보름 전입니다—당정회의 자료를 보면 북측 구간 광케이블 공사가 60% 완료되어 있다는 수치가 있어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오늘 보고니까 정확히 어제까지라고 칩시다. 6월 12일까지는 90%이고 5월 25일까지는 60%, 한 보름 정도에 40%를 더 공사를했는데 이것이 무슨 난공사예요? 어떤 것이 맞습 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90%가 맞습니다. 그런데 5월 25일 당정회의 발표에 60%라고 한 것은 5월 13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柳根粲 **委員** 그러면 한 달 동안 30%를 더 했다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그 이유가 있는데 당초 손하역이라는 북한 측의 지명이 있는데 거기 기초공사를 하는 것을 안 하고 추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柳根粲 委員 알았습니다.

지금 90% 정도 진척이 되었다고 이해하면 된다 그 말씀이지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

○柳根粲 委員 그런데 5월 말까지 개통하기로 했던 통신 분야가 지연되어 지금까지 안 된 진짜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 합니다. 진짜 이유가 따로 있을 것이다.

전략물자통제규정에 걸려서 지금 모든 장비들 이 반출이 안 되고 있지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그런 점이 있습니다.

○柳根粲 委員 개성공단 내 전화국에 설치될 교환기 같은 것을 KT가 15개 정도를 요청했는데 전략물자 심사과정에서 반출 승인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그중에 2개 정도가 문 제가 있습니다.

○柳根粲 委員 이유가 미국이 우리 정부에 통신 장비 대북 반출을 엄격히 통제할 것을 요청한 것 때문입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전략물자라는 것은 EAR, 수출관리규정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우리 측이 자체적으로 개성공단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 설득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 물론 꼭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만 이 아니고 국제적으로든 민간……

○柳根粲 委員 제가 볼 때는 간과할 수 없는 심 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정통부 가, 정부가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일단 전략물자 대북 반출 승인 여부는 통일부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柳根粲 委員 그러나 지금 KT를 관장하고 있

는 주무부처가 정통부 아닙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저희들도 협조요청 하고 있는 것이지만······

○柳根粲 委員 그래서 진짜 이유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그 이유 같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통부가, 지금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기업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전화를 통해서 서울로 1분에 2불 50, 거의 3불짜리 쓰는 것 아닙니까? 개통으로 한 40센트 정도로 낮아지는데 지금 엄청난 부대경비, 통신비 지출을 감내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남북 통신개통을 어떻게 보면 개성 공단의 일차적인 목표로 두고 추진해 왔던 것인 데 이런 문제들로 해서 지연된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통부가 중심이 되어서, 통일 부 소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정부적으로 이 부분을 조속히 해결하는 노력을 정통부장관이 앞장서서라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주문을 오늘 장관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 시겠습니까?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통일부가 주관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좀더 강력하게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柳根粲 **委員**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홍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혜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혜석 위원** 디지털 국력 강화사업과 관련해 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IT인프라 개선을 위해 디지털 국력 강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디 지털 국력 강화대책은 크게 국가행정 및 지식 DB 확충, 교통·물류시스템 개선, 범정부 통합전 산환경 구축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통부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통부는 지식정보 DB 구축, 총예산이 664억 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ITS 표준화 및 통합 DB 구축, 통합전산센터 구축사업 등 총예산 1752억원의 3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통부가 저희 위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상반기 실제 투자 집행률은 매우 낮아서 원래 의도한 경기부양 효과 및 고용촉진 효과는 아주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IT 집중투자로 경기 활성화 및 실업난 해소를 위해 관련 전체 예산 4171억을 상반기 내 67.8%인 2829억 원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능한 사업자 선정은 대부분 1분기 안으로 끝내고 2분기 중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통부가 저희 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가장 집행률이 높은 지식 DB 구축사업의경우 집행액은 315억 원으로 47.4%이고 이를 제외하고는 ITS 표준화 및 통합 DB 구축사업과통합전산센터 구축사업은 집행액이 전혀 없는 등예산집행률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투자 효용성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이나 혹 추진 과정에 서 조정능력의 상실 등 여러 요인이 복합되었다 고 생각하는데 이 지적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전부 다 그런 것은 아 니고요, 다른 부처 중 이 부분에 처음 해 보는 데도 있고 해서 준비가 빨리 안 되었습니다.
- ○서혜석 위원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지만 주도 적으로 사업을 진행시켜야 할 정통부가 직접 추 진하는 사업들에 있어서도 정부가 상반기 내 목 표했던 예산집행률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 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를 들면 통합전산센터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넘어올 때 ISP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작년에 조사한 것하고 우리가 실사를 다시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차이가많이 났습니다. 컴퓨터 대수가 다르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미리 준비했던 면적보다 훨씬 건물면적이 커져야 되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해 가지고집행은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 ○서혜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장관께서 정부 부처 간, 부처-기관 간 회의도 직접 주재하 시는 등 이 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좀 의 아스럽습니다.
- 이 같은 상황이라면 정부가 목표로 한 상반기 내 예산집행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 는데 동의하십니까?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 목표를 다 달성하 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서혜석 위원 다 달성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디지털 국력 강화사업 전체의 집행액은 494억 원인데 예산집행률은 11.8%에 불과합니다. 이는 기획예산처가 집계한 지난 4월 말 현재 예산집행률 39.1%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도 그 예산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지금껏 경기부양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저희들이 행정 DB 구축하는 데 청년실업자를 고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돈을 집행한 것만큼 인력이 고용된 것 같은데,제가 그 숫자만 확인해 보니까 1만 1000명고용하기로 했던 것 중에 3900명 정도는 고용이되었다고 그립니다.
- ○서혜석 위원 그런데 청년인력에 대한 IT전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 DB 업그레이드 사업이 종전 공공근로사업처럼 단순 자료입력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DB 구축 인력에게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IT분야의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취업정보를 제공해서 장기적인 안정적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 ○서혜석 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중장기적으로 IT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고용의 질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IT산업에의 기여를 목표로 시작하셨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많이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현실화되지않도록 더욱더 박차를 가하셔서 정통부의 원래정책방향과 계획에 맞추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하반기에 건교부라든 가 이쪽에서 준비 상황이 늦어져서 투자가 부진 한 것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좀더 박차를 가해서 전보다 훨씬 추진이 낫도록 하겠습니다.
- ○서혜석 위원 어쨌든 이러한 저조한 재정집행률이 경기부양은커녕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안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예산 세울 때와집행률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과연 국민들이 정부가 하는 일을 다 믿을 수 있는지 하는 의심이생기는데요.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저희도 대책을 좀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서혜석 위원 정부통합전산센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잠깐 그 관계 더 여쭈어 보면, 1800억 원이 투여되는 통합전산센터 구축사업의 경우 참여정부 출범 후 선정한 전자정부 31대 과제 중 한과제로서 통합에 의한 정보자원 관리 혁신을 도모하는 선도사업인 만큼 다른 전체 과제의 기반이되는 핵심 프로젝트라 할 수 있지요? 기반이되고 있지요?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
- ○서혜석 위원 현재 1센터 구축 계획과 관련하여 앞으로 6월까지 기관별 이전계획 수립 그리고 8월까지 핵심 업무 이전에 필요한 대체시스템 구축, 9월까지 인프라 구축 완료라는 1단계 추진계획에는 차질이 없는지요?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현재까지는 제가 보고 받기로는……
- ○**서혜석 위원** 공정은 어느 정도입니까?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6월 중으로 실시 설계 를 완료하고 8월 말까지 인프라 구축 등을 완료 할 예정입니다.
- ○**서혜석 위원** 그러니까 1개월 정도 계획보다 늦어진다는 소리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 니까?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9월에 입주하려고 하던 것이 10월 정도로 늦어지는 것입니다.
- ○서혜석 위원 한 달 정도요?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
- ○**서혜석 위원** 네트워크 보안 등 인프라 구축의 공정률은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 ○정보통신부정보화기획실장 이성옥 정보화기획 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인프라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0월 입 주에 맞추어 가지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가 되고 있습니다.

○**서혜석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KT 건물의 리모델링과 삼성SDS와 LG CNS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난 연말 발주된 136억 원 규모의 1센터 1단계 운영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1단계 사업의 경우 개발용역비에 쓴 것 중 21억은 지급했고 장비구입비는 6월에 검사 완료 후 집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사업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136억인데……

- ○**서혜석 위원** 집행이 되었습니까?.
- ○정보통신부정보화기획실장 이성옥 일부 집행 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 ○**서혜석 위원** 일부만 집행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 ○정보통신부정보화기획실장 이성옥 그것은 공 사 진척도에 따라서 선급금이라든지 기성고에 따라서 나가는 것입니다.
- ○**서혜석 위원** 원래 계획대로 기성고 지불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 ○정보통신부정보화기획실장 이성옥 예.
- ○서혜석 위원 2센터는 올해 3월 중으로 부지 선정을 마무리한 후 올해 말까지 기본설계 및 실 시설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는데 4월에서야 2센터 건립 부지가 광주로 결정된 바 있고, 지난 10일 운영기반구축사업자 선정 공고가 나가는 등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 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2센터는 행자부에서 정통부로 주관기관 변경 등으로 다소 지연이 되었으나 올해 내로 설계 및 사업자 선정을 완료해서 전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센터의 운영기반구축사업자 선정은 지난 3월 정보자원 실사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다소 지연이 되었으나 7월부터 제2센터를 공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서혜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센터 구축의 주관이 정통부이지만 구축에 따른 예산 등 정책 전반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행자부가 맡 고 있는 등 부처 내 조직 및 자원 인력의 협조체 제 미비 등 때문이라는데 그렇습니까?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전자정부의 전반적인 총괄기능은 행자부가 하고 있고 공통 인프라 구축 및 기술지원기능은 정통부가 담당한다는 역할 분담 원칙하에서 통합전산센터 구축을 정통부가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행자부하고 여러 가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정부혁신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고 해서 관련 부처 간 협조 유도 및 총괄조정 관리 역할을 담당해서 공동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서혜석 위원 사실 1008억 원이 투입되는 중요한 통합전산센터 구축사업의 경우 국가 중요자료가 한 곳에 집중되는 중요사업입니다. 따라서 성격상 서둘러 진행할 수밖에 없는 디지털 국력 강

화사업에 굳이 이 사업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비 판이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전산센터 통합의 효율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통부의 컨트롤 타워 기능의 강화 및 부처 간 조정과 감 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 마련이 필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치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실제로 컨트롤 타워역할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자정부든 아니면 디지털 국력 강화사업 같이 여러 부처에 실질적인 집행이 일어나고…… 총괄적으로기획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정통부가 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체적인 조정ㆍ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CITO 기능을 정립을 해야 될필요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서혜석 위원 반드시 그런 조정 역할을 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셔서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신위 과징금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쭈어 보겠는데요, 올해 통신위원회가 사업자들한테부과한 과징금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5월 9일 현재 한 461억 원에 달하는데 그 금액은 지난해 걷은 총 과징금 규모에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이 과징금이 통신사업특별회계 중 어떤 세입항목에 편입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통신사업특별회계 정 보통신 부문의 사업외수익에 편성이 됩니다.
- ○**서혜석 위원** 그렇다면 사업외수익 중 과징금 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작년의 경우에 사업외 수익 중 과징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83%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 ○**서혜석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거의 86%로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한데 상당히 많이 되어 있네요.

어쨌든 정통부가 연초에 내놓은 200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를 살펴보면 세입 면에서 통 신사업특별회계 중 정보통신사업 수입은 전년 대 비 4.4% 줄어든 반면 과징금을 비롯한 과태료, 지체상금, 반납금을 포함한 사업외수익은 무려 86.1%라는 숫자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좀 틀린 숫자를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증가추세면 올해 당초 세입예산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그 때문에 일부에서는 통신위가 지나치게 과징금 부과에만 열을 올리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방금 말씀하신 86.1% 는 올해 그렇게 예상했던 것에 대한 비중인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 숫자였습니다.

과징금이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라든가 이용자이익 저해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종속변수이기때문에 미리 목표치를 정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렇다고 이것을 더 걷기 위해서 뭔가벌칙을 강화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과징금 부과액수가 늘어난 것은 이동전화시장의 경우에 번호이동을 전면 시행함에 따라서 이동통신사업자 간에 경쟁이 치열해져서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과징금이 좀 늘어났습니다.

○서혜석 위원 시장의 안정화를 말씀하시는데 이때 부과한 과징금을 갖고 시장 안정화에 쓰는 것은 아니시지요, 그렇지요? 주로 어디에다 쓰고 계십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전체 세입으로……

○**서혜석 위원** 특별히 시장 안정화 목적으로……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거기에 대해 쓰지는 않습니다.

○**서혜석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불 가능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현재는 법규정에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서혜석 위원** 대략 어느 사업에다 이 과징금을 사용하고 계시는지?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대강 정보화, 정보통 신산업 육성, 통신환경 고도화 등 정보통신부 사 업에 포괄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서혜석 위원 수백억 원대에 이른 재원의 부과 기준이 현재로서는 애매하고 사용내역의 파악이불가하다는 점 때문에 일부에서는 과징금의 재원분배 및 사용처에 대한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과징금 부과의 정당성과 재원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예산내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등 세출예산에 대한 지출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도 시간이…… 대충 하기는 했는데 몇 가 지 짧게 코멘트만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이것만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참 좋으신데, 과징금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시장을 안정화시킨다든가 또는 통신사업자가 낸 돈이니까 통신사업을 위한 연구개발에, 예를 들면 지금 정보통신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들어와서 핵심기술을 개발한다든 가 이런 데 활용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서혜석 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전 중에도 했고 그동안 질의한 것을 보고 제가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담도 건에서 EKI 채권에 관해서 간단 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법률가로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솔직히 이해는 갑니다. 풋옵션이라는 게 법률가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풋옵션에 대해서 질권 설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풋옵션 질권이 법률적으로 성립이 되려면 요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풋옵션 질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도로공사 쪽에 통지를 해야 된다든지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하셨는지?

제가 물어본 바에 의하면 아직 그런 것을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법률적으로, 다시 말하면 계약은 되어 있지만 질권 성립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외환은 행 구좌에다 나중에 EKI가 풋백옵션을 행사했을 때 그 대금이 직접 우리의 트러스트로 있는 외환은행 구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데로 새나갈 염려는 없다, 이런 면에서 법률적인 질권은 아니지만 일단 그 정도는 확보해 놨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법률관계가 전문가가 아니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본부에서 다 하실 수는 없겠지만 전문가들의 자문을 충분히 받는, 한번 더 그런 통과 절차를 밟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지금 사후적으로 법무 법인의 자문을 받아서……

○**서혜석 위원** 그런데 사후적으로 받아도 이미 늦은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하셔야 되는 것이 좋겠고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자금 투자회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혜석 위원 그리고 파워콤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여러 분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한마디만 드리고 지나가야 되겠는데요, 원래 2000년도에 사업권 허가가 되었을 때 전용회선을 빌려주는 것만 있고 다른 ISP나 부가사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때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사실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는 소매업에 진출 안 하는 것이 어쨌든 암묵적 아니면 어떤 캄프러마이즈 비슷하게 했던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2001년도에 가서 다시 허가조건을 변경할 때 그쪽에서 이행계획에다 민영화가 51% 이상 되면 ISP사업 자동허가라는 것을 냈고 그 것을 오케이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일단 정책이 됐기 때문에 바뀔 수 없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쉬운점은 그 당시 2000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1년밖에 안 되는 사이에 그렇게 정책적인 변환을 가져와야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인수인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니면 장관님께서도 과거의 백그라운드를 좀더 살피시고, 물론 지금 법적으로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정책적으로라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인수인계라든지 업무의 연결성 부분 같은 것을 앞으로 좀더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2000년하고 2001년 사이에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그때 당시 아마 파워콤 경영자라면 도매업, 망 리스만해 가지고는 몇 년 지나면 사업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요청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마는……

○서혜석 위원 그것은 아는데 법률적으로, 그당시 법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에 도매업은 전용회선을 빌려주는 기간통신역무를 하는 것인데 기간통신사업자는 별도의 신고나 등록없이도 부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아무 말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면에

서 저는 애초에 허가해 줄 때도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나간 얘기이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른 것은 서면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엽 위원 한나라당 강원도 강릉 출신 심재 엽 위원입니다.

지금 행담도 관련해서 EKI 채권 얘기를 들었는데 이 6000만 불이라는 거금에 대해서 이제 무슨 법적 검토를 하고 법무법인하고 상의를 하고, 도대체 국민이 낸 예금과 보험료에 대한 투자를 100% 수익성·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이제와 법률 검토를 하고 뭐하고 제가 볼 때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장관께 여쭈어볼 사항은 아닙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 가 전반적인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 어렵습니 다.

○**심재엽 위원** 그러면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여쭈 어 보겠습니다.

저는 우정사업본부의 리스크관리팀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리스크관리팀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가 오늘 검토를 해 봤지만 보니까 중간중간 사기 를 당했어도 벌써 당했을 요인들이 많이 발견됩 니다.

이 리스크관리팀에 상당히 실력이 있는 분들이 포진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와 계십니까? 지금 상당히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것이 민·형사상의 문제가 돼 가지고 잘못 하면 어느 누구든지 재산상의 책임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회사채든 채권이든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보 증부가 있고 무보증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뭡 니까?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사실상 담보부 채권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재엽 위원 이보세요. 우리가 채권을 사고팔 때 보증부냐, 무보증부냐 그것을 확인하는데 거기에 '사실상'이라는 용어가 어디 있어요? 6000만불 투자하면서 이것이 보증부인지, 무보증부인지이것을 확인해야지 "사실상······" 그런 답변이 어

디 있습니까?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일반적으로는 채권이 무보증·······

○심재엽 위원 제가 큰소리 안 치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무보증부 아닙니까? 보증부라고 그러면 국가기관이라든가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 붙은 것이 보증부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무보증부이잖아요? 자꾸 딴 말씀 하지 마세요.

회사채 4조 1000억 운용했지요?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예.
- ○**심재엽 위원** AAA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회 사채에 많이 투자했지요?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예.
- ○심재엽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이래 생뚱맞은 EKI 들어본 적 있어요? 지금 회사채만 713개가 AAA입니다. 전부 다 내로라하는 회사입니다. EKI 이런 회사가 AAA 언제 나온 적 있어요?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처음이었습니다.
- ○심재엽 위원 그런데 왜 투자하셨어요?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모두에 말씀드렸습니 다마는 수익률하고 신용평가기관의 등급하고……
- ○**심재엽 위원** 신용평가기관이 돈 뜯기면 책임 집니까?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그 당시 신용평가기관 에서······
- ○심재엽 위원 아니, 책임지냐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물어본 것에만 답변하세요. 신용평가기관에서 AAA를 했기 때문에 돈 뜯기면 내가 미안하니까 주마 하고 6000만 불 주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나중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쟁송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 ○심재엽 위원 우리나라에 사례가 있습니까?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그 부분에 대해서 구 체적으로……
- ○심재엽 위원 판례가 있어요?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미국에 판례가 있는데 그것은 선택의 문제이지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AAA라는 것은 주로 투자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투자 보조수단이지 책임을 질 일은 없지요? 6000만 불 못 받으면 신용평가기관에

서 안 물어주지요?

소송 건다고 그랬지요?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예.
- ○심재엽 위원 소송 걸 생각하고 투자를 합니까? 아마 6000만 불이 본부장 본인의 돈이라면 그런 식으로 안 할 것이에요.

하나 물어봅시다. 이 채권이 EKI Pte입니까, EKI B.V입니까?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B.V입니다.
- ○**심재엽 위원** 이 B.V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지금 현재 네델란드……
- ○심재엽 위원 페이퍼 컴퍼니지요?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예, 그렇습니다.
- ○심재엽 위원 여기서 발행한 것이지요?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그렇습니다.
- ○심재엽 위원 이 회사 자본금 얼마입니까?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증자해 가지고 약 900 억......
- ○**심재엽 위원** 증자 전에 이 채권 살 때 자본금 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100억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심재엽 위원 당신들이 보고한 여기에 1만 8000 유로예요. 2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자본 금이 1만 8000 유로인 회사에서 6000만 불 샀지 요?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예.
- ○심재엽 위원 세상에 그런 식의 매입이 어디 있습니까? 자본금 2000만 원 정도의 주식회사에 서 발행한, 그것도 조사 회피를 위한 페이퍼 컴 퍼니에서 발행한 6000만 불인데 본인 돈이라면 그것 사시겠어요?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위원님, 그것은 EKI 자본금을 보고 저희들이 매입한 것이 아니고 도 로공사에 추심하는 청구권을 보고 매입했다고 말 씀드렸......
- ○심재엽 위원 청구권은 나중에 풋옵션 한 것이고 이 주식회사가 발행한 6000만 불의 채권을 살때는,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어떤 정도의 회사이고 자본금이 어떻고 앞으로 갚을 수 있는지 이것을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그 당시 법무법인 광 장으로부터 그것은 확인했습니다.
- ○심재엽 위원 이봐요. 그것은 리스크관리팀에

서 최소한도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자본금 갖고 있는 회사가 발행한 것……

여기서 사기를 한번 당할 뻔 했어요. 말씀드릴까요? 6000만 불 언제 매입했어요? 돈 지급일이 언제입니까?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2월 15일에……

○심재엽 위원 그것 가지고 증자했지요? 그 증 자에 대한 풋옵션 아닙니까?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그렇습니다.

○심재엽 위원 이 사람들이 증자 안 하고 EKI B.V가 6000만 불 갖고 날랐어요. 방법 있어요? 제가 1차 사기를 당할 뻔했다는 것이 이것이에 요.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장치가 있었어요?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그 당시 3월 24일에 질권설정……

○심재엽 위원 아니, 돈이 들어갈 당시에는 이회사가 1만 8000 유로밖에 안 됐어요. 그다음에다행히 이것 가지고 증자했는데 결국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채권을 산 것이 아니고 이 회사가 증자한 다음에 들어가서 주식 참여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EKI B.V가 증자 안 하고 돈 가지고 날랐으면 어떻게 했을 것이에요?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그 후에 2월……

○심재엽 위원 아니, 그때 장치가 되어 있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날르면 그만 아닙니까?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계좌 질권설정까지 다마쳤습니다.

○**심재엽 위원** 이봐요! 저한테 자꾸 그렇게 엉 터리……

1만 8000 유로 당시에 이 채권을 샀습니다. 그 6000만 불 가지고 증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증자를 안 하고 6000만 불 가지고 튀었다면 거기에 대한 장치가 있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위원님, 저희들이 설 정한 질권이……

○심재엽 위원 참,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는데, 질권 설정은 돈이 들어간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것을 가지고 증자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 데 돈을 넣었을 때 증자를 안 했으면 어떡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위원님, 저한테 설명 할 기회를……

○심재엽 위원 그러면 해 보세요.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그 말씀은 지금 풋옵 션에 대한 질권 설정이고요……

○심재엽 위원 참, 몇 번을 말해요. 풋옵션은 6000만 불 들여 가지고 그 돈으로 증자한 데 대한 풋옵션이고, 6000만 불 들여 가지고 증자를 안 했을 때 무슨 안정성을 갖고 있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제가 보니까아무 것도 없어요. 아무리 따져보고 알아봐도 없습니다. 뭐냐? 오로지 믿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차로 사기당할 뻔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풋옵션 질권 설정이라는 것이, 전세 계약서 생각하면 돼요. 내가 전세 계약자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이 돈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집주인이 갖고 있잖아요. 쌍방이 다 동의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EKI가 이 옵션을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무슨 소리냐, 나는 못 주겠다'……

3자 계약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무슨 외환은 행이 이것을 질권을 해요? 어떻게 이것을 외환은 행이 질권 설정을 합니까?

풋옵션은 계약입니다. 그 쌍방 계약에 의해서 나중에 책임을 추궁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이렇게 사기를 당할 뻔했고, 그건 분명히 사기를 치면 당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고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그런데 심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그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채권 발행은 씨티증권에서 했고 그 채권을 판매한 돈에 대한 관리는 전부 외환은행이 했기 때문에지금 말씀하시는 게……

○심재엽 위원 채권 발행은 대행해서 금융기관이 했겠지요. 그러나 채권 발행자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채권에 대해서 지불의무는 페이퍼 컴퍼니에 있는 것이지 은행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페이퍼 컴퍼니가 증자할 목적으로 이것을 해 가지고 증자하게 되면 그 것에 풋옵션을 걸기로 했는데 증자 안 하고 그냥갈 수 있거든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그 말씀이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EKI가 만질 수없게 되어 있는 것 같다는 말씀……

○심재엽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돈이라는 게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우정사업본부금융사업단장 양준철** 금융사업단 장입니다.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EKI가 증자한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 없도록 2월 16일에 저희들이 수탁기관을 통해서 계좌 질권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심재엽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원론적으로 물 어봅시다.

우정사업본부에서 수익률하고 안정성을 따져서 투자했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정말 이렇게 복잡한 내용의 사업에 투자할 마음이 있었어요?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본질에 제대로 들어갑시 다.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그때는 순수한 마음에서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엽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 요.

반복되는 것이지만 회사채를 4조 1000억을 투자하면서 AAA, 이런 회사 본 적 있어요?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EKI는 처음입니다.
- ○심재엽 위원 본부장이면 이런 회사한테 6000 만 불 투자해요?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그 당시에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 ○심재엽 위원 본인 돈이라면 어디에서 전연 들어 보지도 못한 회사가 AAA라고 하면서 채권 발행을 하면 투자하겠어요? 더군다나 AAA라고 평가해 준 신용평가회사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 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나중에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갖 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심재엽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렇게 나중에 책임질 일……

말씀하시기 어렵겠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이런 채권에 6000만 불을 투자한다는 것은 본인 들 결정으로는 절대로 못합니다. 첫째는 제가 그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수익률은 말이지요. 지금 정부에서는 BTL사업 같은 것에 5년, 10년 국고채 5.5%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플러스알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 8%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수익률이 좋은 투자처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것은 정부에서 재정으로 보증을 합니다. 이런 엉터리 투자처에다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누가—외압이라고 표현합시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는 세상에 이런 데다 투자할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그 회사가 그러한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서 풋옵션을 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뚱맞게 1만 8000유로, 2000만 원짜리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에 6000만 불을 투자하면서 그다음 단계로 외환은행에서 돈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거기에 풋옵션 질권 설정 어쩌고…… 우정사업본부에서 그런 투자를 왜 하느냐는 것이지요.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풋옵션에 대한 질권 설정은 그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계좌에 대해서는 이미 질권 설정이 되었습니다.

○심재엽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정사업본부가 행담도 문제의 핵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참 안타깝습니다. 리스크관리팀에서 여러 가지변명을 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김석준 위원께서도 많이 물어보시던데 이런 회사채 투자 자체를 아무 것도 확인 안하고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AAA라는 것도 책임지는 기관에서 평가한 게아니고 거기에서 나중에 보상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봤을 때 확실하게…… 본인들이 책임진다, 물론 책임져야 되겠지만 과연 외압이 없으셨어요?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예, 없습니다.
- ○**심재엽 위원** 그러면 이것 장관님께는 보고하 신 거예요?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그전까지는 보고를 안했고 이번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심재엽 위원 그러면 본부장의 직무유기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사 건을 들여다보면 원래 도공에서 오점록 사장이 하다가 나중에 사장이 새로 오셔가지고 이것 문 제 있는 사업으로 브레이크 걸었지요? 이것 알고 있습니까?
-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저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 ○심재엽 위원 이보세요, 6000만 불을 투자하려면 이 회사가 어떤 스토리를 밟고 온 회사인지 그것을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을 뜯길지도 모르는 사업인데……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되는 문재인 그분하고 정 찬용 그분의 자제분들이 이 회사에 관여했던 것 알고 있었어요?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심재엽 위원 그러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단지 수익률하고…… ○**심재엽 위원** 6000만 불이면…… 본부장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생뚱맞은 페이퍼 컴퍼니,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생뚱맞은 페이퍼 컴퍼니, 자본금 2000만 원 갖고 있는 회사에서 발행한 채 권 6000만 불 어치를 사려고 하면 본인들이 직접 전부 다 신용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다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EKI 자본금을 보고 채권투자를 한 것은 아니고요, 도공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보고 투자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재엽 위원 청구권이라는 것은 투자할 당시 에는 성립이 안 됐던 증권 아닙니까?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그 당시에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질권 설정 부분에 대해서……

○심재엽 위원 우정사업본부에서 그런 식의 투자를 왜 하느냐는 것이지요. 투자할 많은 투자처가 있는데 왜 위험 부담을 안고 그런 생뚱맞은 짓을 했느냐 이겁니다.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글로벌회사라고 볼 수 있는 씨티증권 쪽에서 그 당시 나름대로 구두로 청구권에 대한 것을 확약했기 때문에……

○심재엽 위원 그러면 씨티증권에서 나중에 원 리금 책임집니까?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씨티증권이나 또는 외환은행이나 신용평가기관이 다 마찬가지로……

○심재엽 위원 이것은 우정사업본부 리스크관리 팀에서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풋옵션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는 것인데, 이게 두 번째 사기예요. 사기당할 것을 지금 말 씀드리는 거예요. 주식이 있을 때 풋옵션이지 만 약에 부도가 나거나 회사가 없어져 가지고 법정 관리로 들어가서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면 못 받 지 않습니까?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선순위채권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파 산까지는 안 가리라고 봅니다마는……

○심재엽 위원 그렇게 가정하지 말고요.

투자를 6000만 불 했기 때문에 첫째로 날라버리면 6000만 불 날리는 것이고, 이 회사가 부도가 났다거나 없어져 가지고 법정관리로 들어갔다거나 청산절차에 들어가면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는데 그때 풋옵션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홍창선 간사, 이해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심재엽 위원 뭐가 여러 가지입니까? 6000만 불 투자해 놓고 이제 와서 여러 가지로 검토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없어지면 6000만 불을 어디 가서 받느냐는 겁니다. 못 받잖아요!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그것은 법률자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심재엽 위원 이봐요, 6000만 불을 투자하면서 법률자문을 해요? 확실하게 안 떼인다는 확신이 있어야 투자하는 것 아니에요?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그 당시로서는 했습니 다마는 그 후에……

○심재엽 위원 글쎄, 6000만 불을 투자해 놓고 이 회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 법정관리나 청산절 차에 들어가서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풋옵션 가지고 큰 뭐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회사가 망하고 휴지조각이 되면 어디서 건진다는 거예요? IMF 이후에 대기업들 다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채권 떼이고 은행들도 떼이고, 그런 것 모르세요? 그래 가지고 공적자금 165조들어간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뭘 건질 수 있습니까? 회사가 부도나면 끝인 거지요. 기껏해야 채권자로서 경매 통해 가지고 일부 건지겠지요. 우정사업본부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위원님, 물론 저희들이 투자할 당시에 그 부분들을 완벽하게 짚지 못한 것만은 시인을 합니다마는 그 후에 법률자문을......

○**심재엽 위원** 그러니까 6000만 불씩 투자하면 서 미처 생각 못했다는 것을 시인한 거지요?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나름대로는 절차를 거

쳤습니다마는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재엽 위원** 우정사업본부의 리스크관리팀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이 회사가 부도났을 적에 풋옵션이 먹힐까, 안 먹힐까 그런 생각도 못하는 수준이에요?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완벽하게 절차를 거치 지 못했지만……

○심재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외압이라고 주장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첫 번째 사기를 모면했는데 요, 두 번째로 이 회사가 고의로 부도를 낼 수도 있어요.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법률자문관을 통해서 점검 하고 있습니다.

○심재엽 위원 이제 감사원 감사가 끝나고 아마 검찰로…… 이게 특검까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만, 이 자리에서 시인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전 문가 입장에서 보면 정말 상식 밖의 채권 매입을 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상식 밖의 채권 매입에 정말 안타깝게 우정사업본부가 걸려든 것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쓰럽고 그래요.

앞으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드릴 게 있으면 도와드리겠지만 아무리 검토해 봐도 지금 1단계는 넘어갔지만 2단계에서 이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가 고의 부도를 낸다든가 해서 이게 잘못 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건질 것이냐에 대해서 는.....

풋옵션이 만능의 제도가 아닙니다.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을 적에 풋옵션의 가치가 있 는 것이지 풋옵션의 가치가 이미 소멸된 상태에 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투자를 하셨어요. 문제는 700개가 넘는 AAA를 받는 회 사가 아닌 회사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을 지금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을 지적 하고 싶고요.

앞으로 담당자나 우정사업본부장께서는 형사나 민사나 굳이 책임을 떠안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 오. 이것 나중에 손해배상이 되면 민사적으로도 전부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지금 자산관리공사에 서 얼마나 많은 소송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참 안타까운데요, 지금 이라도 본인들의 책임이 없는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앞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 충고를 정말 잘 듣고 앞으로 감사원 감사라든가 기타 검찰조 사에서 확실한 입장을 견지해야지 아마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다시 말씀드립니다마 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도 받 았고 자체 조사도 했습니다마는 일단 청탁이나 외압 부분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당시 에 짚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률자문관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심재엽 위원 자꾸 6000만 불을 미처 짚지 못 했다…… 어느 국민이 그것을 잘 했다고 그러겠 어요? 6000만 불이 무슨 우리가 흔히 쓰는 용돈 입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봉** 심재엽 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심재엽 위원뿐만 아니라 여야 위원들 공 히 EKI 채권 매입 문제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는 데 그 질의를 듣는 과정에서 위원장인 저도 위원 으로서 느끼는 소감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 고 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정치쟁점이라기보다는 여야를 떠 나서 우정사업본부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모두 질 의를 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보고내용을 보면 전혀 문제없는 것으로 그 경위와 사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정사업본부가 운용하는 자금이라는 것은 대기업이나 또는 돈 많은 사람들의 예탁된 자금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 중에서 가장 영세한 서민들이 맡기는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 용은 비교적 문제없이 잘 해 왔는데 EKI 외화채 권 매입한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다 걱정을 하고 또 의혹을 떨칠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특히 심재엽 위원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이 라서 이 분야에 관해서는 대단히 정밀하게 이 현 실을 잘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금융사업단장이 누굽니까? 특히 금융사업단장 이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서 영세서민들이 맡긴 돈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운용을 해야 되는데, 본부장은 금융전문가입니까?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저는 공무원 출신입니 다.

○위원장 이해봉 금융사업단장은요?

○우정사업본부금융사업단장 양준철 저도 그렇 습니다.

○위원장 이해봉 금융 관련해서 전문가로 특채 된 분이 아닙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아닙니다. 경험이 없 습니다.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금융사업단장도 공무 원 출신이십니다.

○위원장 이해봉 그러면 어떤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614억이나 되는 이런 거대한 투자를, 그것도 국채도 아니고 개인회사가 발행한 여기에다가투자를 한 것입니까?

일단 상세한 내용은 이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각 위원들한테 설득이 될 수 있도록 더 정밀한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걸 위원** 안양 만안 출신 열린우리당의 이 종걸 위원입니다.

업무현황을 보시면 우선 ESCAP ICT센터 유치·설립은 굉장히 노력하셔 가지고 큰 성과를 내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육수혜자 네트워크확보, 기타 한반도의 투자위험지역으로서의 우려심리 이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통부에서노력을 해서 앞으로 이런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들은 국민들한테 더 알리시면 좋겠습니다. 많이노력하셨는데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 감사합니다.

○이종걸 위원 또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개성공단 통신공급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업무현황을 어느 누구보다도 아주 간략하게 요령 있게 잘 정리하셔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북측 구간의 공사지연만으로 이런 통신공급 일정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다 얘기하신 것처럼 EAR규정 그리고 상무성 수출통제품목, CCL(Commerce Control List)이 있어서 미국 지적소유권 10%만 들어가면 상무성에서 통제 리스트를 갖게 되는데…… 이것 딜레이되는 이유가 우리나라 영자신문에도 나왔던데요.

그런데 이게 안 들어가면 사실 전체 개성공단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뿐 아니고 바세나르협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전략물자 제한협정이 있어서 소위 말해서 적색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단 말이지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서 이게 지연이 아니고 어

려워진다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과 대한민국의 기대, 그리고 국민의 기대가 크고 지 금 북한의 경제사정으로 개성공단에 여러 가지 유발효과를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통일부, 또 미국과의 관계는 외교통상부 쪽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시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파워콤의 허가 관련 정책방향을 보면 원래 파워콤이 회선설비임대사업자로 업무 허가를 낸 기업이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

○이종걸 위원 한전의 자회사로서 한전의 회선 설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만들어 진 회사인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좀 표류하다가 사기업체에 인수되었지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

○이종걸 위원 다만 처음 만들어진 회사의 생성 과정은 한전이라는 공기업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회선설비 임대 목적의 회사란 말이지요. 그리고 이 회사가 시내망, 기간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러 가지시장상의 고려가 있어서 도매업만 하도록 돼 있는데, 물론 회사로서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것 같아요. 공급이 과잉인 것 같지요? 그래서 직접 소매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냥 정보통신부에서 법률상 어쩔 수 없다 이렇게만 해서는안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시장의 적극적인 규제 이런 것들이 저는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뒤에 KT 이야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것에 대한 적절한 시장 상황을 보셔 가지고, 공급과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풀어 가지고 회사가 어떻게 된 다든지 이런 것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또 어쩔 수 없다면 상당 기간의 유예기간을 예고해서라도 시장에 충격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장관님?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법적인 근거하에서 허가를 안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보이니까 적어도 공정한 경쟁이 이 안에서도 될 수 있게 여러 가지…… 임대사업을 하니

까 소매업을 하는 사람들이 망을 빌려 쓰는 데 불이익이 안 가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걸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원래 태생적으로 임대사업자로서 시작한 것이 고 또 공기업에서 시작한 것으로서 국민기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기간망 사업자였는데 그것 이 다른 경위에 의해서 사기업체에 넘겨졌다 하 더라도 그런 성격은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그

회사도 살려야 된다는, 어떻게 살릴 방법을 마련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무조건 소매경쟁에 들어와 가지고 다 망하느니 여러 방법을 좀 생각 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정위의 통신사업자 부당공동행위 조 사, 시내망 유선사업 분야만 이번에 된 것이고 무선초고속인터넷, 초고속통신망까지 다 이어진 다고 하는데 1200억이라는 과징금은, 저도 이런 과징금도 있나 하고 봤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렇게 부자가 됐는지, 이런 정도였다면 어떻게 여 기까지 왔는지 저는 도대체 상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공 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도 하고 그래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느낌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은 담합 조사할 때 증거가 없어요. 보통은 구두 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뒤져봐야 될까 말까 될까 말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여기 보면 버젓이 다 사인을 그냥…… 사업자들이 소위 말하는 공정거 래위원회에서 본 담합행위 그 자체에 대한 문서 작성을 일목요연하게 한 사례입니다.

사업자들이 그것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저는 반면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굉장히 떳떳하다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뭐든 제재를 받는 행위들이 부당한 행위라고 느끼는 것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오래 사업을 하면 서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사람 들이 이렇게 떳떳하게 사인을 하면서 담합의 증 거를 만들어 뒀을까, 저는 그것부터 그 당시 에 보면 물론 한쪽의 주장이 실린 신문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너무 떳떳해요. 이게 시내전화로 봐 가지고는 원가보상률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란 말 입니다. 담합행위라는 것이 초과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손해를 줄이기 위한 담합이에요.

어느 한쪽에는 시장점유율이 아주 낮기 때문에 누가 봐도 소위 말하는 이 담합을 안 하면 그 회 사는 죽게 돼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어느 한 죽게 된 회사를 살리기 위한 행위로 했 단 말이에요. 얼마나 선의의 행위였습니까? 그러 니까 떳떳하게 사인하죠.

그리고 원가 이하의 보상이에요. 시내전화로 보면 OECD 같은 데를 봐도 우리가 굉장히 가격 이 낮습니다. 기본료나 통화료가 OECD 평균의 반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정거래 위원회에는 밥을 갖다 주듯이 담합에 대한 증거 를 사인해서 갖다 주었단 말이지요. 차라리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정통부에서 이런 행위를 어떻게 보면, 심결 내 용을 보면 딱 거기에 맞게 행정지도한 것은 아니 다라고 하지만 그런 분위기와 그런 유도…… 기 간통신사업자로서의 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을 정 보통신부에서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반영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통신사업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규제정책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통신부 가 대립도 하고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도 보면 1200억 과징금 을 받는다는 게 아마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 요.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통신부와의 적극적인 규제정책의 일원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장관님?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이번에 담합에 의해서 과징금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사 실 규제당국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 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사실 KT의 담합 의 증거를 찾기 위한 조사권한 같은 게 없습니 다. 다만 공정위에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가서 컴 퓨터도 집어가고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져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증거가 나왔고, 정통부 가 2002년에 한 행정지도가 과연 직접 연결이 되 느냐, 관계가 없느냐 하는 게 중요한 담합의 심 결사항이었고요. 또 하나는 담합이 언제 끝났느 냐, 종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과징금이 크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여하간 저희들이 행정지도한 것에 대해서도 많 이 감안을 해 달라, 그다음에 통신시장의 특수성 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해서 좀 경감을 받았지만 이런 일이 궁극적으로 없어지려면, 담합이라는 자체는 여하간 합법적인 일은 아니기 때문에 담합은 안 일어나야 되고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정보통신부에서도 일부이런 것들을 초동에 제압할 수 있는 조사권이라도 있으면 초동에 안 일어나게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지금 유효경쟁체제라는 것을 전혀 안 함으로 해 갖고 후발사업자가 없어지는 것은 파워콤이 진입하는 것과 똑같이 걱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걱정해서 행정지도를 하는 게,약간의 상황 진전이 돼서 담합으로 이어질 것을 어떻게 제어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이종걸 위원 통신위원회의 조사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 주시던가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하고 논의하시고요. 그런 정책적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이번에 이 케이스를 봐서 일단은 클린마케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공 정거래위원회하고 사전에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이 됐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을 좀 더 초동에 멈출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같으 면 전문성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이 지나고 나서 확실하게 시장에서 변화가 나타 났을 때 개입되기 때문에 과징금이 커지지 않습 니까? 초기 단계에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종걸 위원** 바로 착수해 주십시오.

그리고 통신위원회도 과징금이 450억으로 돼 있잖아요. 1000억까지는 안 갔지만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통신위가 모든 사업에 대한 역무 허가권, 규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사업체에서 불복하지 못하고 행정소송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체의 곤란을 정보통신부에서 미리 알아서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파워콤 얘기는 시장의 성격이 다른 것이지요. 새로운 시장으로 진입하려는 것에 대한 조사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시장 내에서 여태까지후발사업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가지고 비대칭규제를 해 주신 건데 저는 그것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옳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떵떵 맞아 버리면 그리고 정보통신부의 입장이 자꾸 흔들려사업자가 따르지 않고 유저들이 따르지 않으면

정보통신부 정책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조사가 이어진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초기대응을 해 주셔 가지고 깜짝 놀라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걸 위원** 개인정보, 텔레매틱스에 관련된 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봉 이종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강성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종 위원 강성종입니다.

장관님,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거의 끝날 때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냥 넘어 가려고 그러다가 행담도 문제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다른 두 분 위원님이 별 로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아 가지고 마지막 정리 로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압이냐 의혹이다, 의혹이 너무 깊기 때문에 외압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의 혹이 깊다는 얘기는 검토나 분석이 굉장히 미흡 했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 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보면.

행담도 문제는 법적인 절차까지 갈 것 같고, 앞으로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더 짚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우정사업본부의 마인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마인드가 너무 기계적이지 않았느냐.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높은 수익성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때 금리가 5.75%라고 그러면 이것 은 상상 이상으로 높은 금리거든요. 보통 높아도 4% 이상 넘기가 힘든데 이렇게까지 간다는 얘기 는…… 일반적으로 보통 증권가에서 금리가 높을 수록 거기에 대칭적으로 높은 것은 리스크입니 다. 리스크가 높을 거라고 누구든지 다 생각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따 랐어야 되는데 오히려 일반적인 금리도 아닌데 이런 데에 대해서 정말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 태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건, 진실이 어떻게 됐건 의혹들이 증폭되고 또 외압까지 얘기가 되 는 이런 지경에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우정사업본부에서 하는 모든 채권 발행에 있어서는 안정성에 대해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 져야 되는데 안정성보다도 굉장히 안일한 분석결 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많은 위원들이 오 늘 하루 종일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 다.

EKI가 우리은행에 대출신청을 두 차례나 했는 데도 자문협정 관계에 대해서, 법적 효력에 대해 서 불안전하고 또 도로공사 측에서 양도에 대해 서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출도 못 받았습니 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의혹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또 금융감독기관의 재무제표 하나도 우리가 확인을 못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상징 적인 입장에서 해외발행채권을 어떻게 국내 평가 기관에서 평가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외 평가 기관에서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건 똑같은 것인데 이런 게 그냥 간과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 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협약 당시에 당기순손실이 9억이 되고 EKI의 최대지주회사인 JJK 같은 경우에도 근 9억의 당기순손실을 입을 때 재무제표가 신용도나 기업의 미래가치성이 굉 장히 불투명한 것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간 과되고 지나가서 매입과 오늘의 이런 얘기가 나 왔다는 게 이것은 정말 마인드의 경직이지 않느냐.

제가 보니까 우정사업본부의 현 채권운용 금액 이 14조 4277억인데 그중에서 12%인 1조 6820억 이 도로공사채권 매입이지요. 도로공사가 하면 무조건 다 합니까? 경직된 마인드가 있는 것 같 아요. 외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먼 저 중심이, 마인드가 서야 되는데 도로공사가 하 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식으로 북 치고 장구 치는 격으로 따라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경우에 이렇게 재무 제표 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불안정한 상태인데, 하이 리스크를 갖고 있을 경우인데 이것에 투자 했다는 얘기는 첫 번째로 일단은 자체 마인드가 경직돼 있고 기계적으로 분석한 것밖에 아니고, 안일한 가운데서 또 도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도로공사에 대해서 자문협약도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따라가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채권의 투자에 대해서, 채권투자의 기본은 바로 분산투자입니다. 지금 12%가 도로 공사에 묶여 있는데 좀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 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무리 사업성이 있다 그래도 국가기관에 투자하 는 것은 명분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행담도에 투자한 것은 명분이 절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지정한 산업단지인데. 위락시설에 대한 투자인데 그게 미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미래성이 있다고 한다는 것 은 투기를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현재 국 가산업단지로 묶여 있는 상태인데 도로공사가 푼 다 그것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자산의 증식 을 위해서는 그것을 풀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경우라면. 그런 얘기밖에 안 돌아가는데 그러면 국가기관, 공공기관에서 투기성으로 내부거래에 의해서 이런 것밖에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은 산업단지이고 행담도 근처 의 방파제로 인해서 갯벌이 유실되고 환경단체에 서 많은 얘기가 되는데, 수익성이나 안정성보다 도 시민들이 환경 문제하고 영향평가들을 얘기하 고 있는 시점에서 거기에다 대고 투자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물론 수익을 내야겠지만 안 정성과 그리고 국가기관으로서의 명분이 충분히 투명하게 제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난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계적인 마인드보다도 일단 앞으로 체계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게, 리스크관리팀의 시스템이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정사업본부가 57조를 운용하지요?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예.

○강성종 위원 지난해 본 위원이 리스크관리팀 이 LG채권이나 SKG채권을 사전 분석 없이 매입 해서 많은 손실과 우려를 낳게 했었고 거기에 외 압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만기채를 돌려 막게 되 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들한테 신 뢰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 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정사업본부의 리스크관리팀 얘기는 본 위원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2002년 2월 28일 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심의회 회의록을 보니까 거 기에서 리스크관리팀의 구축과 독립적인 운용 얘 기가 먼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게 구축되기 시작한 것은 1년 반 뒤고 오늘 그 상태를 보니까 현재까지 제대로 운용이 되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현재 일반 금융권 같은 경우에 ALM이라고 그래서 자산부채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는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예, 하반기에 구축할 것입니다.

○강성종 위원 기본적으로 57조를 운용하는데 자산부채관리종합시스템이 있어야지요. 2002년 2월 28일 회의록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이런 것이 구축이 안 되고 있는데 57조를 관리하면서 과학적으로 안정성, 기업의 가치, 투자성을 확인하려면 이런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일반 금융권에도 다 구축되어 있는 것이안 되었다는 것은 어떤 정교한 분석이 제대로 될수 없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보니까 은행권 같은 경우에 몇 년 전부터 선진화를 지향하면서 바젤Ⅱ프로젝트를 다깔고 있는데 우정사업본부의 리스크관리팀 같은 경우에 자산과 부채의 갭에 대한 분석을 뭘로 하나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엑셀로 하더라고요.

지금 본부가 개인투자가입니까? 엑셀 깔아 놓고 그 상태에서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 재정의 건전성 확보는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담도 같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57조를 관리하는 사업본부에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너무 인색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로 얼마가 들더라도 빠른 시간에 내에 구축되어야 되는데 4년 가까이 되도록 이런 시스템이 구축 안 되었다는 자체, 아직까지 엑셀을 깔고 거기서 확인한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이 마인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주시라는 것이고 또 그 마인 드를 따라주려면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야 된 다, 이런 시스템에 만큼은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 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초고속인터넷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포화상태이고 그리고 사업자 같은 경우 100여 개가 넘고 있지만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재투자에 대한 기대는 어렵고 또 시장이 과열 혼탁되기 때문에 통신 쪽에 과징 금이 33억까지 추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 KT가 50%의 파이를 차지하고 있고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파워콤 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유 선가입자망 보유현황을 봤을 때 KT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것이 파워콤인데 그러면 두 공룡이 이 시장에서 또 한번 치고 박고 싸움을 할 것이고 결국은 군소 사업자들은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장관님께서는 지배적 사업자인 KT가 약관인가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끔……

저는 앞으로 유효경쟁체제에서 자유경쟁체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어 느 정도 기간과 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건전한 시장과 그 건전한 시장 안에서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 고 건전한 경쟁을 위해서 꼭 KT가 약관인가사업 자로 선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마찬가지로 파워콤 같은 경우 정통부에서 금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허가조건을 명시할 수 있게끔, 유효기간을 한 2 년 정도 두어서 유치 상한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또 지금 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경쟁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려 해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불공정경쟁을 금지하는 망에 대해서 개방의 의무화를 허가조건상에 명시를 해주셨으면, 또 특수 관계의 회사하고의 어떤 차별 화라든지 회계를 분리를 함으로써 내부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허가 전에, 이런 조건 규정들을 깊이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번에 IT사업 발전과 u-KOREA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 3월에 실·국 간 업무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개 사무국으로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한 군데를 확인해 보니까, 중소기업정보화사업 같은 경우인데 최근 3년 간 팀장급인 과장과 사무관급이 각각 3년 사이에 다섯 번 정도 인사이동이 되었더라고요. 올해 상반기에 보니까 과장이 한 네 번하고 사무관이 세번 정도 이동되었습니다.

올 상반기에 이렇게 인사이동이 된 상태라고하면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책의 일관성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여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더 큰 문제는 업무이관은 했는데 담당인력은이관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저희들이 전화로

확인하다 보니까 다 모르십니다. 이런 것은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u-KOREA 효 과적 추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번 직무직제 변경 같은 경우 사실 행자부 직무내용 변경에 의해서 돼야 되는 데, 대통령령에 보니까 직무직제 변경을 위해서 는 행자부에 직무내용 변경 요구를 하고 행자부 에서 법적 검토가 있은 다음에 법제처에서 심사 하고 국무회의의 개정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는 데 그러면 한 2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사항인데 행자부에 확인해 보니까 이 내용이 행자부하고 전혀 얘기되지 않 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그쪽에서는 이것은 무권한 자가 권한 외 사업을 하고 있다, 임시방 편이라고, 여태까지 부처에 이런 게 있어 본 적 이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통부는 미래산업을 유도하는 우리 국가산업 의 미래이고 희망인데, 법행정은 우리가 준수해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IT사업가들한테는 우리가 법을 준수하자고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기본 에 있는 이런 행정적인 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얘 기가 이 시점에서 다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 을 합니다.

오늘 내용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질의보다는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부 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다들 상당히 공감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은 저희 들이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부분, 우리가 3월 에 업무 조정한 것과 관련해서 행자부가 우리하 고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들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강성종 위원 대통령령 18729호에 나와 있습니 다. 정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나 직무내용 변 경 시 이것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변경 요구를 해 야 됩니다. 국 안의 실에서 움직이는 것은 상관 없지만 국과 실이, 국과 국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 내용이 심의를 받고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됩 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저희 들이 할 수 있는 분장사무범위 내에서 조정한 것 으로 생각을 하는데……

○강성종 위원 국 안의 실이라면 그렇지만 국과 국이, 국과 실의 직제가 변경될 경우에는 대통령 령에 의해서 직제 변경을 행자부에 요구하고 이 변경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세요. 시각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것을 확인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통부에서도 법제 심의를 할 텐 데 이런 것이 그냥 간과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 습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사실 파악을 해 보면 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업무를 효 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업무분장을 할 수 있는 범 위 내에서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 특별한 게 있으신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행자부 하고 의논하고 우리도 확인을 해서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종 위원 예, 그래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해봉** 강성종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창선 위원 홍창선 위원입니다.

하루종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담도 관련해서는 강 위원이 마지막 발언이라 고 해서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정통부가 IT839 전략으로 국민소득 2만 불을 달성하는 문제라든가 일자리 창출 분야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화제를 바꿔 서 IT839 전략과 관련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IT839 전략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특히 최근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보고서를 하나 펴냈어요. 'IT839 전략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이라고 해서 최근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보셨습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 니다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홍창선 위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IT839 전략 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와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의견들을 담았는데, 거기에 보면 보통 그런 의견들을 많이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IT839 전략이 지나치게 대기업만을 고려한 방안 아니냐,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좀 미진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대기업

이 앞장설 수밖에 없는 점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나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IT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 대기업이 기여하는 바는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중소기업과의 협력체제가 중요하고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많이 일어나야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중소·벤처기업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 보면 상당히 하소연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재미를 볼 만하면 금방 대기업에 치이고 납품할 때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이런 등등이 있는데요.

첫째로 장관께서는 이 보고서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증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좀 미진하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만일 동의하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책을 마련하고 관심을 더 집중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T839 전략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IT산업을 참여정부 내에 두 배로 키워 보자라는 아주 큰그림에 대한 얘기고요, 그 실행주체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누가 뭘 해야 된다라는 것은 거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적인 협력을 해야된다는 것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839 자체에는 그런 게 전혀 적혀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여러 차례 회의도 하면서 예를 들면 대기업에 납품할 때 그 납품단가를 결정하는 것이 최저입찰체로 되어 있는 것을 종합평가제로 바꾼다든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제품들을 사는 퍼센티지를 유지한다든가 하는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거기에는 적혀있지 않은데, 다만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사이의협력을 강화해서 부품이라든가 소재라든가 기술지도라든가 교육・연수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이더 강화가 되어서 전반적으로 국가산업경쟁력이높아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홍창선 위원 저도 거기에서 대기업·중소기업 그런 것이 보이지는 않는데, 남들이 그런 평가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십사 하는 부탁입 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아마 도 대기업 CEO 출신이라서 그런 방향으로……"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다 는 것을……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그것은 좀 편견인 것 같고요, 특히 그런 소리를 안 들으려고 일부러 중소기업육성정책을 여러 가지로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전달이 안 되어서 그렇다 고 하면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창선 위원 하여튼 앞으로 중소기업의 애로 가 또 어떻게 있는지 잘 살피셔서 이런 IT839 전략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저도……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아마 간사님도 최근에 보고를 한번쯤 받으셔서 아실 테지만 저희들이 중소기업 재도약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IT SMERP 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요즘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언제 한번 소개해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특히 IT 쪽의 2만 3000개 중소기업,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의 대다수 기업들을 55개의 특별 분야로 나눠 가지고 그 분야별로 자금, 인력, 기술, 마케팅 부분에 뭐가 필요한지를 다 점검해서 맞춤정책을 열심히 펴 나가고 있고 지금 하루에도 거의 한두 건 이상의 회의를 전문 분야별로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창선 위원 앞으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제기하셨는데 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 시장 진출과 관련해서, 몇년 전에 비하면 가입자가 거의 새처레이트(saturate)되다시피 늘지 않고 있는데 아마 하나로 같은 데 가—두루넷과 합쳤는데—특히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LG데이콤이 파워콤과 연결되면서 도매가소매로 들어오는 것은 아까 많이 얘기가 되었기때문에 그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나중에 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마는, 파워콤이 자사망을 빌려 쓰고 있는 타 사업자의 가입자정보를 전부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 그런 것을 유용한다든지 타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같은 게 일어날 것을 예상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면 하나로는 금방 엄청난 타격을 보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어요.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자유스럽게 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불공정행위라든가 가입자정보를 전부가지고 있는데 이를 유용할 때 어떻게 해결해야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우려하

는 것을 잘 살필 필요는 있지 않은가, 이 보고서에는 가입자정보의 유용 여부 얘기는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동통신 데이터서비스 요 금체계와 관련해서, 점점 휴대폰에서 벨소리나 사진, 동영상 등을 다운로드 받는다든지 여러 가 지 정보를 받는데 요금이 소위 정보이용료하고 데이터통화료의 이원구조로 되어 있어서 정보이 용료는 음악 하나 다운로드 받는 데 얼마, 이런 가격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또 다운로드 받다가 끊어지거나 이럴 때 데이터통화 료 산정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으니까 소비자가 정보이용료만 혹은 데이터통화료만 각각 또는 합 이 얼마나 될지 전혀 불확실한 상태에서 나중에 엄청난 요금이 나오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 러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정확히는 알 수가 없겠 지만 소비자가 대충 내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좀 알게 해야 되는 것 아니 냐 이런 불평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맞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정확하고요, 그래서 정보이용료하고 데이터통화료를 분리해서 병기를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신위원회에다가 이용자의 이익 저해 여부조사를 의뢰해 가지고 그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홍창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이······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해결방안까지는 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얼마만큼의 차이들이 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창선 위원 그러면 정보이용료하고 데이터통 화료를 포함한 총요금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정책 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어도 되겠습니까?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일단은 전체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방향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 ○**홍창선 위원** 그 점을 좀 확실하게 해 줬으면 합니다.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
- ○홍창선 위원 앞으로도 자꾸 늘어날 텐데……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이런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창선 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오전에 수석전 문위원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번 6월 임 시국회에서 정통부 관련 법안은 전파법, 전기통 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파 차단하는 문제, 공연장이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에 의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단장치를 하자는 얘기인데 이게 지난해에 수능부정사건과 관련해서 각 학교 교실에다가 하자는 얘기가 나 오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것인데요.

우선 공연장 같으면 고정된 시설이고 계속 공연을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거기만 차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기술적인 것은, 공공장 소가 스타디움처럼 큰 것인지······
- ○**홍창선 위원**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다……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서를 잘 작성한 것 같습니다. 헌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배사항 또는 과도한……
- ○홍창선 위원 제 질의는, 예술의 전당의 오페라하우스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전파차단장치를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됩니까?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아마 범위가 크면 큰 대로 전파가 바깥으로 스필오버(spill over)되는 게 커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어떻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홍창선 위원 그 안에서 공연을 듣는 사람이 조용히 들을 수 있게 옆에 있는 사람의 핸드폰 멜로디가 나오지 않게 차단하는 게 어렵냐 이거 예요.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위원님, 그것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예배를 드리거나 조용하게 음악을 감상하는 데서 소음이 나는 것, 벨소리가 울리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이냐……

전파차단기라는 것은 통신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소리가 나지 않게 벨이 자동 전환되도록 강제로전파를 줘서 그렇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형태로 하면 소음 방지에 대해서 통화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조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홍창선 위원 저는 기술적으로 그것을 차단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한 것입니다. 그것을 해요, 못 해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완벽하게 가능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바깥까지 영향을 안 줄 정도로 전파차단이 가능한가 하는 것은……

○홍창선 위원 바깥이라는 게 뭘 뜻하는 거예 요? 그것을 그 안에서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전파라는 것을 방 안 에만 잡아놓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홍창선 위원** 잡아놓는 게 아니라 연결이 안 되면……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연결이 안 된다는 게 방해전파를 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방해전파를 방 안에만 있게 하고 전파가 유리창을 통해서 나 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홍창선 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 질의가……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홍창선 위원 그러면 할 수가 없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예를 들면 한 100m까지 바깥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인데요……

○홍창선 위원 외국에서는 한다는데 왜 그게 어렵다고……

그러면 입시 관련해서 학교는 장소가 너무 여기 저기 광범위하고 그래서 그것은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그 이웃이 있는데 전화가 제대로 안 되거나 또는 소음이 들리거나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전문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홍창선 위원** 그러면 정통부 입장은 뭡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국가 보안이라든가 해서 특별히 전파차단장 치를 해야 되는 곳은 정말 극히 제한적으로 다뤄서 꼭 해야 될 부분을 하는 것은 저도 수긍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공공장소라고 해서 벨소리가 나는 것에도 전파차단을 하는 것은 좀 과도하지 않느냐? 공공 장소에서 소리를 내지 않고도, 예를 들면 문자메 시지를 보낸다든가 이런 형태의 통신을 하고 싶 어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 니까 전파차단으로 모든 것을 다 차단시키는 것 은 상당히 과도한 조처로 보입니다.

○**홍창선 위원** 그러면 수능시험장에서 문자메시 지를 보내고 싶은 사람은 계속 보내게 놔두는 데 좋겠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그런 것은 특별한…… ○홍창선 위원 그건 범죄로 다스리고……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다른 의미가 되겠습니다.

공공장소라는 것이 소음에 대해서는 전파차단 기로 제어하는 것은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능의 경우에 또 다른 정책적인 목적이 있기 때 문에 그것은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창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봉** 홍창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본질의는 다 끝났습니다마는 보충질의 하실 분이 한 대여섯 분 계시고 시간이 $30\sim40$ 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보통신부? 지금 3시간 연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 후에 조금 이따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17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창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는 다 마쳤고 이제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에 맞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먼저 김석준 위원님 시작해 주시지요.

○**김석준 위원** 오전 질의에서 다루었습니마는 시간 관계 때문에 충분히 못 다루었습니다.

행담도 채권 매입에 관해서입니다.

조금 전에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문서수발대장을 확인했더니만 우정사업본부 보험과가 행담도 관련 EKI의 외화채권을 매입하면서 금융사업단장의 결재를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리 자금을 집행하고 단장의 결재는 다음날 받은 것으로드러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그때 제가 정확하게 날짜별로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모릅니다.

○김석준 위원 이 문제는 시스템도 무시하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집행했다는 이런 면에서 단순히 단장 그리고 본부장, 차관만이 아니라 장관도 충 분히 챙겼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 게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가 금융단장 ۰).....

○김석준 위원 2월 16일입니다.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위원님, 우정사업본부 장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실제 결재를 한 금융단장이 있 으니까 한번 해명할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는……

○김석준 위원 그런데 이것은 내가 추가질의 했 고 진짜 할 것은 지금 8개 남아 있거든요. 그래 서 이것을 좀 하도록 할게요. 시간을 더 주시면 답변시간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한 10초만 주시면 좋 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러면 10초 하시지요. 10초 추 가해 주시고요.

○**우정사업본부금융사업단장 양준철** 금융사업단 장입니다.

제가 15일에 문서에 사인을 했고 전자결재를 그다음 날인 16일에 했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회기 중임에도 국제정보통신의원연맹에 가서 한국의 디지털 인클루전 툴스에 대해서 주 제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국 대표 의 원들의 관심이 많았습니다마는 특히 아프리카 지 역 알제리 등의 의원들이 한국에 대해서 한국이 세계적인 IT선진국이기 때문에 글로벌 디지털 디 바이드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답변을 하면서 현재 우리가 쓰다 골칫덩어리가 된 PC 쓰레기, 핸드폰 쓰레기 이런 것들을 잘 수 집해서 세계적으로 IT가 떨어져 있는 후진국에 게 원조하는 프로그램을 국가적으로 좀 하면 어 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 그럴 수가 있습니

다. 지금 각 나라별로 저희들 중고 PC를 수거해 서 보내 주고 있기는 한데요.

○김석준 위원 그러면 알제리에 좀 보내는 방향 으로……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알제리에는 보내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 나라에……

○김석준 위원 지금까지는 못 받았다고 합디다. 못 받았는데 해 주면 참 좋겠다는 얘기를 자기들 이 합디다.

다음에 800Mb대 주파수 이용 분배 문제에 대해 동료 위원들도 여러 차례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조 금 더 긍정적으로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소비자 편익을 위한 정책자료집도 냈습니 다마는, '효율적 주파수 이용과 분배를 위한 정책 방향(800₩ 대역을 중심으로)'라는 자료집을 냈습 니다. 이것 좀 참조하셔 가지고, 이랬을 경우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의도가 없습니까? 이미 여러 차례 질의했던 내용들입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현재까지는 800Mb대역 을 다른 사업자한테 나누어 준다든지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 왔는데요, 이번에 이렇 게 다른 연구가 나오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독점 방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소비자 편익을 위한 단말기보조금 금지정책'이 주제도 이미 여러 차례 다루었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이것도 내년 3월에,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동안 단말기보조 금을 금지함으로써 생겼던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고 난 다음에 존치 여부 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석준 위원** 다음에 공정위 과징금 부과, 유 효경쟁정책의 한계점으로 여러 차례 지적되었고 특히 정통부의 유효경쟁정책과 행정지도 이것이 도리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사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 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조금 심도 깊 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아까 일부 답변을 한적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렇게 담합이 일어나고시간이 경과해서 과징금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일이 발생하니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할 때는 공정위원회하고 사전에 협력관계도 마련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지도는 통신시장의특수성 때문에 할 필요가 있고 유효경쟁체제를유지하기 위해서 할 필요도 있고 한데 그것이 담합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초동 단계에서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보통신부나 통신위원회가 그런면에 조사권한이 더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나 법안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느냐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다음에 법정시한이 7월 29일까지로 되어 있는 안전진단을 완료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현재 정보보호안전진단업체 164개 대상기관중에서 5월 현재까지 12개밖에 완료 안 되어 있지요? 너무 파행이 우려되지 않습니까?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막바지에 수요가 몰릴 때 부실진단의 문제가 없습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하고 한번 간담회도 했습니다. 안전진단이 집중되지 않도록 매주 안전진단일정을 확인하여 관리하는 등 부실진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하는 컨설팅 요금이 너무 비싸다 이런 불만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다음에 기존 휴대폰 식별번호 의 3G 사용 여부와 전파감시고도화사업 추진 문 제에 대해서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창선 수고하셨습니다.

5분이 좀 짧아서 충분히 질의를 못 하실 경우 서면으로 질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映宣 委員 일단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17대에 들어와서 많은 위원님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질의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또 질의시간에 답변시간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해명이 많은 답변일수록 질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국회 때부터는 양당이 의논을 해서 질의시간을 지금보다는 2배 이상으로 늘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답변시간은 질의시간에서 빼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제안을 하고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金映宣 委員 나중에 검토해 보시고요.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본회의에서 하듯이 답변 시간을 빼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질문시간만 카운트하니까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도……
- ○金映宣 委員 그것은 장관님께서 대답할 사항 이 아니기 때문에……

(장내 웃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터넷뱅킹 해킹과 정통부의 신원확인고시 문제를 얘기하겠는데 2005년 5월 3일에 은행 인터넷뱅킹 시스템을 해킹해 가지고 돈을 빼낸 사건은 아실 텐데 보니까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빼낸후 공인인증서 폐지 신청을 하고 다시 빼낸 개인신상정보를 이용해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서 돈을 빼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정통부고시 2002-58호 중 특히 6조2항에 있어서 가입자의 계정, 계정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하게 된 것들이 이런 해킹을 초래했다는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좀 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좀 보완할 필요가 있 겠습니다.
- ○金映宣 委員 이 '대리인 등을 통한 신원확인 방법 및 절차'가 금융결제원과 증권전산원을 위주로 하는 신원확인고시가 되어서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 발급을 지원하는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다른 공인인증기관의 발급을 상대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서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 동의하십니까?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공정성 문제는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 ○金映宣 委員 좀 검토를 하시고요.

공인인증서에 관련된 입법 추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될 부분에 관해서 묻고 싶은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 그러겠습니다.

○金映宣 委員 공정위 과징금과 유효경쟁정책의 핵심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서면으로 질의하기로 하고 우정사업본부의 EKI 발행 외화채권 매입에 있어서 우정사업본부가 제출한 것을 보면 2월 15일에 채권을 매입하고 40일이 지난 3월 24일에야 질권 설정이 됐는데 이게 원래는 거꾸로 되어야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되었습니까?

○**우정사업본부장 황중연** 우정사업본부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씨티증권의 질권 설정 확약을 받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씨티증권에서 확인해 주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사이에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계좌 질권 설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金映宣 委員 도공이 주식 담보 제공 거부의사 사유를 분명히 밝혔고 법적으로도 도공의 동의 없이는 질권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해명하 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자세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좀더 추궁을 하겠습 니다.

북한의 컴퓨터 해킹에 관한 우리 정부의 대책 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국방정보보호 컨퍼런스에서 보면 북한이 미군 태평양사령부 지휘통제소와 본토의 전력망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북한은 500~600명 규모의 해킹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총 36개가량의도·감청기지를 운영하면서 남한 전역의 신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통부가 이런 국방정보보호 기술발전을 위해 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중장기 로드맵에 이것 을 반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국방부하고 올해 2월에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해 가지고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군정보화 지원 및 사이버 침입 탐지기술 개발 등에 대한 공동 노력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상호 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金映宣 委員 국가정보보호 중장기 로드맵 발표에는 노준형 차관께서 참석하셔 가지고 대학을 통한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방안에 대해서 얼핏지나가는 말로 한 말씀 하셨는데 그것하고 민·관·군의 교류협력 강화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내용과 일정을 좀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이것은 노준형 차관이 지나가는 말로 한번 하신 것이에요, 구체적인 안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민·관·군의 정보보호를 위한 교류협력 강화방안과 대학을 통한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관·군 정보보호 교류협력을 위해서 정보 보호워크숍·컨퍼런스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군 정보보호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보보호교육을 지속 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정보보호담당자 80명에 대해 정보보호 교육을 5월까지 실시했고 또 대학을 통한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고려대 등 5개 대학에 ITRC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2006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두뇌한국 21사업에 정보보호사업단이 포함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부와 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아마 이것을 차관이 언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 되는데요.

○金映宣 委員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핵심적 인 것만 물었으니까 미비한 것은 서면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빠진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映宣 委員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희 위원 인터넷주소자원법에 대해서 아까 정통부장관님께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체 적으로 동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이 아니라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지 않

을 수 없습니다.

일단은 검토보고서 결론에 본 개정안이 등록수수료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향후 등록업무 이외의 진흥원 업무에 대해서 국가가 인건비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면 예산의 투명성이 제고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진흥원이 인건비나 기관운영비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정부출연기관이 아닌데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 이것이 맞는 주장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애초에 이 법안을 제정할 당시에 예산

부수법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주 수월하게 통과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지난번 4월 임시회 때 공청회에서 논의된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은 이 보고서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그 결론에만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에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가지 조목조목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법적 체계 면에 있어서도 지금 9조3 항6호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모두에 좀 말씀드렸는데 이 법이 통과될 때 당초 정부 원안 에 대해서 그 당시의 국회 수석전문위원 검토과 정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진흥원에 과도한 권한을 위임한다고 해서 위탁조항을 삽입하고 모든 인터넷주소에 대해 위탁하도록 했던 것인데 정통부가 위탁의 예외로 본 조항이 다시 삽입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 체계나 일관성으로 볼 때 본 개정 안이 법안의 원래 취지에 더 부합한다는 것을 말 씀드리고요, 그래서 현재 법조항 자체가 법체계 상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번 검토보고서에 이러한 기본 적인 법체계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미흡하기 때 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터넷진흥원에서 인터넷주소 관리업무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전에 있었던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다시 설립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 관리라는 인터넷진흥원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런 반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왜 이 주장이 틀렸느냐 하면 예전의 인터넷정보 센터의 경우에는 인터넷주소정책에 관한 권한이 대부분 센터에 있었지만 이 법률 제정 이후에는 정책에 관한 권한이 정보통신부장관, 심의위원회, 진흥원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대로 인터넷주소를 관리하는 업무를 분리한다 하더라도 정책의 권한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정보센터를 다시 설립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만약에 인터넷주소 관리기관의 업무를 분리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인터넷주소 관리기관의 방안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인터넷진흥원 내 인터넷정보센터를 분리·독립시

키는 방안도 있고 인터넷주소관리대행사업자 중에서 하나가 되는 방안도 있고 사업자들이 컨소시엄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있고 비영리기관을 설립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주소 관리업무에 있어서의 공 공성과 책임성,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공공업 무이고 비영리업무이고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는 계층적 관리체계에 따라 한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반대한다 이런 결론을 냈 는데 인터넷주소 관리업무가 공공업무이자 비영 리업무라고 하면 현재와 같이 등록관리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하거나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된다 는 논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본 개정안에 는 한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에 반대하는 그 어떤 내용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인터넷주소 관리기관을 진흥원 업무에서 분리한다고 해서 그 기관이 1개가 될지 2개가 될지그런 전제가 없습니다. 인터넷주소 관리기관을 추후에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정통부장관이나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나 진흥원이 결정할 사안이고요.

세 번째, 도메인등록수수료에 대해서 '일반 인 터넷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도메인 이 름 등록자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연결되도록 .kr 도메인을 이용하는 데 따르는 부담이므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이런 내용이 있는 데요.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정리한 내용은 일단 서면으로 마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장관님께서 따져 주셨으면 좋겠다, 이 개정안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16대 때 정통부가 어떤 측면에서는 산하기관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무리하게 제정했다는 의구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여러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개정안을 낸 것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을 하나 더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제적 관계에 있어서 인터넷 관리를 공적인 기구 가 담당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것은 얼마 전에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세미나 에서도 나온 얘기이지만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동향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이루어진 서술이라는 점입니다.

국제적인 인터넷 관리체계가 국가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는 그렇게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인터넷 관리체계에 대해서 국제적인 관행이나 흐름이런 것과는 좀 다른 판단에서 나온 보고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의존만 한다고 하면 장관님께 서 너무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 는 것이다라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요.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해서 최근 6월 3일에 심 포지엄이 하나 있었습니다. NIDA가 주최한 것으로 제가 거기 가서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요. 거 기에서 나온 안 중에 국제정보인프라 개발에 기 여할 국제기구를 유치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 이 나왔습니다. 지금 유엔에 교육훈련센터를 만 든다는 것은 시작에 불과한데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전문가들이 내놓은 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제 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의 간략한 의견을…… 일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정보통신 인프라 연구 정책 개발을 위한 국제기구 유치에 대해서는 서 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뒤의 것은 국제기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서면보 고를 드리고요.

혹시 국제기구 유치에 관해서 아이디어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받으셨어요?

○유승희 위원 예,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가칭 인스티튜트 포 인포메이션 인프라스트럭처 (Institute for information infrastructure) 이것이 거든요. 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국제정보인프라 연구 및 개발 촉진을 위한 기구······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유엔 기구가 그런 게 있습니까?

○유승희 위원 그러한 기구를 만들어서 제안을 해서 유엔 산하로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 안입니다. 이번 11월에 튀니지에서 WSIS가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나라의 제안서……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인터넷강국이고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돈 많이 드는 것 아닙 니까?

- ○유승희 위원 연간 200억 정도 드는데……
- ○**위원장대리 홍창선** 마무리 좀 해 주시지요.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앞의 법안에 대해서는 어차피 법안이 이제 제출됐으니까 심사소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요. 저희들도 의견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홍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위원 정통부에서 지난 3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도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감청 건수가 1696건, 2004년에는 1613건으로 수사기관에 의한 감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따라서 불법감청설비 탐지업체가 등록제를 하고 있는데 요. 저는 이 업체들하고 중앙전파관리소하고 수 사기관하고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적 정비나 업무체계가 확립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불법감청설비를 단속하는 중앙전파관리소 단속 인력이 33명이고 17개 조로 편성이되어 있는데요. 휴대폰 불법복제 단속 업무도 맡고 있어서 지금 정통부에서 발표한 불법감청설비적발 건까지 다 하려고 하면 인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증원계획이 있으십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현재 인력 가지고는 여러 가지 단속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듣고 있고요. 그래서 단속 업무를 원만 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확보를 포함해서 다 양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면 인력 확보를 언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제가 국장한테 계획이 어떤지 물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부전파방송정책국장 이기섭 전파방송 정책국장입니다.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문제는 저희 전파관리 소의 업무인력들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단속 인력을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기존에 있는 인력 안에서 서로

옮기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정보통신부전파방송정책국장 이기섭 인력을 추 가적으로 조정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 에……

○김희정 위원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추가까지 해서 정확하게 조정은 언제 하겠고 추가인력 수급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장관님한테도 보고를 하시고 저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전파방송정책국장 이기섭 예.

○김희정 위원 그리고 지금 불법감청설비 업체에서 불법감청설비를 적발했을 때 그 결과를 전파관리소에 통보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불법감청 예방을 위해서라도 이업체들이 나갔을 때 어떤 장치가 있었는지, 또몇 대나 있었는지, 몇 건 적발이 됐는지, 한 대당건수가 어떤지, 어떤 장소에 있었는지, 이렇게 유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그게 통제가 안 된 것 은 잘못된 것 같네요. 지적하신 대로 불법감청설 비의 유형, 동작원리 등 필요한 정보를 관련업체 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단속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물론 수사기관에서 적발을 담당하고 있지만 설비 단속은 아무래도 기술적인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통부 차원에서도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방금 장관님 답변하셨듯이 업체하고 중앙전파관리소뿐만 아니라수사기관까지 해서 3자가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있는 시스템을 확보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

○김희정 위원 또 하나 추가로,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더니 2004년까지 자료가 왔고 2005년도 현황이 어떤지에 대한 자료가 안 왔습니다. 업데이트해서 이번에 서면답변 주실 때 2005년도 불법 감청현황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5월까지 자료는 있는 것 같은데요.

○**김희정 위원** 그런데 제가 제출 요청한 것에는 2004년도 것까지밖에 안 왔습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

○김희정 위원 그리고 정보화 역기능……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계속 인터넷 중독 예방 관 련된 것을 지적했는데요.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인 정의가 없다 보니까 역기능에 대한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 다. 그래서 여기도 제가 좀 제안을 했으면 하는 데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인터넷 중독 예방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보화 역기능 업무수행 기관들의 기관명과 법적 근거와 주요업무를 정통부로부터 받아서 본 결과 어디에도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특히 정보격차 해소에관한법률 제16조에 기능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인터넷 중독 예방이라는 게 정확하게 구절로 명시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물론 역기능에 그냥 포괄적으로 해석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업무분장이 되고 하나의 항목으로서 평가받고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법적인체제의 정비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 법 개정을 추진하 시면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혜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혜석 위원** IT839의 9대 신성장동력산업 분 야의 재원분배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2월에 작성된 정보화촉진기금 중기운용계획안에 따르면 2004년도 9대 신성장동력 투자 예산은 IT839 전략 추진을 위해 책정된 총예산의 75.3%인 334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운용계획안에 근거해서 작성된 2005년도 정보통신연구개발시행계획에는 2004년도에 실제 투입된투자액이 나와 있는데요. 그 투입된 금액은 2431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의계획에 비해서 한 900억 원이 투자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당초 2004년도 운용계획안 9개 사업 분류에는 RFRD/USN, BcN, 정보보호 분야가제외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세분화되어서 11개 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원래와 달라졌다는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11개로 분리된 시행계획 중에서 IT SoC의 경

우에는 예산 대비 투자액 수치를 비교해 봤더니 원래 예산은 한 798억 원인데 실제 투자액이 239 억 원 정도로 약 559억이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동통신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04년도 예산 수립 당시부터 기금 운용 의 계획성과 예측가능성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 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를 간단히 설 명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이런 얘기입니다. IT SoC는 반도체이거든요. 반도체를 전부 다 묶어 가지고 한 목에 정리해서 발표할 때도 있고…… 반도체라는 것은 예를 들면 핸드폰 단말기에 들 어갈 수도 있고 디지털TV에 들어갈 수도 있고 DMB에 들어갈 수도 있고 로봇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도 있습 니다. IT SoC라고 해서 단말기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있는 것들은 따로 정리하기도 하고 여기 있 는 것을 다 끌어서 말할 때도 있고 해서 금액이 이렇게 들쭉날쭉한 것은 표현의 방법에 따라서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몇 개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요. 중 기운용계획상의 성장동력 투자금액은 기술개발뿐 만 아니고 인력양성, 표준화 등 관련 사업을 모 두 합해서 표시를 하고 있는데 2005년도 정보통 신연구개발시행계획상에 명시된 2004년도 투자액 은 기술개발 예산만을 가지고 했습니다. 인력양 성이라든가 표준화를 빼고 기술개발만 할 때는 그렇게 표시되고요. 자료마다 특화되어서 얘기하 는 목적상 숫자가 달라 보입니다마는 다 합해서 제대로 하면 똑같습니다.

○서혜석 위원 그 부분이 좀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예를 들면 9대 신성장 이라고 할 때 9이지만 RFRD, BcN을 9대 신성장 에 집어넣어서 11개로 표시해서 말을 할 때도 있 고 839처럼 3으로 떼어서 얘기할 때도 있고 이렇 게 분류를 다르게 할 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혜석 위원** 분류를 다르게 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총액을 보면 총액도 틀립니다. 2004년 도 중기운용계획안에 보면 총 금액이 4438억 원 인데 실제로 투자한 금액은 3829억 원이니까 총 액도 틀립니다. 세부내용만 틀린 게 아니라 총액 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정확치 않으신 것 같

아요. 제가 보기에는 총액도 원래 예산과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 설 명을 해 주시고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중기운용계획은 일종 의 롤링 포케스트(rolling forecast)로 되어 있어 가지고……

○**서혜석 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것을 이유 를 설명하셔야 됩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그러면 저희들이 정리 를 해 가지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면 어떻습니 까?

○**서혜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IT SoC 부분도 여러 군데 분리가 되었 다고 하셨지만 사실 이것을 보면 똑같은 용어로 쓰고 있는데 2개에서 틀린 액수가 나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은 제가 납득이 좀 안 가거 든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명확하게 설명이 되도 록 따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재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엽 위원** 마지막입니다.

파워콤 허가 잠깐 여쭤 보겠는데요.

파워콤의 한전 지분이 아직도 43.1%이고 우호 적인 포철이나 SKT 지분을 확보한다면 역시 지 배주주가 가능한 것인데 공정법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이런 것이 혹시 검토가 되셨 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따라서 지배구조 개선이 선행된 다음에 허가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 각도 들고요. 그래서 공정하게 하려면 한전이 이 주식을 팔고 나가고 도매업을 다시 가지고 나가 고 파워콤은 순수하게 소매업자로서 공정경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가 지고…… 지금 말씀하셔도 좋고요.

(홍창선 간사, 이해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 는 그런 것들이 정상적이고 형평에 맞는 법 적용 인지, 규정으로 만들어서 되는 것인지를 신중하 게 검토는 해야 되겠습니다.

○**심재엽 위원** 공정거래법상 우월적 지배주주로 서의 불공정행위, 그래서 시정명령이라든가 지배 주주 구조개선 이런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검토 는 해 보셨습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유사한 얘기는 왔다갔 다 하는데요. 정확하게 똑같이 그렇게 검토를 하 는지는 제가 혼란이……

○심재엽 위원 지금 한전이 43% 가지고 있고 우호지분을 확보하면 지배주주가 되는데 결국은 주주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것이 기업이니까 파 워콤이 그런 점에서는 불공정한 거래가 가능하고 이 자체가 이미 불공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미 이것이 허가됐을 적 에 시정명령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 는 문제점 지적에 대해 검토가 있으셨는지를 여 쭤 보는 거예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 지분을 다 매각해야 한다는 게, 그이전에 51% 이하로 되면 자동으로 줄 수 있다는 것하고 얼마나 상충이 되는지 하는 것은 검토가돼야 되겠습니다.

○심재엽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혹시 있 으면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전파차단기 설치 관련 법개정 문제입니다.

지난번 공청회 때 제가 자세히 들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것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제한된 지역 내에서 차단이 어렵고 전파차단기만으로 다른 제 3자가 통신에 어떤 제한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법상으로 제3자가 불이익을 당 했을 때 그에 관련된 소송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 는데……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심재엽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으로 봤을 때는 이 법이…… 물론 기술이 뒷받침돼 가지고 법의 완벽성, 목적성이 달성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뒷받침이 안 된 상태에서 법이 개정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각종 국가고시라든가 학교에서의 내신성적까지 반영이 된다면 모든 학교에서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법이 개정될 때에는 항상 예산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과정이나 단계를 거쳐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금속탐지기 같은 것을 먼저 사용해 보고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 나서 그것이 확실치 않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든 가 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수능과 관련해서 전파 차단기까지 설치해야 된다는 현실이 안타깝고요, 실지로 지극히 교육적인 것으로 말씀드리면 부정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적발해서 못하게 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 최선일 거라는 생각 이 들고요……

○심재엽 위원 제가 볼 때 형사소송법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불공정행위 자체는 이 법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도 저촉을 받을 것입니다. 이번에 발각된 사람도 처벌받고 그랬는데, 이번에 수능시험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낸 안을보면 1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앞으로 내신이나 각종 국가고시 자격시험에도 적용된다고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간단계에서 필요하다면, 저는 형사소송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과연 필요하냐 하는 생각도 하지만 필요하다면 금속탐지기라든 가 이런 것을 먼저 사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 는 생각을 합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그동안 교육부와 저희가 상당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능시험 부정방지를 위한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법적·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돼 처음에는 휴대용 금속탐지기라든가 전파탐지기를 시범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금속탐지기 같은 것을 이용해 핸드폰 지참하는 것을 배제하려고 애를 쓰고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작용이 있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심재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봉 심재엽 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부탁을 합니다마는 질의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 관계로 상세한 것을 서면답변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정부부처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서면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서면답변에 대한 것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률안및청원 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부장관을 비롯한 여러 관계관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제안설명서】

電波法 一部改正法律案

제안연월일: 2005. 6 제 안 자:이 규 택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제안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전파차단장치를 이용하는 것은 다른 무선국의 혼신 기타 방해가 되어 금지하고 있어,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을이용한 대입 수능시험 부정행위 등을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여 방지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입 수능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처럼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려는 것입니다.

電波法 일부를 개정하는 이번 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명 "電波法"을 "전파법"으로 한다.

둘째, 무선설비나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는 다른 무선설비 등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 기타 방 해를 하지 아니하도록 운용여여야 하나 다른 법 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함으로 명시된 현 전파법 제 29조 단서 중 "通信에 관하 여는"을 "통신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에는"으로 개정합니다.

이상으로 '전파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간략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법안 심사를 통해 이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電氣通信事業法 一部改正法律案

제안연월일 : 2005. 6 제 안 자 : 이 규 택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수능시험 부정행위에 사용하는 등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특별히 전기통신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차단할 수 없습니다. 전기통신의 소통유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에 예외를 두어 특별히 전기통신의소통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의 소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행위에 전기통신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電氣通信事業法 일부를 개정하는 이번 법안의 주요 골자는

첫째, 제명 "電氣通信事業法"을 "전기통신사업 법"으로 한다.

둘째, 제5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 히 전기통신의 소통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는 경 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을 차 단할 수 있다 로 개정하는 것 입니다.

이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간략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법안 심사를 통해 이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出席委員(17人)

 강성종
 권선택
 김낙순
 김석준

 김영선
 김희정
 류근찬
 변재일

 서상기
 서혜석
 심재엽
 유승희

 이종길
 이해봉
 진
 영황창선

 한화갑

○出席専門委員

수석전문위원 구 회 권 전 문 위 원 이 진 호

○政府側參席者

부 정 爿 톳 신 장 관 진 대 제 차 곾 노 준 형 정 책 홍 보 관 리 실 장 석 호 익 보 화 기 획 실 잣 이성옥 정보통신정책 국 장 형 태 근 정 보 통 신 진 흥 국 장 김 동 수 전 파 방 송 정 책 국 잣 이 기 섭 정 보 통 신 협 력 국 장 강 대 영 홋 관 리 관 서 병 조 보 정보통신전략기획 곾 임 차 식 감 사 곾 남 궁 민 정보기반보호심의관 강 중 협 정 사 업 보 부 부 황 중 연 장 본 경 영 기 장 김 재 섭 획 실 우 편 장 박 재 규 사 업 단 금 윩 사 업 닦 장 양 준 철 통 신 위 원 회 상 임 위 워 김 인 식 한 산 김 창 곤 전 워 장

【報告事項】

○議案回附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4월22일 이혜훈·박세환·엄호성·황우여· 박찬숙·김재경·이인기·유정복·김희정· 최경환·김재원 의원 발의)

4월26일 회부됨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5월6일 정부 제출)

5월7일 회부됨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 의 원 대표발의)

(5월24일 서상기·권선택·김낙순·김석준· 김재경·김재원·박병석·박상돈·고진화· 서혜석·안명옥·안상수·안택수·엄호성· 염동연·오제세·유기준·유승민·유승희· 유필우·이인기·이혜훈·정병국·진영·홍 창선 의원 발의)

5월25일 회부됨

氣象業務法 일부개정법률안(김석준 의원 대표 발의) (5월25일 김석준·서재관·공성진·김부겸· 이계경·김재경·이광철·정병국·김정부· 황우여·이혜훈 의원 발의)

5월26일 회부됨

電子署名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 발의)

(5월27일 이종걸·김재홍·허태열·서혜석· 이영호·강창일·문학진·김종률·유승희· 강기정·염동연·배일도·최재성·박명광· 정청래·박재완·황우여·권선택·임종석· 양승조·변재일·안민석 의원 발의)

情報化促進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홍창선 의원 대표발의)

(5월27일 홍창선·주승용·염동연·윤원호· 장영달·김낙순·김명자·이종걸·노웅래· 최규성·이낙연·최인기·이인영·신국환· 이근식·유재건·오제세·엄호성·안병엽· 이계경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30일 회부됨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에 관한 법률안

(5월30일 정부 제출)

6월1일 회부됨

通信秘密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 표발의)

(6월2일 김영선·공성진·조경태·김재원·정문헌·박승환·허태열·고경화·김선미·이윤성·나경원·정병국·박재완·고흥길·서병수·황우여·이인기·배일도·신상진·김충환·안상수·안병엽·최경환·고조흥 의원 발의)

6월3일 회부됨

電氣通信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 표발의)

(6월1일 김영선·공성진·김재원·박승환·김 선미·이윤성·나경원·정병국·박재완·김 재경·고흥길·서병수·김효석·고조흥·배 일도·신상진·안상수·이성구·안병엽 의원 발의)

氣象業務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 발의)

(6월1일 김희정·이상경·안홍준·이성권·김 재경·주승용·최성·염동연·박재완·강길 부·고조홍·배일도·엄호성·정희수·신국 환·홍창선·이혜훈·황우여·이근식 의원 발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 표발의)

(6월1일 변재일·우제항·노영민·유승희·강 혜숙·김효석·이시종·김종률·염동연·김 우남·양형일·유재건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2일 회부됨

電氣通信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 표발의)

(6월9일 심재철·정문헌·김재경·박세환·신 상진·황우여·엄호성·정종복·이윤성·정 병국 의원 발의)

6월10일 회부됨

氣象業務法 전부개정법률안

기상관측표준화법안

(이상 2건 6월8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6월9일 회부됨

○關聯議案回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6월1일 변재일·권선택·한광원·서재관· 장복심·이시종·채수찬·박찬석·신학용· 박기춘·박명광·홍재형·조일현·이계안· 최철국·윤원호·류근찬·우제항·염동연· 강성종·유재건·홍창선·김낙순·서갑원 의 원 발의)

6월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유필우 의원 대표발의)

(4월18일 유필우·이해봉·이규택·최인기· 김재경·신중식·양형일·오제세·노현송· 신국환·유정복·이시종·안상수·이계경· 이호웅·김효석·한광원·김동철·박상돈· 이혜훈·박창달·정의화·백원우·임종인· 서재관·이근식·김춘진·허태열·김종률· 전병헌 의원)

4월2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효 실천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황우여 의 원 대표발의)

(5월31일 황우여·이해봉·허천·고조흥·엄호성·정화원·최경환·김양수·이재오·김재경·이성구·이윤성·이혜훈·이경재·안경률·고경화 의원 발의)

6월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行政立法提出

원자력시행규칙 일부개정령

(5월17일자 공포)

5월23일 과학기술부 제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6월1일자 공포)

6월10일 과학기술부 제출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 개규정

(5월2일자 공포)

6월10일 과학기술부 제출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

(5월18일자 공포)

6월10일 과학기술부 제출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5월18일자 공포)

6월10일 과학기술부 제출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

(5월18일자 공포)

6월10일 과학기술부 제출

원자력검사관증 및 검사원증 관리규정

(5월2일자 공포)

6월10일 과학기술부 제출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규 정

(5월11일자 공포)

6월10일 과학기술부 제출

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 령

(4월19일자 공포)

4월21일 정보통신부 제출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전부개정

(5월14일자 공포)

5월16일 정보통신부 제출

체신부자체감사규칙 전부개정령

(5월26일자 공포)

5월26일 정보통신부 제출